

발간등록번호

자료집



Forest Investment Guide for Vietnam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베트남(개정판) -



발간사

2019. 12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베트남(개정판)] 집필진

- 경북대학교 -

박주원, 우희성, 조승안, 정건휘, 박혜인, 류지연, 심혜미, 금윤경, 이보휘, 정운관

- 한국임업진흥원 -

여진기, 박병수, 김윤희, 이형준

- 현지 자문단 -

Hoang Van Sam, Bui The Doi, Nguyen Tuong Van, Tran Hieu Minh, Tran Minh Dung



CONTENTS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3
1.1. 사회·문화	3
1.2. 경제	12
1.3. 정치	18
1.4. 인프라	24
1.5. 자연환경	37

산림 현황

2. 산림 현황	47
2.1. 산림자원 현황	47
2.2. 임업 현황	51

산림 정책

3. 산림 정책	59
3.1. 산림 관련 조직 구조	59
3.2. 임업법 제정	61
3.3. 산림관리 정책	63
3.4. 신용(금융) 정책	66
3.5. 투자 장려금과 보조금 정책	70

산림 투자 절차

4. 산림 투자 절차	81
4.1. 투자 사업 실행 절차	81
4.2. 외국인투자 절차	82
4.3. 토지 임대 문제	92
4.4. 환경 영향 평가	96
4.5. 보고	96
4.6. 사업 종료	97

세금 시스템

5. 세금 시스템(베트남 세금, 사회·건강·실업 보험)	103
5.1. 법인세(CIT)	103
5.2. 자본배당이익세(CAPT)	106
5.3. 부가가치세(VAT)	107
5.4. 개인소득세(PIT)	117
5.5. 수입관세	123
5.6. 수출관세	126
5.7. 특별소비세(SST)	127
5.8.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외국인계약자세(FCT)	128
5.9. 재산세(Property tax)	133
5.10. 천연자원세(NRT)	134
5.11. 사업 등록세(BLT)	135
5.12. 환경보호세(EPT) 및 환경보호요금(EPF)	135
5.13. 세무조사 및 가산세	136
5.14. 사회, 건강 및 실업 보험료	136

산림 투자 모델 및 사례

6. 산림 투자 모델 및 사례	141
6.1. 인공조림지 사업	141
6.2. 목재 가공·유통·물류	168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 모델

7.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 모델	177
7.1. 베트남 임업분야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요	177
7.2.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 국가별 자본 규모	180
7.3.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 투자시점별 자본규모	181
7.4.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현황	183
7.5. 국가 및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특징	184
7.6.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을 통한 목재 및 임산물 수출	188
7.7. 베트남 산림분야 투자 모델 소개	191

결론

8. 결론	199
-------	-----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201
부록 1. 임업법	203
부록 2. 임업투자관련 제출 필요 서류 양식	260

표 목차

[표 1-1]	10년간 베트남 인구분포 특성	4
[표 1-2]	2019년 기준 베트남 성비	5
[표 1-3]	2019년 기준 베트남 주요도시 인구분포	5
[표 1-4]	2019년 기준 베트남 내 한국인 거주 수	6
[표 1-5]	2020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계획(월 급여 기준)	17
[표 1-6]	베트남 인프라 경쟁력 지수	24
[표 1-7]	베트남 도로 현황	25
[표 1-8]	권역별 복합항만단지 개발 계획	30
[표 1-9]	베트남 이동통신사 현황	36
[표 2-1]	2016년~2018년 산림면적 변화 추이	48
[표 2-2]	지역별 산림면적 및 피복율	49
[표 2-3]	2018년 목재 가공 산업 및 수출에 대한 목재 수요	54
[표 2-4]	2018년 원목의 공급 균형(단위: 백만 m ³)	54
[표 5-1]	거주자 근로소득별 세율	121
[표 5-2]	거주자 소득별 세율	121
[표 5-3]	비거주자 소득별 세율	122
[표 5-4]	직접방법에 따른 주요 외국인계약자세 세율	132
[표 5-5]	천연자원세율	134
[표 5-6]	환경보호세율	135
[표 5-7]	사회, 건강, 실업보험료 부담률	137
[표 5-8]	세부항목별 사회보험료 부담률	137
[표 6-1]	2018년 기준 지역별 생산림 현황	141
[표 6-2]	2018년 기준 북서지역 생산림 현황	142
[표 6-3]	2018년 기준 북동지역 생산림 현황	142
[표 6-4]	2018년 기준 북부 삼각주 생산림 현황	143
[표 6-5]	2018년 기준 북부 중앙지역 생산림 현황	143
[표 6-6]	2018년 기준 중부 연안지역 생산림 현황	144
[표 6-7]	2018년 기준 중앙고원지역 현황	144
[표 6-8]	2018년 기준 남동부지역 생산림 현황	145
[표 6-9]	2018년 기준 남서부지역 생산림 현황	145
[표 7-1]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	182
[표 7-2]	기간별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수 및 투자자본	183
[표 7-3]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185
[표 7-4]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분포 지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자본과 노동력 현황	188
[표 7-5]	1,000만 달러(USD)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분포 지역	191
[표 7-6]	2018년 국가별 큰 매출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192

그림 목차

[그림 1-1] 2020년 기준 베트남 인구 피라미드	4
[그림 1-2] 베트남 행정구역 분포도	13
[그림 1-3]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17
[그림 1-4] 베트남 공산당 조직 및 구조 (출처 : 외교부, 2018)	19
[그림 1-5] 베트남 정부 조직도 (출처 : 외교부, 2018)	22
[그림 1-6] 베트남 인프라 시장 규모 현황 및 추이	24
[그림 1-7] 베트남 철도 분포도	29
[그림 1-8] 베트남 공항 위치도	33
[그림 1-9] 베트남 위치	37
[그림 1-10] 베트남 지형	41
[그림 1-11] 베트남 토양 분포도	43
[그림 1-12] 베트남 하천 분포도	44
[그림 2-1] 2018년 유형별 산림면적	48
[그림 2-2] 산림구성비율(천연림 및 인공림)	49
[그림 2-3] 산림 피복율(%) 변화 추이	50
[그림 2-4] 2018년 산림보유권 현황	51
[그림 2-5] 2010년~2018년 목재 및 임산물 수출량 (단위: 10억 달러(USD))	52
[그림 2-6] 2011년~2018년 목재생산량 (단위: 백만 달러(USD))	53
[그림 6-1] 조림지에서 생산된 원목의 국내 유통흐름	169
[그림 6-2] 목재가공 공장 분포	172
[그림 6-3] 베트남 국내 목재 공급 흐름	173
[그림 7-1] 현재 진행중인 지역별 목재 산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의 수	189
[그림 7-2] 2018년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 수출 매출액	191
[그림 7-3] 2018년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의 수출 매출액	192

주요 약어표

AKFTA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MI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CAPT	Capital Assigment Profits Tax
CAAV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Vietnam
CPV	Communist Party of Vietnam
CIT	Corporation Income Tax
DTAs	Double Taxation Agreements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PT	Enviromental Protecton Tax
EPF	Environmental Protection Fee
EPP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EEU	Eurasian Economic Union
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FCT	Foreign Contract Tax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PD	Forest Protection Depart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GDP	Gross Domestic Product
HI	Health Insurance
IPO	Initial Public Offering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LUR	Land Use Rights
M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FN	Most Favoured Nation
NRT	Natural Resource Tax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E	Permenant Establishment
PIT	Personal Income Tax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
SI	Social Insurance
SST	Special Sales Tax
VNFOREST	The Vietnam Administration of Forestry
UI	Unemployment insurance
VAT	Value Added Tax
VFTN	Vietnam Forest and Trade Network
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VNR	Vietnam National Railway
VNPT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VKFTA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VNTLAS	Vietnam's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VTC	Vietnam Multimedia Corporation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Part.

01

일반 현황

- 1.1. 사회·문화
- 1.2. 경제
- 1.3. 정치
- 1.4. 인프라
- 1.5. 자연환경

1. 일반 현황

1.1. 사회·문화

1.1.1. 민족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로서 총 54개 민족으로 구성된다. 언어군에 따라 비엣 므엥(Viet-Muong) 어군, 몬 커메(MonKhome) 어군, 타이 타이(Tay-Thai) 어군, 흐몽 자오(H'mong-Dao) 어군, 까다이(Kadai) 어군, 말라요 폴리네시아(Malayo-Polinesian) 어군, 땅 미얀마(Tang-Mianma) 어군, 한(Han, 漢) 어군 등으로 구분한다.

베트남에는 킨족(또는 비엣족)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킨족은 민족 내부에서도 지역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정치,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특징을 갖는다. 킨족 외 53개 소수민족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각 소수민족은 고유 언어 및 문화를 갖고 있다(외교부, 2018).

1.1.2.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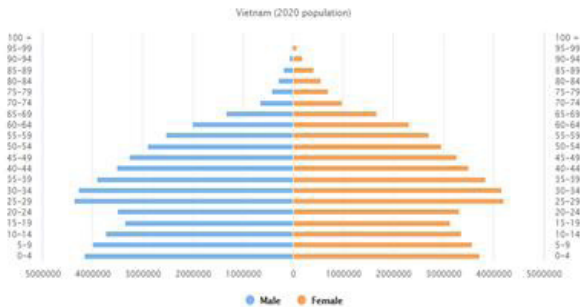
베트남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9,646만 명으로 세계 15위 수준의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지난 10년간 베트남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2010년에 8,797만 명이었던 베트남 총인구는 매년 1%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010년 대비 약 849만 명이 증가하였다(표 1-1).

[표 1-1] 10년간 베트남 인구분포 특성

연도	인구수 (명)	연간 인구 증감율 (%)	연간 인구 수 증감량 (명)	평균 연령 (세)	출산율 (%)	인구 밀도 (명/㎢)	도시 인구 비율 (%)	도시 인구수 (명)
2019	96,462,106	0.96	916,144	30.9	1.98	311	37.0	35,686,730
2018	95,545,962	1.00	945,314	30.9	1.98	308	36.3	34,658,941
2017	94,600,648	1.03	960,226	30.9	1.98	305	35.6	33,642,498
2016	93,640,422	1.04	963,346	30.9	1.98	302	34.9	32,635,787
2015	92,677,076	1.05	941,885	30.5	1.96	299	34.1	31,635,369
2010	87,967,651	0.97	826,998	28.5	1.93	284	30.6	26,910,696

(출처 : Worldmeter, Vietnam population)

베트남 인구를 구성하는 평균 연령은 30.9세로 젊은 청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베트남의 풍부한 인력 공급으로 이어져 높은 노동력 생산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의 잠재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1).



[그림 1-1] 2020년 기준 베트남 인구 피라미드

(출처 : Worldmeter, Vietnam population)

성별 기준으로는 베트남 전체 인구 가운데 남자가 49.93%, 여자가 50.07%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표 1-2).

[표 1-2] 2019년 기준 베트남 성비

남성인구수 (명)	남성비율 (%)	여성인구수 (명)	여성비율 (%)	전체인구수 (명)
48,598,254	49.93	48,740,329	50.07	97,338,579

(출처 : Worldmeter, Vietnam population)

한편 지난 10년간 베트남은 도시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 거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3,569만 명으로 37%에 불과하며 여전히 농촌인구가 63%를 차지한다.

베트남 인구의 도시별 분포를 보면 경제 수도인 호치민(Hồ Chí Minh)이 약 347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행정 수도인 하노이(Hà Nội)가 143만 명, 다낭(Đà Nẵng) 75만 명, 하이퐁(Hải Phòng) 60만 명, 비엔호아(Biên Hòa) 41만 명 순이다. 그 외 인구수가 10만 명~100만 명인 도시는 33개 지역, 1만 명~10만 명인 도시는 52개 지역이다(표 1-3).

[표 1-3] 2019년 기준 베트남 주요도시 인구분포

순위	도시	인구수(명)
1	호치민(Hồ Chí Minh)	3,467,331
2	하노이(Hà Nội)	1,431,270
3	다낭(Đà Nẵng)	752,493
4	하이퐁(Hải Phòng)	602,695
5	비엔호아(Biên Hòa)	407,208

(출처 : Worldmeter, Vietnam population)

베트남 내 한국인 거주 수는 2019년 기준 약 8만 명으로 그중 일반인은 약 7만 명, 유학생은 약 2천 명으로 나타났다. 남녀 비율에서는 남성이 5만 명(62.3%), 여성이 3만 명(37.6%)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표 1-4] 2019년 기준 베트남 내 한국인 거주 수

(단위 : 명)

구분	재외동포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체류자		계
		일반	유학생	
남	50,605	49,350	1,255	50,605
여	30,605	29,250	1,355	30,605
계	81,210	78,600	2,610	81,210

(출처 : 외교부, 2019)

1.1.3. 언어

베트남은 총 5개의 언어가 법률에 따라 허용되며, 그중 베트남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베트남은 6성조를 사용하여 발음, 장단과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어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한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하였으나 8~9세기경 한자의 뜻과 음을 바탕으로 만든 찌놈(chunom)을 사용하였다. 1878년 프랑스 식민 정부는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를 국어로 공인하고, 1882년부터 법령을 공포하여 학교, 공문서에서 사용하게 했다. 1915년 하노이(Hà Nội)와 1919년에 후에(Huế)에서 각각 과거시험을 폐지하였는데, 이를 시작으로 한자와 찌놈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지금의 베트남어가 국어로 자리 잡았다(외교부, 2018).

1.1.4. 종교

베트남의 종교는 불교, 기독교, 까오다이교, 호아하오교 등으로 구성된다. 대다수 베트남 국민의 종교는 불교로, 전 국민의 약 70% 이상이 불교신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불교신자는 약 1,100만 명(전체 국민의 약 12%)으로 추산된다. 가톨릭은 포르투갈과 프랑스를 통해 16세기경 베트남에 전파되었으며 신자 수는 약 650만 명이다. 개신교는 17세기경에 전해졌으며 신자 수는 약 150만 명(전체 국민의 약 2%)으로 추정된다. 그 외 베트남의 신흥종교로는 까오다이교와 호아하오교가 양대산맥을 이룬다.

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불교, 유교, 도교의 영향을 주로 받은 것으로 전해 내려오며, 일상생활 속 미신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토속신앙의 대표적인 예로 지신과 부의 신을 가정이나 사무실, 상점 등에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거나, 굿과 고사를 지내며, 길일을 택해 장례식을 치른다(외교부, 2018).

1.1.5. 교육

베트남의 교육 분야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등교육은 개혁정책 이전에 무상으로 실시되었으나 1990년도부터 유료화가 되었으며, 사립학교도 설립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기술보급 및 과학 실용화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의 정규교육은 5-4-3-4 학제를 실시한다. 초등학교는 5년(6~10세), 중학교는 4년(11~14세), 고등학교는 3년(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4년(18~21세)이다. 그러나 일반 대학교와 달리 약대, 치대,

기술대는 5-6년제로 운영된다. 베트남의 교육기관은 공립, 사립, 민간 학교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사립학교의 비율은 전체의 약 10~25%를 차지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베트남의 유아교육은 생후 3~4개월부터 3년간 다니는 유아원과 3~5세부터 3년간 다니는 유치원으로 구분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중학교를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와 기술학교의 진학을 결정한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우수반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진학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며,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국영기술학교에 진학하여 직업 기술 교육을 받아 사회로 진출한다.

고등학교(15~17세, 3년간)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으로 구분하여 집중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특수 학교가 전국에 약 200개가 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기술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기술학교는 기술고등학교(3년) 과정 후 취업을 하거나 기술전문학교(3년) 또는 기술학교(4년)에 진학·졸업하여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일반 대학의 교육은 3년 과정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 대학원 등이 있다.

1993년 말부터 우수대학 육성책으로 하노이국립대학교, 호치민국립대학교, 타이응웬대학교, 후에대학교, 다낭대학교 등 5개 종합대학이 설립되었다(외교부, 2018).

1) 주요 대학

국립대가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 한 곳씩 위치했으며 지방대학과 149개

의 공립대와 25개의 아카데미가 베트남에 있다.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à Nội)는 1906년에 설립되었으며 내부에는 기술대, 경제대, 자연과학대, 인문사회대, 외국어대, 사범대 등을 운영 중이다.

호치민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ồ Chí Minh City)는 1995년 설립되었으며, 백화대, 자연과학대, 인문사회대, 국제대, 정보통신대 등을 운영 중이다(외교부, 2018).

2) 주요 연구소

베트남 과학기술원은 1975년에 설립되어 현재 수학, 물리, 생물학, 정보 기술, 우주기술, 지구과학, 환경, 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직속 기관이다.

베트남 사회과학원은 1953년에 설립되어 세계의 발전 경험과 이론 및 주요 발전 추세, 전반적인 베트남 내 민족, 종교,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문제, 정치 시스템 개혁과 베트남 공산당 정권, 지도 능력 고양 등의 분야를 운영하는 국책기관이다.

베트남 원자력에너지원은 2004년에 설립된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다.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 개발 계획, 정책과 전략연구 및 전반적인 원자력 에너지 관련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외교부, 2018).

베트남 국립산림과학원은 1961년 설립되어 현재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및 산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하여 산림 과학 연구, 기술 이전, 대학원 교육, 국제 협력, 컨설팅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수행 중에 있다. 인프라 및 기술시설로는 조직 배양 실험실, 질병 및 해충 연구소, 산림 토양, 식물 및 산림환경 연구소, 목재 및 임산물

보존 연구소, 목재 해부학, 기계 및 물리 특성 실험실 그리고 목재가공 및 산림 공학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1.1.6. 언론

베트남에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199개의 일간신문사, 658개의 잡지사 등 총 857개의 언론사가 존재한다. 105개 온라인 언론사가 있으며 이들은 현재 총 248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의 방송국은 국영 베트남 방송과 베트남 라디오방송, 베트남 라디오방송 소속 직업 훈련위원회(Vietnam Multimedia Corporation; VTC) 디지털방송사,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64개를 포함하여 총 67개의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은 당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에서 주요 언론매체들을 발행한다. 총리 직속 국영 매체 사장과 언론인협회 회장은 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장관급 인사이다.

당 정치국 소속의 언론인협회는 전국에 지부를 세워두고, 언론인 권익과 이해 조정을 관장하며 외국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부는 언론국으로 국내 언론의 인·허가, 검열 등 업무를 이행한다.

외신은 외교부 공보국과 Foreign Press Center에서 사증발급, 취재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데, 언론·통신분야는 외국자본 소유권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매체는 다음과 같다(외교부, 2018).

1) 통신

- Vietnam News Agency : 국영통신, 세계 21개국에 특파원 파견

2) 방송

- 베트남TV : 국영 TV, 6개 채널의 베트남 유일 전국 TV방송
- Voice of Vietnam : 국영 라디오, 5개 채널로 전국 방송
- VTC : 11채널의 베트남 디지털 방송
- 하노이TV :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문공부 운영, 하노이와 북부 12개 성에 방송

3) 신문

- 인민일보(Nhan Dan) : 공산당 기관지, 일간 자료 중 최대 권위지
- 인민군보(Quan Doi Nhan Dan) : 국방부 기관지, 3대 일간지 중 하나
- 새하노이(Hanoi Moi) : 하노이 인민위원회 발행, 3대 일간지 중 하나
- 노동(Lao Dong) : 노동총연맹 기관지, 주요 경제일간지로 노동문제를 주로 취급함
- 문화(Van Hoa) : 주 3회 문화공보부를 발행, 문화·관광 관련 전문지
- 대단결(Dai Doan Ket) : 조국전선 기관지
- 선봉(Tien Phong) : 청년동맹 기관지, 대중지
- 주간국제(Quoc Te) : 외교부 기관지, 국제문제 주로 취급
- Vietnam News : 국영통신사 발행, 유일한 중앙 영자 일간지
- Vietnam Investment Review : 기획투자부 발행, 경제전문 영자 주간지
- Vietnam Economic News : 산업무역부 발행, 경제전문 영자 주간지

1.1.7. 행정구역

베트남의 행정 구역은 세 가지 단위의 수준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위는 성(제1급 행정구), 두 번째로는 현(제2급 행정구), 마지막으로 사(제3급 행정구)로 구성된다. 베트남의 제1급 행정구는 58개의 성과 같은 수준인 5개의 중앙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2). 제2급 행정구는 성(Tỉnh)의 경우, 타인포(Thành phố), 후옌(Huyện), 티사(Thị xã)로 구성되며, 타인포(Thành phố)는 성도 또는 성시, 후옌(Huyện)은 우리나라의 군과 같은 수준이며, 티사(Thị xã)는 우리나라의 시와 같은 수준이다. 중앙직할시는 제2급 행정구가 꾸언(Quận), 후옌(Huyện), 티사(Thị xã)로 구성되며, 꾸언(Quận)은 우리나라의 구와 같은 수준이며, 후옌(Huyện), 티사(Thị xã)는 성의 2급 행정구와 동일한 수준이다. 제3급 행정구는 후옌의 경우 티쩨(Thị trấn)과 싸(xã)로 구성되며, 티쩨(Thị trấn)은 우리나라의 읍과 같은 수준이고, 싸(xã)는 우리나라의 마을과 같은 개념이다. 티사(Thị xã)의 경우, 프영(phường)과 싸(xã)로 구성되며, 프영(phường)은 우리나라의 동과 같은 수준이다.

1.2. 경제

1.2.1. 경제적 현황 및 전망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도이모이는 공산주의의 기틀은 유지하면서 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각자 농지를 경작하여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출발하여 20년간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



[그림 1-2] 베트남 행정구역 분포도

확대되고 노동력, 상품,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한 산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경제개혁을 통해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으며,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유도하여 산업화의 초석을 닦을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성장률은 7.08%로 베트남 정부의 예상 성장률보다 0.38%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현재 베트남 정부는 `19년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계획 주요목표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6.6~6.8%로 설정하였다.

1.2.2. 수출입 현황

베트남의 개방과 산업화 정책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장점은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 도이모이 개혁 기간 동안 베트남의 연간 수출증가율은 평균적으로 20%에 이른다. 도이모이 개혁 기간 이전 50만 달러(USD) 수준이었던 수출총액은 2004년에 260억 달러(USD), 2005년에 320억 달러(USD)를 달성하였으나, 2007년부터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 2008년 말에는 적자가 175억 달러(USD)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7년 베트남의 교역량은 총 4,251억 달러(USD)로 수출 2,140억 달러(USD), 수입 2,111억 달러(USD)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 총 교역량 기준대비 21.7%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며, 그 중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2017년 대한국 수출액은 2016년 대비 29.8% 증가한 148억 달러(USD)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국에서도 한국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82억 달러(USD)를 기록하였다. 향후에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의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3. 외국인 투자 현황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WTO 가입과 철강·석유화학 등 대

규모의 중공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현재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2011년에는 총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수준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누계 기준,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건수 및 투자액은 총 24,748건, 3,187억 달러(USD)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2017년 누계 기준 한국이 6,532건, 577억 달러(USD)를 기록하였고, 일본(495억 달러(USD)), 싱가포르(422억 달러(USD)), 대만(309억 달러(USD))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014년 11월 이후, 투자건수 및 투자액에서 모두 1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활발한 대 베트남 투자국이다.

1.2.4. 노동 환경

베트남의 현행 노동법은 2012년 6월 18일 제정되어,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법과 현실의 간극이 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8년 6월, 2019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임금 개념 및 체계의 개편, 퇴직연령, 노동계약, 근로시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임금부문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협약 제 95조에 의해 임금의 개념을 “협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은 모든 금액”으로 개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해 급여 공제, 임금 지불, 업무 중단 임금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서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VGCL)은 8.18%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베트남 상공회의소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CCI)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2% 수준을 주장하였다.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양측은 각각 6.7%(VGCL측), 4%(VCCI측) 인상안으로 조정했으며 베트남 임금위원회가 최종적으로 2020년 5.5% 임금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연말 베트남 총리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이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임금이 정해진다. 이에 베트남 최저임금제도는 63개 시·성을 1~4 지역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대한 최저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2020년 임금 인상으로 인해, 베트남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은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최소 150,000동(VND)에서 최고 240,000동(VND)을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월 급여 기준, 1지역이 4,420,000동(VND), 2지역이 3,920,000동(VND), 3지역이 3,430,000동(VND), 4지역이 3,070,000동(VND)을 받게 된다(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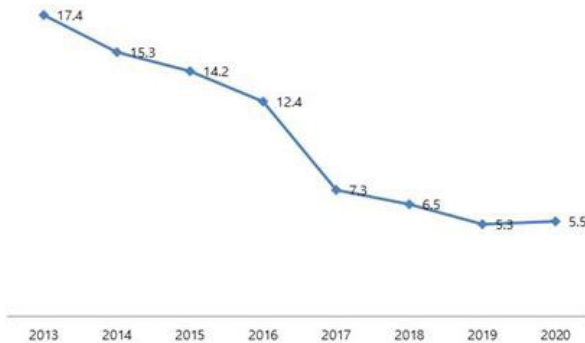
1~4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 및 지역은 아래와 같다.

- 1 지역 : 호치민(Hồ Chí Minh), 하노이(Hà Nội), 하이퐁(Hải Phòng), 동나이(Đồng Nai), 빈둥(Bình Dương), 붕따우(Vũng Tàu)
- 2 지역 : 다낭(Đà Nẵng), 켄터(Cần Thơ), 나트랑(Nha Trang), 닌빈(Ninh Bình), 하이즈엉(Hải Dương), 흥옌(Hung Yên), 박닌(Bắc Ninh), 타이응웬(Thái Nguyên) 등
- 3 지역 : 떠이닌(Tây Ninh) 일부, 벤째(Bến Tre) 일부, 짜빈(Trà Vinh) 일부, 박닌(Bắc Ninh) 일부, 타이응웬(Thái Nguyên) 일부 등
- 4 지역 : 1, 2, 3지역 외 지역

[표 1-5] 2020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계획(월 급여 기준)

구분	2020년	2019년	인상률(%)
1지역	4,420,000동(VND)	4,180,000동(VND)	5.7
2지역	3,920,000동(VND)	3,710,000동(VND)	5.7
3지역	3,430,000동(VND)	3,250,000동(VND)	5.5
4지역	3,070,000동(VND)	2,920,000동(VND)	5.1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그림 1-3]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퇴직연령과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특별업종과 업무에 해당하는 과학자, 건설기술자, 의사,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 한하여 퇴직연령을 5세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연 200시간까지 허용하였던 초과근로시간을 연 400시간 이상 600시간 이하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휴식시간과 관련하여서도 근무 시간에 휴식시간을 삽입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논의 중에 있다.

1.3. 정치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공화제로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집단 지도체제 만장일치에 따른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공산당 창립(1930년) 이래 고수하여오고 있다.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도이모이 정책에 따라 행정부, 의회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공산당, 인민의회에 의해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1.3.1. 집단 지도체제

1)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 CPV)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의 유일한 정당으로 최종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다. 기본정책은 호치민의 통치철학인 대중정책을 적용하고, 대중의 혁명운동, 대중의 집단 주권 확립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추구한다. 당 내부의 견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 위원회 및 중앙감찰위원회 등 중앙조직과 각 지역 및 직능별 조직으로 편성된다(그림 1-4). 당원은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기준 약 450만 명 내외(총 인구 약 5%)로 추산된다.



[그림 1-4] 베트남 공산당 조직 및 구조(출처 : 외교부, 2018)

가. 전당대회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 최고기관으로 매 5년마다 개최하여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과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임의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정치국이 결정한 정책이나 세부사항 또는 인사개편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당대회는 창당 이후 12회가 개최되었으며, 다음 전당대회는 2021년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나. 당 중앙집행위원회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 소집되고 정치국원, 당서기장 등을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보통 연 2회 개최)한다. 당 정치국은 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을

보유하며, 경제건설과 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중앙 서기국은 정치국원과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치국이 선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의 일상 업무 처리 및 지도,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외교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지시, 정치조직간 협력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한다.

다. 당 정치국

베트남 공산당 최고 정책결정권을 보유하며 경제건설, 관리, 조직 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당 집행여부 및 감독 그리고 당 이데올로기 통합성을 유지하며 당 고위직 임명, 국가 고위직 임명을 제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 중앙 서기국

당의 일상 업무 처리 및 지도,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외교 사안의 결과 지시, 정치조직간 협력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폐지되었으나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부활하였다. 정치국원과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치국이 선출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2) 국가주식

베트남의 국가 주식은 2019년 현재 응우옌 푸 쯡(Nguyen Phu Trong)으로, 2016년 국회의 의해 국회의원 중 선출되었던 쩌 다이 광(Tran Dai Quang) 전 주석이 2018년 서거함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

주석에 임하고 있다. 선출방법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국가 주석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며, 국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또한, 국회 상무위원회 참석 권한이 있으며 임무와 권한 수행에 필요한 명령 및 결정 시달, 헌법 및 법률 공포,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및 법관, 최고인민감찰원 부원장 및 검사 임명 및 해임,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결의에 근거, 전쟁상태 선포, 사면권 행사, 대사 임명 및 소환권,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 조약 협상 및 서명권(국회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조약 비준 및 가입권 보유, 민군 통수, 국방안보위원회 당연직 의장(전시에 국회는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국방안보위원회에 부여) 권한 및 역할을 수행한다.

3) 국가부주석

베트남의 국가 부주석은 2019년 현재 당 티 응옥 텡(Dang Thi Ngoc Thinh)이다. 선출방법은 국가 주석과 같다. 부주석은 평소에는 주석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정분야의 업무를 위임한다. 만약, 주석이 장기간 업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유고시에는 주석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1.3.2. 국회

국회는 최고 대표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안, 국가 기구의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감찰권을 행사한다.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 등의 활동을 보고받으며, 이들을 선출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

책을 결정한다.

베트남 국회는 단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는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4명, 상임위원 13명이며 민족의회 및 9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현 14대 국회의원은 491명(2017년 7월 기준)으로 2016년에 당선되어 2021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회기는 매년 5월, 10월 총 2회 정기국회를 개최하며,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주석, 총기 또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 개최가 가능하다.

국회 의장은 현재 응웬 티 김 응언(Nguyen Thi Kim Ngan)이며, 부의장은 멩 티 풍 (Tong Thi Phong), 도 바 띠 (Do Ba Ty), 풍 꾸옥 히엔 (Phung Quoc Hien), 우웅 쭈 리우 (Uong Chu Luu)이다.



[그림 1-5] 베트남 정부 조직도 (출처 : 외교부, 2018)

1.3.3. 행정부

국회 의결사항의 최고집행기관인 행정부는 총리, 부총리 5명, 18개 부처 장관 및 부와 동등한 4개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업무를 국회, 국회상임위, 국가주석에게 보고하고, 법령, 예산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베트남의 총리는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 정부 및 각급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현재 베트남의 총리는 2016년부터 임명된 응웬 쑤언 폭(Nguyen Xuan Phuc)으로 임기는 5년이다.

1.3.4. 사법부

베트남 사법부의 의의는 사회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가와 조직의 재산 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 보호 등에 있다.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임기 5년으로 국회에서 선출되며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회 상무위원회에 헌법해석권이 있어 사법부의 국회, 정부 견제 기능은 미약하다.

검찰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검찰원, 군 검찰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기관 및 단체, 인민의 법 준수 감독과 법 집행 확보 위한 기소권 보유를 기본으로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임기 5년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각 지방 인민협의회에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의무를 지닌다.

1.4.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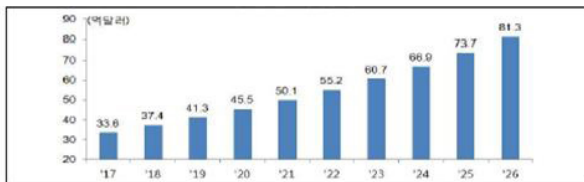
1.4.1. 인프라 구축 현황

[표 1-6] 베트남 인프라 경쟁력 지수

인프라전체		도로		철도		항구		항공		전력공급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3.9	79	3.4	92	3.0	59	3.7	82	3.8	103	4.3	90

(출처 : 베트남 도로총국, 2017)

베트남의 인프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건설로 경쟁력 지수가 2010년 ~2011년 123위에서 2017년, 2018년 137개국 중 79위 수준으로 빠른 성장을 이뤘으나, 도로, 항공, 전력 공급에서는 각 92위, 103위, 90위로 여전히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1-7). 그러나 향후 베트남 인프라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기준 33억 달러(USD)에서 10년 뒤인 2026년에는 2017년 대비 240% 증가한 81억 달러(USD)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6).



주 : 베트남 동(VND)으로 표시된 자료를 '17년 평균 환율(22.718동/달러)로 환산
자료 : BMI Research, Vietnam Infrastructure Report Q1 2018

[그림 1-6] 베트남 인프라 시장 규모 현황 및 추이

1.4.2. 인프라 운용 현황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걸쳐,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관련 투자법 및 법규를 제정하여 인프라 및 제조업 기반 구축을 실시하였다. 제정된 법규를 바탕으로 여러 인프라 부문 가운데 도로, 철도, 전력 부문에 대한 우선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 정부 신남방정책 대상국 가운데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미래전략개발부, 2018).

1.4.3. 인프라 구축 계획

국제사업모니터링기구(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BMI)에 따르면, 베트남 인프라 시장이 2018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약 10%의 성장하여, 그 규모가 2018년 37억 4천만 달러(USD)에서 2022년 55억 2천만 달러(USD)로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81억 3천만 달러(USD)로 2018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미래전략개발부, 2018).

1.4.4. 도로

[표 1-7] 베트남 도로 현황

구분	계	국도	지방도	구도	국지도	도시도	특수도로
길이 (km)	312,464	21,813	27,176	57,294	173,294	23,389	8,528

베트남의 도로는 2017년 기준 312,464km로, 화물 수송량의 21.8%, 여객 수송량의 73.2%가 도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또한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과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 위주로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며, 중부지역은 비교적 도로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도로의 포장상태는 좋지 못하며, 전체 도로의 28%가 포장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도로 연장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사업진행을 줄이고 민간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형태의 사업진행을 추진 중이다. 호치민 제3순환도로 구간은 BOT(Build-Operate-Transfer)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도로 연장사업을 진행 중이며, 북남고속도로 구간은 BOT와 World Bank를 통해 도로 연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고속도로는 현재 700km로 향후 2030년까지 6,411km 수준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2,703km를 연장하고, 이후 3,708km를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류·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추진 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30%, 나머지 70%는 민간합작투자사업(PP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4.5. 철도

1) 구축 현황

베트남의 철도는 총 3,143km가 구축되어있으며, 주요 6개 노선과 기

타 간선노선으로 구성된다. 모든 노선은 단선으로 구축되어있다. 하노이 소재 국영회사인 베트남 국영철도(Vietnam National Railway: VNR)에서 철도관리를 담당하고, 주요 수송화물은 전자재, 석탄, 비료, 시멘트 및 기계류이다. 철도는 전체 베트남 수송 인프라의 24%를 차지하며 여객 수송량의 3.4%, 화물 수송량의 2%를 담당하고 있다.

2) 운용 현황

베트남의 주요 노선의 총 연장거리는 2,669km로 라오까이(Lao Cai) 노선, 옌벤(Yen Vien), 통현(Thong Nhat)노선, 동당(Dong Dang) 노선과 하노이(Hà Nội), 할롱(Ha Long)과 까엵(Kep)노선, 하이퐁(Hải Phòng)노선과 자림(Gia Lam) 등으로 구성된다.

베트남의 철도역은 총 278개로 하노이(Hà Nội)와 호치민(Hồ Chí Minh)에 116개가 있다. 이 중 162개는 대체로 시설이 양호하며, 116개는 시설이 노후화된 간이역이다. 대부분의 철도는 궤도가 비효율적이며 통신 관제시스템의 미정비, 차량 노후화로 인해 수송 부담률 또한 낮은 현상을 보인다.

3) 구축 계획

호치민(Hồ Chí Minh)시 메트로관리위원회는 약 3억 5천만 달러(USD) 규모의 모노레일 3호선(고법(Gò Vấp)구~12구)을 PPP 방법으로 진행하는 계획서를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 제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계획을 수립, 2019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착공되어, 2024년에 완공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팜반치(Pham Van Chi)대로와 응웬오아인

(Nguyen Oain)대로의 교차로(고밥(Govap)구), 팜반치(Phạm Văn Chí)대로, 광중(Quang Trung)대로, 광중 소프트웨어파크(Quang Trung Software City; QTSC), 토기(Togi)대로, 판짱히엵(Trang-chan Hiep)역을 연결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연장 16.5km에 해당한다. 판짱히엵(Trang-chan Hiep)역에는 6ha 가량의 차고지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고법(Gò Vấp) 6거리와 메트로 4호선과도 접속될 계획이다. 그리고 철도수송 종합발전 계획 2020(전체 사업비 91억 달러(USD))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철도 현대화 계획으로 2020년까지 하노이(Hà Nội)와 호치민(Hồ Chí Minh)간 200km/h 복선·철도와 2050년까지 하노이(Hà Nội)와 호치민(Hồ Chí Minh) 간 철도교량 교체 사업을 추진 및 남과 북 고속철도 350km/h를 건설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2019).

아울러 2030년까지는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과 환경 발전을 위해서 호치민(Hồ Chí Minh)에 6개, 하노이(Hà Nội)에 8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구축하고자 계획 중이다.



[그림 1-7] 베트남 철도 분포도

(출처 : Le train au Vietnam, 2019)

1.4.6. 항만

1) 구축 현황

베트남에는 총 114개 항만이 전국에 걸쳐 있으며 주요 항만으로 중부 다낭항, 북부 하이퐁항, 남부 사이공항이 있다. 총 교역량의 80% 이상이 사이공항과 하이퐁항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58%의 화물 수송량을 담당한다.

[표 1-8] 권역별 복합항만단지 개발 계획

권역	복합항만단지	화물 운송량(백만 Ton)		
		2015년	2020년	2030년
1권역 (북부)	꽝닌(Quảng Ninh), 하이퐁 (Hải Phòng)	112~117	153~164	260~295
2권역 (북중부)	응이손(Nghi Sơn), 응에안 (Nghệ An), 하띤(Hà Tĩnh)	10.7~11	15.2~16	27.3~30.8
3권역 (중부)	꽝빈(Quảng Bình), 투안 티엔후에(Thừa Thiên - Huế), 다낭(Đà Nẵng), 키하(Kỳ Hà), 중 (Dung Quất)	31~32.5	56.5~70	97.4~115
4권역 (남중부)	꾸이년(Qui Nhơn), 붕로 (Vũng Rô), 칸호아(Khánh Hoà), 까나(Ca Na), 빈 투 언(Bình Thuận)	24~25	61~62.5	85.4~91.3
5권역 (남부)	붕따우(Vũng Tàu), 호치 민(Hồ Chí Minh), 동나이 (Đồng Nai), 빈둥(Bình Dương)	142~145.5	191~200	308~345.8
6권역 (메콩강 하류)	컨터(Cần Thơ), 띠엔장 (Tiền Giang), 벤 짜(Bến Tre), 동탑(Đồng Tháp)	10~11.2	25~28	66.5~71.5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베트남에서의 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량은 베트남 경제 성장,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 운용 현황

베트남 항만은 지역별 거점 항구로 화물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

나며,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화물 수송량의 70%는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항구 중 캣라이(Cát Lai)항이 전체 컨테이너 수송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도로 및 물류창고와 같은 항만 등의 인프라 부족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베트남 투자 시, 지역별 거점 항구의 화물 편중 현상을 고려하여 가까운 항구 이용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활용이 필요하다.

1.4.7. 전력

베트남의 2018년 전체 발전 설비량은 47,900MW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력공급량은 2017년 대비 10.36% 증가하였으며, 증가량은 2,129억 kWh에 달했다. 전력소비량의 경우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0.47% 증가한 1,929억 kWh를 기록하였다.

1) 수력발전

2018년 베트남 내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은 2017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강수량이 전년 대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력발전의 경우 강수량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에 따라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에 향후 발전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 화력발전

베트남은 앞서 언급한 수력 발전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5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030년까지 화력발전의 비중을

53.2% 수준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의 생산량은 소모되는 화력용 석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이 수력 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이때 소모되는 화력용 석탄은 국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므로, 발전소 운영이 비용대비 효과적인 장점을 가진다. 베트남 석탄광물공사에 따르면, 소모되는 화력용 석탄의 국내 생산량은 2018년에 2017년 대비 22.9% 증가한 2,9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재생에너지

베트남 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2018년 121건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승인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량은 2020년에 6,100MW, 2030년에는 7,200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따라 베트남에서도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8. 공항

1) 구축 현황

국제공항은 떤선 (Tân Sơn Nhất), 노이바이(Nội Bài), 깃비(Cát Bi) 등 7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14개가 운영 중이다. 공항은 베트남 전체 여객 수송량의 21.4% 담당하고 있다(그림 1-8).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 시장 중 하나이다. 지난 10년간 베트남 항공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17.4%로 인근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인 7.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Open Skies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재 베트남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항공 시장 성장이 맞물려 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항공시장이 커짐에 따라,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항공 관련 대규모 투자 기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 베트남 공항 위치도

2) 운용 현황

항공업 규제를 담당하는 교통부 산하 기관인 베트남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Vietnam; CAAV)에 따르면 2010년 ~2017년 연평균 여객 증가율은 16%, 화물 증가율은 14%로 나타났다. 베트남 공항은 2016년 대비 승객은 국제선 1,300만 명, 국내선 8100만 명으로 총 9,400만 명으로 16%가 증가하였고, 화물은 136만 ton으로 22% 상승했다.

2014년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노이바이(Nội Bài) 공항의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하였고, 2016년 캣비(Cát Bi)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변경했다.

베트남의 하이브리드 항공사 뱀부항공(QH)이 본격적으로 2019년 10월부터 한국 시장에 항공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해당 노선은 모두 주 7회로 운항하고 있다.

3) 구축 계획

2009년 베트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10개 국제공항과 16개 국내선 공항을 2020년까지 확보하고, 승객 수용량을 증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베트남 정부는 기존 2020년까지의 항공산업 개발계획을 2030년까지로 수정했다.

2020년까지 공항을 통한 유동 인원이 1억 3,100만 명에 이르고,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여객기 운항은 연간 2억 8천만 명, 연평균 성장률은 8%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객기 화물 운송량은 2020년까지 220만 ton으로 늘어나 연평균 성장률이 18%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화물 운송량은 680만 ton에 달하며 매년 1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떤선 (Tân Sơn Nhất)국제공항의 승객수용량 초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롱탄국제공항(Long Thành International Airport) 신설을 추진 중이다.

뎬부항공은 추후 아시아, 유럽 및 미국과 같은 대륙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등 노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1.4.9. 정보통신






1) 통신서비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매출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Viettel, Mobifone, VNPT-Vinaphone(모든 국영기업)은 베트남의 통신 시장의 점유율의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Viettel은 이 중 가장 큰 업체로 2020년까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대 통신사는 2016년 10월 4G/LTE 면허를 부여받았으며, 2017년 베트남에서 4G 서비스를 시작하였다(표 1-9).

2) 휴대 전화 네트워크

현재 베트남에는 VNPT-Vinaphone, Mobifone, Viettel, Vietnammobile, Gtel 등 5개 이동통신사가 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는 1억 2,800만 명이었으며 이 중 6,300만 명이 Viettel, 3,460만 Mobifone, 2,050만 VNPT-Vinaphone, 590만 Gtel, 360만 명이 Vietnammobile를 사용하였다.

[표 1-9] 베트남 이동통신사 현황

기업명	소유자	설립년	로고
VinaPhone	베트남 우편·통신사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VNPT)	1996	
MobiFone	베트남 정보통신부	1993	
Viettel	베트남 국방부	1989	
Vietnam mobile	Hanoi Telecom, Hutchison Telecommunications International	2009	
Gmobile	베트남公安부 산하 Gtel Mobile	2012	

(출처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3) 인터넷

2017년 기준 고정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는 1,150만 명이며 3G 네트워크를 통한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약 4,720만 명이다.

국제사업모니터링기구(BMI)에 의하면, 베트남 인터넷 시장은 어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인터넷 TV의 성장에 힘입어 향후 연평균 약 9%의 성장이 예상된다.

1.5. 자연환경

1.5.1. 지리적 위치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다(그림 1-9). 국토면적은 330,341㎢로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한다.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다. 베트남의 동쪽 해안선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통킹만,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시암만과 접해있고, 남북쪽으로 긴 해안선의 길이는 3,260km에 달한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총 1,650km 길이를 가지며, 폭은 약 50km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와의 국경의 길이는 1,228km, 중국과의 국경은 1,281km, 라오스와의 국경은 2,130km이다.



[그림 1-9] 베트남 위치

1.5.2. 기후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의 특성 때문에 열대, 아열대 및 온대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베트남의 기후는 몬순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강수량이 많고 습도가 높다. 열대지대 외곽과 산간지대는 기후가 온화한 편이다. 하노이의 경우 1월 최한월 평균기온이 16℃이며, 대체로 북위 18°이남지역은 열대기후, 북쪽은 온대겨울건조기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계절은 동절기(11월~4월)와 하절기(5월~10월)로 나뉘지만, 남부 지방에서는 두 계절 간 기온차이가 크지 않다. 반대로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사계절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베트남의 연간 강수일은 100일 가량이며, 평균 강수량은 1,500~2,000mm, 습도는 약 80%이다. 또한 몬순의 영향으로 주변 국가에 비해 약간 낮은 연평균 기온을 보여 약 22~27℃이다.

1) 하노이(Hà Nội) 기후

하노이(Hà Nội)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다. 베트남의 5월~9월은 우기로서, 덥고 폭우가 빈번하고 10월~4월은 건기로서, 쌀쌀하고 강수량이 적다. 연평균기온은 23.2℃, 겨울 평균기온은 17.2℃인데 1955년도에 최저기온인 2.7℃를 기록한 바 있다. 여름 평균기온은 29.2℃ 이고, 1926년도에 최고기온인 42.8℃를 기록했다. 연중 평균 강수일은 114일, 평균 강수량은 1,800mm이다.

2) 하이퐁(Hải Phòng) 기후

베트남 북부의 하이퐁(Hải Phòng) 지역은 열대성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사계절이 있지만 일년 내내 따뜻하고, 연평균 기온은 23~24℃, 강우량은 1,600~1,800mm이다.

3) 꽝닌(Quảng Ninh) 기후

꽝닌(Quảng Ninh)은 북베트남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으로 사계절이 뚜렷하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는 여름(5월~9월)은 덥고 습기가 많으며 비가 많이 온다. 겨울(10월~4월)은 쌀쌀하고 건조하며 강우량이 적다. 평균기온은 25℃를 웃돌며, 평균 강우량은 1,700~2,400mm이다.

4) 투안티엔후에(Thừa Thiên Huế) 기후

투안티엔후에(Thừa Thiên Huế)는 열대성 몬순기후로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더우며,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다. 평균기온은 25℃이며, 관광의 최적기는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다.

5) 다낭(Đà Nẵng) 기후

다낭(Đà Nẵng)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지는 열대성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은 28~29℃이고, 매년 9월과 10월에는 폭풍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6) 칸호아(Khánh Hoà) 기후

칸호아(Khánh Hoà)는 해양성 열대몬순기후 지역이지만 꽤 온화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26.5℃이고, 연강우량은 1,200mm를 넘는다.

7) 랍동(Lâm Đồng) 기후

랍동(Lâm Đồng)의 연평균 기온은 약 18℃로 다소 쌀쌀한 편이다. 이 지역의 중심도시 달랏(Đà Lạt)의 기후는 온화하다. 랍동(Lâm Đồng)은 폭포, 호수,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을 대표하는 꽃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8) 호치민(Hồ Chí Minh) 기후

호치민(Hồ Chí Minh)의 기후는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우기를 포함해 두 계절로 나뉜다. 겨울이 없으며 연평균 기온은 27.5℃, 연평균 강우량은 1,979mm로 관광하기에 좋다.

9) 바리아-붕따우(Bà Rịa - Vũng Tàu)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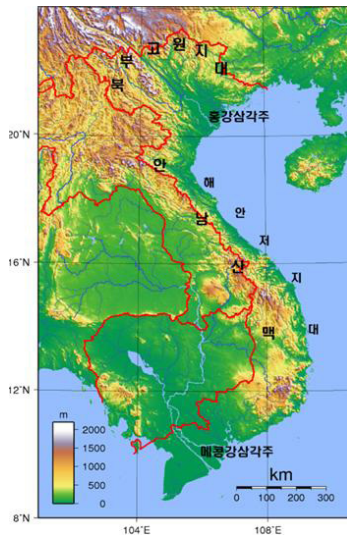
바리아-붕따우(Bà Rịa - Vũng Tàu)는 열대몬순기후 지역이다. 연평균기온은 27℃이고 좀처럼 폭풍우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조량이 많다. 붕따우(Vũng Tàu)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일년 내내 휴양시설이 활발히 운영된다.

1.5.3. 지형

베트남 국토의 면적은 330,341㎢로 그중 농지면적이 2016년 기준 115,268㎢로 전 국토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토는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북의 길이는 약 1,650km이고 동서의 길이 가운데 가장 좁은 곳은 약 50km이다. 섬을 제외한 해안선의 길이는 약 3,260km이고 해안을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하고 있다.

국토의 75% 이상이 산지이며, 4개의 산악지대로 나뉜다. 북서부의 중국,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이 가장 고도가 높고 이곳으로부터 라오스 국경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있다. 북쪽은 호앙리엔선(Hoàng Liên Sơn) 산맥을 중국과의 경계로 삼고 있는데 석회암 산지가 연속된다. 베트남 국토의 서쪽 경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이 안남산맥으로,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지만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는 서쪽으로는 완경사를 이룬다. 베트남 영토의 25%는 삼각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은 베트남에서 가장 비옥한 경작 지대이다. 북쪽에 위치한 송코이 강의 삼각주(16,700km²)와 남부지역에 위치한 메콩 강의 삼각주(40,000km²)가 대표적인 삼각주이다(그림 1-10).



[그림 1-10] 베트남 지형
(출처 : 위키백과, 2019)

1.5.4.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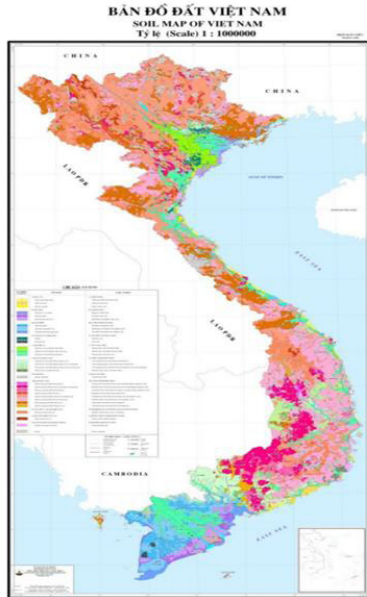
베트남은 대지나 건물을 세우는 공사를 할 때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의 지질이 외적 충격 없이도 바위가 부서지거나 땅이 내려앉는 풍화와 작은 단층이 많이 생기면서 암석이 부서져 내리는 단층과쇄대가 다수 발달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질시대 동안 강력한 지각운동을 받았다는 증거로, 공사나 산사태 등에는 주의를 필요로 하나, 풍화와 단층과쇄대로 인한 암석과 지층이 구조적으로 변형되거나 파괴되는 광범위적인 구조운동을 나타내기에 지질학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지질학 연구의 매력지로 평가 받아왔다(김승현, 2016).

1.5.5. 토양

베트남의 토양에는 웨랄라이트 토양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내륙지방과 산악지에 분포되어있으며, 분포면적은 약 2천만 ha이다. 웨랄라이트 토양은 또다시 염기성 및 중성 화성암 유래 자주-갈색토, 염기성 및 중성 화성암 유래 적갈색토, 염기성 및 중성 화성암 유래 황갈색토, 석회암 유래 갈색토, 점판암 및 변성암 유래 황적색토, 산성 화성암 유래 적황색토, 사암 유래 황색토, 홍적대지 황갈색토 8개의 토양으로 세분된다.

두 번째로 많이 분포되어있는 토양은 충적토(Alluvial soils)로 강 유역이나 해안가 평탄지에 쌓이는 하성 충적물에서 생성된 토양이다. 지형이 평탄하고 관개가 용이한 토양이기 때문에 식량 작물과 경제작물 생산에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한국의 하성평탄지에 분포하는 토양과 충적

토는 같은 토양이다. 분포면적은 약 3,500,000ha로 베트남 국토면적의 10%가 넘는다. 총적토는 주로 홍강과 메콩강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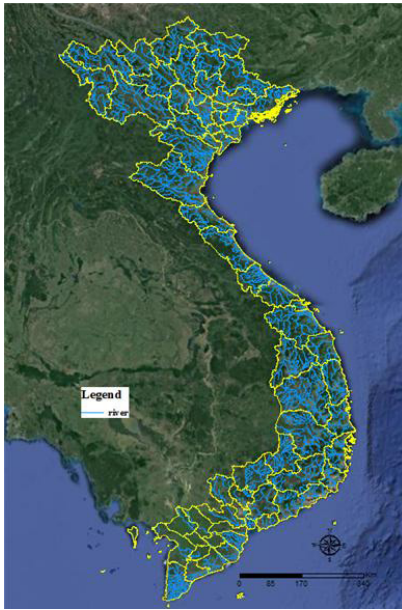


[그림 1-11] 베트남 토양 분포도

1.5.6. 수계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에 걸쳐 200개의 크고 작은 강이 분포되어 있는 조밀한 하천 체계를 갖고 있다. 강은 주민들에게 생활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수로 교통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과잉 개발에 따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베트남 하천 네트워크는 수자원의 보호, 관리, 사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

자원 보호 지원 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하천 네트워크는 수질을 엄격히 보호, 강변 침식을 야기할 수 있는 자원 개발 활동을 감시하고, 수력발전과 강 부두 사업을 심사하는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접근법에 따라 강 유역을 보호하고 있다(그림 1-12).



[그림 1-12] 베트남 하천 분포도



Part.

02

산림 현황

2.1. 산림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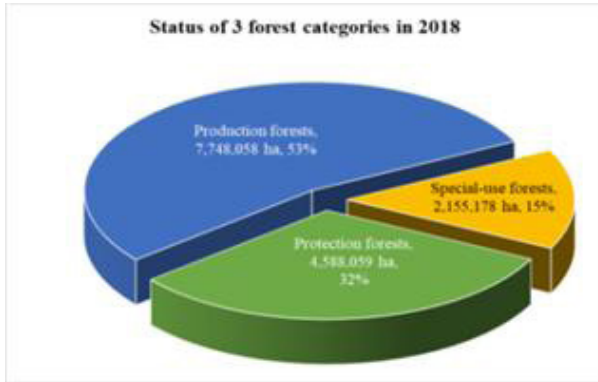
2.2. 임업 현황

2. 산림 현황

2.1. 산림자원 현황

2.1.1. 산림 현황

2018년 현재 베트남의 산림 면적은 1,624만 ha이며, 이 중 미립목지를 제외한 면적은 1,449만 ha이다. 베트남의 산림은 크게 특용림, 보호림, 목재생산림의 3가지로 구분된다. 2018년 농업개발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특용림은 2,155,178ha, 보호림은 4,588,059ha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인공조림지의 경우, 7,748,058ha로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2006-2020 산림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조림, 관리, 보호 등을 통해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1,449만 ha의 산림 중, 천연림은 1,025만 ha로, 전체 산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0%에 해당하는 424만 ha는 인공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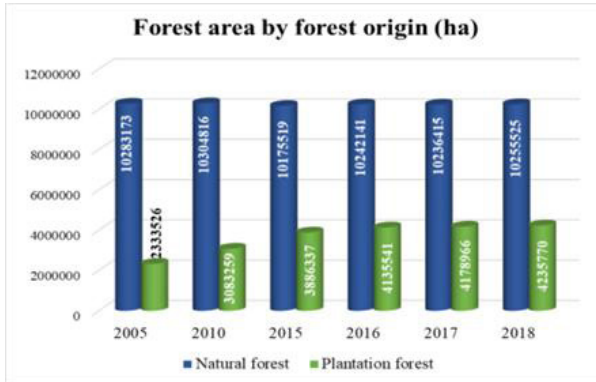
[그림 2-1] 2018년 유형별 산림면적

(출처 : 농업개발부)

[표 2-1] 2016년~2018년 산림면적 변화 추이

산림면적(단위: ha)			
산림 유형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산림 면적	14,377,681	14,415,381	14,491,294
지형에 따른 산림 구분	14,377,681	14,415,381	14,491,294
산악림	13,200,186	13,211,790	13,272,079
암석림	927,549	943,880	945,749
습생림	203,473	213,142	225,802
모래림	46,473	46,569	47,664
용도에 따른 천연림 구분	10,242,140	10,236,414	10,255,525
용재림	8,839,154	8,838,168	8,858,166
죽림	241,610	240,925	240,926
혼효림	1,156,589	1,152,864	1,152,014
과실림	4,787	4,457	4,419

(출처 : 농업개발부)



[그림 2-2] 산림구성비율(천연림 및 인공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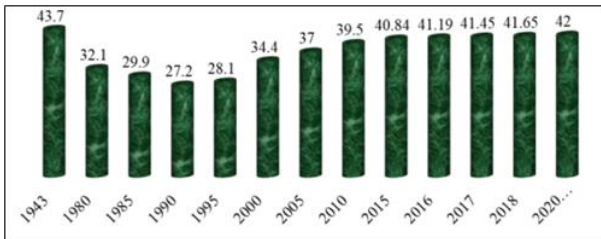
(출처 : 농업개발부)

[표 2-2] 지역별 산림면적 및 피복율

지역별	산림면적 (ha)	천연림 (ha)	인공림 (ha)	산림 피복율 (%)
북서부	1,704,168	1,530,833	173,335	44.57
북동부	3,903,648	2,353,991	1,549,658	56.02
홍강 삼각주 지역	82,544	45,678	36,867	6.02
북부중앙 지역	3,103,601	2,222,455	881,146	57.65
중남부연안	2,410,141	1,563,540	846,601	49.27
중부 산악지대	2,557,322	2,206,975	350,347	46.01
남동부	486,719	257,707	229,012	19.44
남서부	234,152	74,347	168,805	5.26
계	14,491,295	10,255,525	4,235,770	41.65

(출처 : 농업개발부)

2018년 현재 농업개발부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의 평균 산림 피복율은 41.65%이고, 이는 2017년과 비교해 0.48%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6년-2020년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 산림 피복율 4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3] 산림 피복율 (%)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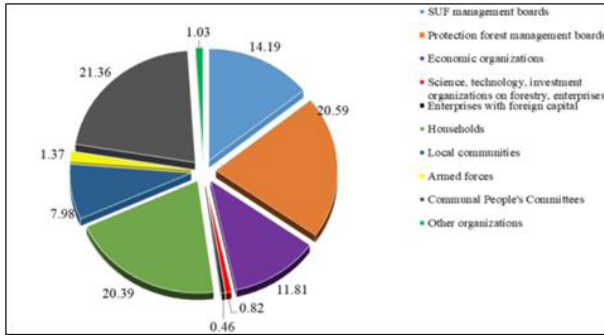
(출처 : 농업개발부)

2.1.2. 산림 투자관련 토지 분배 및 임대 현황

지난 30년간 베트남 산림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초, 국가기업사업체(State Forestry Enterprises)가 베트남의 산림 경영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 기존 국가주도임업에서 민간주도임업으로의 베트남 산림정책 변화 패러다임으로 인해 민간 중심의 산림 관리와 투자를 위해, 산림 소유주의 다양화를 목표로 산림 토지 분배를 통한 산림 보유권 개혁을 실시했다.

2018년 현재, 베트남의 여러 법인·단체나 개인이 산림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동인민위원회(Communal People's Committees)가 전체 산림보유권의 21.36%를 보유함으로써 가장 비

율이 높으며, 산림 보호관리 위원회(Protection Forest Management Boards)가 20.59%, 그리고 민간이 20.39%로 그 뒤를 따른다.



[그림 2-4] 2018년 산림보유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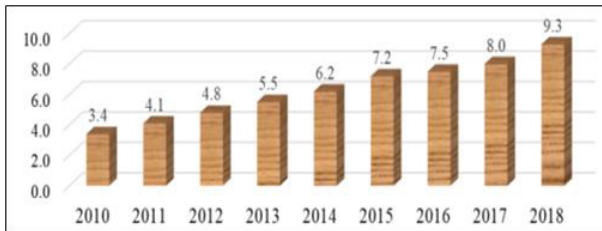
(출처 : 농업개발부)

2.2. 임업 현황

2.2.1. 목재 및 임산물 가공산업 현황

목재 및 임산물 가공산업은 베트남의 전통산업으로, 많은 베트남 기업들은 생산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는 반자동 가공 산업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들 중 목재 품 등 임산물에 있어 우수 수출국이 되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4,500개의 목재가공 기업들이 있고, 이 중 3,900여개는 국내 기업이며 600개는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기업이다. 또한 전체 기업들 중 비정부 기업은 약 95%를 차지한다. 규모 측면에서 기업

을 구분하면, 중소기업은 98.5%, 대기업은 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상품이 일부 품목에 한정적으로 생산되며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게만 수출되던 목재가공산업 초기와 달리, 현재의 목재가공산업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수출량이 많은데 2010년 34억 달러(USD)에서 2019년 93억 달러(USD)로 약 2.7배 정도의 성장을 이뤄냈다. 이 덕분에 베트남은 세계 가구 시장의 6%를 점유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 가운데 첫번째로 큰 가구수출국이 되었다. 베트남의 목재 및 임산물은 120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고 이중 상위 5개 수출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EU 그리고 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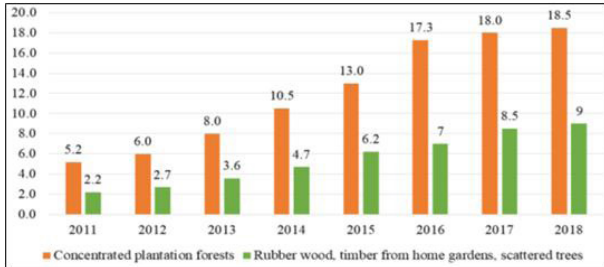


[그림 2-5] 2010년~2018년 목재 및 임산물 수출량 (단위: 10억 달러(USD))

(출처 : 농업개발부)

베트남 목재 산업은 국내 생산 목재, 수입 목재, 내수용 목재, 수출용 목재로 구분된다. 이 목재들의 수요와 공급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목재 산업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형성한다. 국내 생산목재량과 수입 목재량의 합은 내수용 목재와 수출용 목재량의 합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2007년부터 2018년동안 국내 생산 목재량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2,750만 m³에 이르렀다.



[그림 2-6] 2011년~2018년 목재생산량 (단위: 백만 달러(USD))

(출처 : 농업개발부)

최근 몇 년간 수입된 목재의 양은 큰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나, 생산에 사용된 수입목재의 비율을 고려하면 아주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2010년 이전에는 수입목재량이 생산에 활용된 목재량의 7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8년의 수입목재량은 생산에 활용된 목재량의 25%만을 차지한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내수용 목재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국내 목재시장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과 표 2-4은 목재가공산업 및 수출에 필요한 목재수요량과 원목의 수급균형을 나타낸다.

[표 2-3] 2018년 목재 가공 산업 및 수출에 대한 목재 수요

(단위: 백만 m³)

No.	수요 목재	수요량
1	우드칩	9.4
2	가구	9.0
3	기타 목재상품	2.0
4	판자	3.0
5	원목 및 용재	0.6
계		24.0

(출처 : 베트남 목재 산림 상품 협회)

[표 2-4] 2018년 원목의 수급 균형(단위: 백만 m³)

(단위: ha)

원목 공급량		원목 수요량	
국내 생산 목재량	수입 목재량	내수용 목재	수출용 목재
27.5	3.5	7	24

2.2.2. 목재 및 임산물 가공산업의 발달

2019년 베트남은 향후 목재 및 임산물 가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 내용에 따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시장의 통합을 바탕으로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목재 가공 산업 개발
- 합법적인 원자재 공급 활용
- 진보된 기술과 최신 장비 활용
- 생산을 위한 환경기준 확보

또한 정부는 향후 10년간, 목재 및 임산물 가공산업은 생산과 수출 측면에서 베트남의 핵심 경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베트남산 목재 및 임산물에 대한 상표를 개발하여 베트남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적인 목재 가공·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목재 및 임산물의 수출량이 2019년 110억 달러(USD)를 기록하였는데, 2020년에는 120억~130억 달러(USD), 2025년에는 180억~200억 달러(USD)의 점차적인 수출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Part.

03

산림 정책

- 3.1. 산림 관련 조직 구조
- 3.2. 임업법 제정
- 3.3. 산림관리 정책
- 3.4. 신용(금융) 정책
- 3.5. 투자 장려금과 보조금 정책

3. 산림 정책

3.1. 산림 관련 조직 구조

베트남 산림청(The Vietnam Administration of Forestry; VNFORD)은 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의 전국 임업에 대한 관리 및 법 집행 수행을 보조하는 산하기관으로, 법률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 활동을 담당한다.

산림부(VNFORD)는 아래 7가지 부서들로 구성된다.

- a) 기획 경제부(Department of Planning, Finance)
- b) 과학 기술 국제협력부(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c) 산림개발부(Department of Forest Development)
- d) 산림생산개발부(Department of Forest Production Development)
- e) 특수사용 및 산림 보호관리부(Department of Special-use and Protection Forest Management)
- f) 입법 조사부(Department of Legislation, Inspection)
- g) CITES 관리권과 산림보호부와 5개 국립공원(CITES Management Authority, Forest Protection Department and 5 National Parks)

임업 분야의 확립과 발달을 위하여 산림보안관(forest range force)은 산림 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2017년 임업법에 따라, 산림보안관은 산림의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며 임업법을 집행한다.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산림보안관과 산림 보호 책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규정하는 2019년 1월 1일자 법령 No. 1/2019/N -CP에 따라 산림보안관은 중앙 부처와 지방 부처로 조직화 되고 산림 보호에 대한 임무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각 조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중앙 계층 지역산림담당관: 산림 보호부(Forest Protection Department: FPD)는 산림부(VNFOREST)를 보조하는 산하 기관으로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산림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를 실행하고, 산림 보호와 관련된 법을 집행하며, 산림부(VNFOREST)의 관리 영역 내 임산물의 관리 및 개발을 수행한다. 산림 보호부(FPD) 아래 4개의 지역 산림 보호부(FPD)로 구성된다.

b) 지방 계층 산림보안관: 지방의 산림 보호부(FPD)는 지방 농업개발부(MARD) 산하 기관이다. 이는 지방의 농업개발부(MARD)의 보조 및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국가 관기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적으로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법을 집행한다. 지방 산림 보호부(FPD) 아래 3,000ha 이상 면적의 산림조건에는 현 단위(district-level) 산림보안관 본부(station)가 있다. 3,000ha 미만인 경우, 산림 관리 및 보호, 산림관리를 위한 법 집행, 산림 개발, 이용, 임산물 가공 또는 기타 임업 관련 작업 등 필요에 따라 본부가 형성될 수 있다. 아울

러 산림보안관은 특수목적용 산림(15,000ha 이상)을 관리와 보호용 산림(20,000ha 이상)을 관리하는 팀이 있다.

현재,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과 직원은 총 10,260명으로 추정된다.

3.2. 임업법 제정

임업법은 2017년 11월 15일에 베트남 국회(National Assembly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에 의해 통과되었고, 2004년 산림보호 및 개발법을 대체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본 법에 포함된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에서 임업은 특별한 경제기술분야로 간주되어 임업관리, 보호, 개발 및 활용에서 임산물 가공 및 거래에 이르기까지 시장 방향성과 국제 통합에 따른 체인 기반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1)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현대화와 개발, 지속성의 방향으로 적절하고 안정적인 사업 및 관리 구조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2)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과 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촌 개발 과정을 진행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국방 및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산림의 공공, 기업, 가계, 개인 및 지역 사회별 소유권을 명시한다. 이에 공유림(천연림, 국가가 투자한 조림지 또는 정부의 투자 혹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산림)은 베트남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다. 기업, 가계, 개인 및 지역사회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포함한 목재생산용 조림지를 소유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소유자로부터

터 양도, 또는 상속받은 산림은 법률에 따라 다음 7가지 소유형태로 규정된다.

- a) 특수 이용 산림 관리위원회, 보호 산림 관리위원회
- b) 법인체 (외국 투자 기업 제외)
- c) 국방의 목적을 한 군산단체
- d) 과학 기술 단체, 직업교육 및 훈련센터
- e) 개인
- f) 지역사회단체
- g) 목재생산의 목적을 위해 국가 또는 연방(주)에서 임차한 땅을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

임업법은 임업 활동의 주요 원칙인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산림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산림 사업 보장,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성 최적화에 대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일련의 기준을 규정하고 인증을 수행한다.

임업법은 국가의 중요 사업, 국방 및 안보 목적의 사업 또는 정부가 승인한 기타 긴급한 사업을 제외한 허용되지 않은 천연림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벌채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필요 시, 천연림 벌채는 기존 천연림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임업법에서는 베트남의 관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면적, 수고 및 울폐율 기준에 따라 산림의 새로운 정의를 제공한다.

3.3. 산림관리 정책

3.3.1. 산림 보호, 개발 및 목재 가공에 관한 투자 지원 정책

· 대상

대상은 산림 보호 및 개발, 산림 수확 및 임산물 가공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기업, 가계, 개인 및 지역 사회이다. 산림 또는 계획이 수립된 산림에 조림하는 관계자는 다음과 구체적인 단계에 따라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 (10년 후 수확 예정) 식재된 대경목, 다용도 및 토착 수종 조림은 1ha 당 800만 동(VND), (10년 미만 수확 예정) 용재용 소경목과 식재된 어린나무(1,000본/ha)를 조림하는 경우 1ha당 500만 동(VND)
- 앞서 언급된 지원 예산에 추가적으로, 국경지역, 선라(Son La), 라이쩌우(Lai Châu), 디엔비엔(Điện Biên) 지역 그리고 중앙 고지대에 조림하는 경우, 1ha 당 200만 동(VND)

관할 당국의 승인 계획에 따라 산림 조림지를 시험하는 기업, 가계, 개인, 공동체는 승인된 조림 비용의 6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림을 시험하는 각 모델은 2ha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림 확장 시 조림 1년과 무육 3년을 포함한 총 4년간 1ha당 50만 동(VND)을 지원한다. 조사를 위한 일시금 지급 보조, 조림 계약 시 설계 및 계약 서명 시 1ha 당 30만 동(VND)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기업, 공동체, 가계 단체, 가계에 주어지는 지속가능한 산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시불로 지원한다.

최소 100ha의 천연림과 조림지에 대하여 비용의 70%, 최대 1ha당 30만 동(VND)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형태 : 투자 지원 및 투자 후 지원

투자 지원은 기업, 가게, 개인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국가 예산 중 투자 자본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투자 후 지원이란 투자자(기업, 가게, 개인 및 공동체)가 조림과 임산물 가공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투자 후 결과에 대한 점검을 받고, 결과에 따라 정부가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승인한 이후, 지원 받는 형태이다.

· 지원 조건

산림 소유자들은 조림이 계획된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당 토지는 당국에 의해 할당 혹은 임대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 사용 권리증을 받거나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국유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경우, 조림용 토지는 안정적이고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 가게, 개인 또는 공동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조림에 필요한 묘목의 출처(씨앗, 열매 또는 묘목)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당국에 의해 공인된 시설이어야 한다.

· 권리 : 모든 조림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벌채된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존재하는 법규에 따라서 토지 이용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세금의 면제 등에 혜택을 받는다. 산림의 소유자는 할당되거나 대여한 토지의 최대 30%까지 에코 투어리즘, 휴양활동, 농어업

산품을 위해서는 산림 없이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이지역에서 보존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영구적 빌딩, 공장)의 건설을 위해서는 최대 20%의 토지를 이용할 수있다.

· 의무 사항

인공림에서의 수확 시, 산림 소유자는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등에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량은 인공림의 회기(cycle) 별 1ha당 80kg의 쌀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하며, 보호 및 개발의 개별적 기금은 총 지불금액의 50%로 둘의 합계가 100 이다. 특수 용도 혹은 보호 목적의 산림관리 위원회 혹은 국가기업체(이하 계약자)와 계약한 가계, 개인 그리고 공동체의 생산림에 관련해서, 산림 소유주(이하 계약 주체)는 앞서 언급한 금액을 계약자들에게 지불하여야한다. 하지만 산림 소유자는 그 외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산림소유자는 인공림 벌채 후 12개월 내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조림을 하여야 한다.

3.3.2. 목재 가공에 대한 투자 지원 정책

2016년 9월 14일자 국무총리의 결정문 No. 38/2016/Q -TTg과 2008년 12월 17일자 정부의 결의안 No. 30a/2008/NQ-CP에 따라 베트남 북서부와 중앙 고지대 지역 및 빈민지역 내 인공림과 산업용 대나무 목재의 가공시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 투자 지원

30,000 m³ 이상의 생산규모를 가진 MDF 공장별 200억 동(VND)의 지원, 20,000 m³ 이상의 파티클보드, 산업용 압착 대나무 생산규모를 가진 MDF 공장별 200억 동(VND) 지원, 도로, 전기, 수자원, 건물과 쓰레기 처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10,000m³ 이상의 생산규모의 합판을 생산하는 공장별 100억 동(VND) 지원.

· 투자 후 지원책

투자 후 지원은 상품 수송 거리에 따라 1,500 동(VND)/ton/km으로 제공된다. 적용거리는 공장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노이(Hà Nội), 다낭(Đà Nẵng) 혹은 호치민(Hồ Chí Minh) 시티 중심부까지를 의미한다. 지원은 공장의 실제 장비 용량에 따라 5년의 지원 기간이 곱해진다. 또한 지원 경비는 공장이 완성된 후 전체 지원 예산의 최소 70%가 즉시 제공된다.

3.4. 신용(금융) 정책

정부는 농업과 농촌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 부문에 법령 부문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통화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등의 농촌 지역 인센티브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 개발에 대한 신용 정책에 대한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 2018년 9월 7일자 시행령 No 116/2018 N -CP은 다음의 정책을 규정한다. 농업이란 국가의 경제 체제에 속하는 분야로 농업, 임업, 제염 그리고 양식업과 같은 다른 부문도 포함한다.

3.4.1. 적용 범위

1.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자금 대출기관은 금융법을 준수하는 외국계 은행지점(이하 금융기관)이다.

2. 조직 혹은 개인(이하 고객)은 이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는다.

- a) 개인 같은 농촌지역 내에 거주하는 친족 혹은 농업 생산 또는 사업 운영을 함께 수행하는 개인
- b) 같은 농촌지역 내에 사업하는 친족
- c) 농장 소유주
- d) 농촌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농업 생산 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르텔리(Artels), 협동 조합, 조합 연맹
- e) 농촌지역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단, 다음의 기업은 제외된다. 부동산 업체, 광산 업체, 수력 발전 시설과 열전력 발전 시설, 그리고 산업 단지나 가공과 수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
- f) 농업 원자재와 투입을 농업 생산에 공급하는 기업과 농업 생산물과 부산물을 제조, 구매, 가공, 소비하는 기업

3.4.2. 대출 보호 장치

개인, 친족, 집단 농장, 가족 기업, 협동 조합, 조합 연맹 그리고 농장 소유주는 아래 한도에 따라 무담보 대출이 제공된다.

- a) 농촌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농업 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친족에 최대 5,000만 동(VND)
- b) 농촌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과 친족, 농촌지역 외에 거주하지만 협동조합이나 기업과 함께 농산물의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개인과 친족에 최대 1억 동(VND)
- c) 산업 및 다년생 과일에 투자하는 개인과 친족에 최대 2억 동(VND)
- d) 아르텔리(Artels)와 가족 기업에 최대3억 동(VND)
- e) 직접 가공 및 수출 조직을 가진 상품 소비 계약에 사인한 양식 상품 가구, 어업 가구에 최대 5억 동(VND)
- f) 농촌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농업부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농장 소유주에 최대10억 동(VND)

3.4.3. 대출 금리

1. 농업과 농촌 개발을 위한 대출 적용 금리는 시간 경과에 따라 베트남 주립 은행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고객과 금융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
2. 농업과 농촌개발 신용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금리 수준 및 지원 메커니즘은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정부와 신탁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 및 농촌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정부 규정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3.4.4. 농업 생산을 위한 협력 모델에 대한 장려금 신용 정책

농업 생산에 대한 협력은 농산물의 생산, 조달, 가공 및 소비를 위한 투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서 개인, 친족, 가족 기업,

농장 소유주, 아르텔(Artels), 협동 조합, 조합 연맹, 기업과 같은 조직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일종의 협회 등을 의미한다.

· 농업 생산 협업 모델에 대한 장려금 신용 정책

농산물 공급과 소비를 위해 직접 농산물 생산을 수행하는 법인과 계약한 기업, 협동 조합 또는 조합 연맹은 금융기관에 의한 무담보 대출을 70%에 상응하는 최대 대출 이율로 적용할 권리가 있다.

농업 생산에 있어 가치 체인 협력을 위한 사업 실행 계약을 농업 생산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과 맺은 주력 업체, 협동 조합 혹은 조합 연맹은 금융기관에 의해 고려된 무담보 대출을 적용할 권리가 있다.

3.4.5. 첨단 기술의 농업 생산(첨단 농업 생산)에 대한 장려금 신용 정책

첨단 농업지역에서 제품이나 사업을 개발하는 기업, 협동조합, 혹은 조합 연맹은 첨단 기술의 이용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품의 소비 가치에 또는 기술 이전 계약의 가치와 비교해 70%에 상응하는 최대 대출 이율로 금융기관에 의해 무담보 대출을 적용할 권리를 갖는다.

첨단 농업 기업들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생산과 사업 사업의 가치와 비교해서 80%에 상응하는 최대 대출 이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 대출을 적용할 권리를 갖는다.

3.5. 투자 장려금과 보조금 정책

2018년 4월 17일 정부는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장려금과 투자금을 주는 절차를 다루는 법령 No 57/2018/ND-CP를 발표했다.

3.5.1. 적용 범위

1. 장려금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 a) “특수 투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사업”이란 투자법 상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부록 I에 명시된 사업 분야 중 하나에 대한 투자 사업을 의미한다.
- b) “투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사업”이란 투자법 상 불리한 지역으로 부록 I에 명시된 사업 분야 중 하나에 대한 투자 사업을 의미한다.
- c) “장려되는 농업 사업”이란 법령에서 3절과 4절에서 명시한 의미보다는 부록 I에 구체화한 사업 분야 중 하나에 대한 투자 사업이다.

2. 본 규정에 따른 투자에 대한 장려금 및 보조금 제공에 관련된 당국, 조직, 개인이어야 한다.

3.5.2. 투자 장려금과 보조금 적용 규칙

1. 정부는 투자 장려금의 획득 자격이 있는 기업체에 세금 공제와 감면, 수수료와 이용료, 행정절차의 단순화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정부는 부분적으로 투자비용을 충당하거나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금리 차액을 지불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해야한다.

3. 특수 투자 장려금, 투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사업이 있거나 권장되는 투자 사업이 있는 기업은 여기에 규정된 투자 장려금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2조 3항에 정의된 신규업체와 재료 영역을 개발하고 농민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5. 투자 사업이 특정 기간 내에 다른 투자 장려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6.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금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에서 투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고, 자본을 집결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인민위원회(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에 의해 공표된 각 작업 항목에 맞는 보조금 수준에 따라 투자 후 보조금을 제공해야한다. 보조금 제공 절차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한다.

3.5.3. 토지 부담금에 대한 면제와 감면

특별 투자 장려금 혹은 투자 장려금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권장된 농업 사업을 가진 기업체는 정부에 의해 할당된 토지를 가지게 되며, 현재

토지의 사용 목적을 토지법 제 55조에 규정된 근로자용 주택 용도로의 전용도 가능하다. 사용 목적 변경에 드는 수수료와 해당 지역의 토지 부담금도 면제된다.

3.5.4. 토지 임대료와 용수 임대료 면제 혹은 감면

1. 투자 장려금이나 권장된 농업 사업을 가진 기업이 토지나 수면을 정부로부터 임대하면, 토지 임대료와 용수 임대료는 지역인민위원회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에 공표된 대로 우대된 토지 가격에 따라 계산되고, 이는 최소 5년 동안 유지된다.

2. 특수 투자 장려금에 해당하는 농업 사업을 가진 기업은 정부에 의해 임대된 날로부터 토지임대료나 용수 임대료가 면제된다.

3. 투자 장려금에 해당하는 농업 사업을 가진 기업은 정부에 의해 임대된 날로부터 처음 15년 동안 토지임대료나 용수 임대료를 면제받을 것이며, 다음 7년 동안 토지임대료나 용수 임대료의 50%만을 지불한다.

4. 권장된 농업 사업을 가진 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 받은 날로부터 처음 11년 동안 토지임대료나 용수 임대료는 면제될 것이며, 다음 5년 동안 50% 면제된 토지임대료나 용수 임대료를 지불한다.

5. 농업 사업(특별 투자 장려금 혹은 투자 장려금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권장된 농업 사업에 해당)을 가진 기업과 근로자용 주택 혹은 농장이 아닌 사용 목적용으로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기업 또는 이 절에서술된 목적용의 기존 토지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기업은 토지 임대료가 면제된다.

6. 신규 중소형 농업 기업은 공식적으로 사업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처

음 5년 동안 토지임대료나 용수 임대료가 면제될 것이고, 다음 10년 동안 토지임대료나 용수 임대료가 50% 감소될 것이다.

3.5.5. 경지 정리에 대한 보조금

1. 특별 투자 장려금에 해당하는 농업 사업을 갖고 실행하기 위해 가계나 개인으로부터 토지나 수면을 임차하거나 전대차 하는 기업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날로부터 처음 5년 동안 정부로부터 토지 임대료나 용수 임대료의 20%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토지 임대료나 용수 임대료는 규정된 대로 계산해야한다.

2. 특별 투자 장려금 지급사업이나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대상지 구성을 위해 투자 자본으로 가계나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 받은 기업은 5,000만 동(VND)/ha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사업당 100억 동(VND)을 초과할 수는 없고, 임차한 토지로 사용형태를 변환이 필요하지 않다.

3. 이 조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두 가지 형태로 토지를 정리하는 기업은 이 항목에 따라 부여된 모든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4.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의 임대 기간 동안 정부는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적절하게 조정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할 수 없다. 단, 정부가 토지법 61조와 62조 및 토지이용법 제 1조 및 제 2조,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농업이나 양식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동반하는 농산물 가공 공장과 기반 시설(창고, 본사, 내부 도로 및 폐기물 처리 시

스텝)을 함께 건설하도록 권장된다. 토지 이용 목적 및 공사 변경 절차는 토지법 및 건설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5.6. 신용 보조금

1.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사업을 완료 시 지방 정부 예산으로부터 상업 대출에 대한 금리 보조금을 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보조금은 신청 시, 상업 대출 금리와 실제 미지불 대출 잔고에 있는 정부의 할인된 대출 금리의 차이와 동일하다.
- b) 금리 보조금 수령 기간은 상업 은행과 체결한 신용대출계약에서 명시된 지출일로부터 계산되며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특별 투자 장려금에 해당하는 농업 사업 : 8년
- 투자 장려금에 해당하는 농업 사업 : 6년
- 권장된 농업 사업 : 5년
- 신규 중소형 농업 기업은 8년간 그 사업에 관해 금리 보조금을 수령
-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기업은 관련 상품의 생산 주기와 동등한 기간만큼 금리 보조금을 수령

- c) 보조된 대출 한도 : 최대 대출금액은 사업 총 투자의 70%를 넘을 수 없다.
- d) 금리 보조금을 허가하는 방법과 정책은 지역 조건에 따라 지역인민위원회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가 공포하여야 한다.

- 보조받는 기업의 토지구조 창고, 온실, 다세대주택, 유압 구조물 등)는 대출을 위하여 상업은행에 제공하는 담보로 간주된다.

3.5.7. 농업에 대한 최첨단 기술의 연구, 양도, 응용 보조금

1. 과학 연구 주제를 구현하거나 신제품, 기술 혁신을 위한 특허, 기술 또는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결과 획득,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재료, 연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보조금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보조금은 시행 자금의 80%에 상응하나 사업 당(특허 당 혹은 기술 당) 3억 동(VND)를 초과할 수는 없다.
- 보조금을 위한 자격 요건
 - 전년도 기업 총수입이 보조금의 10배여야 한다.
 - 기업이 획득 혹은 양도 받은 특허와 기술이 기업의 사업 방향성에 적합해야 한다.
 - 과학적 연구 주제의 결과물의 실제 현장 적용 시, 보조금 전액이 지불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의 50%가 지급된다.

2. 보조금은 진보된 기술,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시험 생산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 주 예산을 통해 기금을 조성된 과학 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담당하는 기업은 우선권을 갖는다.

- 기업은 과학 기술 사업 내용을 이행하거나 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구현된 과학기술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선택 혹은 직접 할당 형태로 승인되고 이행되는 과학 기술 사업을 입수하고자 하는 기업 제안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 우선권은 중요하고 보기 드문 유전 자원을 소유한 기업에게 주어진다.

b) 보조금은 특별 투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사업에서 과학 및 기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70%, 투자 장려금 혹은 장려된 농업 사업에서 자금의 50% 수준이다. 다만 보조금은 10억 동 (VND)이 초과되지 않는다.

c) 보조금을 위한 자격요건

- 진보된 과학 기술 또는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시험 생산에 관한 사업과 신제품 생산에 관한 사업은 내각이나 지역인민위원회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소속 과학 기관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 기술 업무는 보조금을 적용하는 기업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야 한다.

3. 기업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상품개발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a) 국가가 투자한 과학 기술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식물 또는 동물 품종을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의 프로젝트 결과물 만족도 평가는 프

로젝트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평가된다.

- b) 국가가 투자한 과학 기술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사업 완성으로부터 2년 동안 대규모로 시장에서 만족할 만하고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의 결과물인 신상품을 개발할 자격이 있다.
- c) 국가가 투자한 과학 기술 사업을 선도하고 ISO/IEC 17025기준을 충족하는 실험실을 보유한 기업에 제공한 제품 품질평가 결과는 그 기업이 상품 등록 신청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때 승인된다.

4. 조직배양에 의한 식물 번식 사업 진행 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받는다.

- a) 보조금은 기반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의 80%에 해당하나 사업 당 5억 동(VND)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b) 보조금을 위한 자격 요건 : 매년 최소 100만 개의 식물이 번식해야 한다. 보조금은 제공된 사업 규모에 대한 비율로 증가하며 사업 당 100억 동(VN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지역인민위원회(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품종, 동물 품종, 수생 종 생산 혹은 시험 식물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프라 시설 구축, 장비, 환경 개선 및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의 70%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으며, 사업 당 3억 동(VND)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최첨단 농업단지, 구역 또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인프라 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1ha당 3억 동(VND)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

Part.

04

산림 투자 절차

- 4.1. 투자 사업 실행 절차
- 4.2. 외국인투자 절차
- 4.3. 토지 임대 문제
- 4.4. 환경 영향 평가
- 4.5. 보고
- 4.6. 사업 종료

4. 산림 투자 절차

4.1. 투자 사업 실행 절차

투자 사업 실행을 위한 절차는 투자 유형 확인, 투자관련 승인 사항 및 절차 확인, 투자등록증 발행·조정·폐지 확인, 사업 실행으로 구성된다.

1. 투자 유형 확인

- a) 기업설립을 통한 투자
- b) 지분양수도 계약을 통한 투자
- c) 민간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을 통한 투자
- d)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을 통한 투자

2. 투자관련 승인 사항 및 절차 확인

- a) 투자 관련 국회 승인사항 확인
- b) 투자 관련 국무총리 승인사항 확인
- c) 투자 관련 지역인민위원회 승인사항 확인

3. 투자등록증이 요구될 경우, 투자등록증 발행·조정·폐지 절차 확인

- a) 투자등록증 발행 절차
- b) 투자등록증 조정 절차
- c) 투자등록증 폐지 절차
- d) 발행·조정·폐지 관련 승인사항
- e) 투자등록증 내용

4. 투자사업 실행

- a) 투자사업 보증
- b) 투자 기간 확인
- c) 인프라, 기술 관련 평가
- d) 사업 보류 및 종료
- e) 경영협력계약을 통한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 f) 경영협력계약을 통한 외국인투자회사 폐쇄

4.2. 외국인투자 절차

4.2.1. 원칙

목재 및 임산물의 가공 분야는 투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업 분야이다. 또한 경매나 입찰, 양도 없이 국가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 토지전용이 필요한 사업에 속하여 관련 투자 정책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선 2가지 투자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투자법의 33조 1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30조~32조의 규정대로 국가가 결정한 투자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발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투자법 30조~3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 국회의 투자방침 결정권한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투자방침 결정권한에 속하는 계획안을 제외하고, 국회는 다음의 각 투자계획안에 대한 투자방침을 결정한다.

1.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계획안
 - a) 원자력발전소
 - b) 50ha 이상인 국립공원
 - 자연보존구역·경관보호구역·과학연구시험용 산림구역, 50ha 이상인 상수원 보호산림, 500ha 이상인 방풍(防風)·방사(防沙)·방조(防潮)·해안침식 방지·환경보호 산림, 1,000ha 이상인 생산용 산림의 토지 이용목적 변경
2. 500ha 이상의 규모로 이모작 이상의 벼농사를 짓는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을 요구하는 토지이용 계획안
3. 산간지역에서 2만명 이상·기타 지역에서 5만명 이상의 이주제정착 계획안
4. 국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정책·체제의 적용이 요구되는 계획안

제31조 정부 총리의 투자방침 결정권한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총리의 투자방침 결정권한에 속하는 계획안 및 이 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각 계획안을 제외하고, 정부 총리는 다음의 각 계획안에 대한 투자방침을 결정한다.

1. 자본의 출처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안

- a) 산간지역에서 1만명 이상·기타 지역에서 2만명 이상의 이주 재정
작 계획안
 - b) 공항의 건설 및 운영·항공운송 계획안
 - c) 국가항만의 건설 및 운영계획안
 - d) 석유·가스의 탐사·개발·가공 계획안
 - e) 내기·카지노 사업활동 계획안
 - f) 담배 생산 계획안
 - g) 공업구역,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내 기능구역의 기반시설 개발
계획안
 - h) 골프장 건설 및 운영 계획안
2. 5조동(VND) 이상의 투자자본 규모를 가진 이 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계획안
3. 해운사업,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서비스사업, 산림조성, 출판, 언
론, 100% 외국자본의 과학기술단체·과학기술기업 설립 분야의 외
국투자자 계획안
4. 법률 규정에 따른 정부 총리의 투자방침 또는 투자결정 권한에 속
하는 기타 계획안

제32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결정권한

1.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결정권
한에 속하는 계획안 및 이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각 계
획안을 제외하고,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각 계획안에 대한 투자
방침을 결정한다.

- a) 경매·입찰을 통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임대받거나 양

- 수하는 계획안,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요구하는 계획안
- b)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전제한 기술목록에 속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계획안
2. 관계 당국이 승인한 계획에 부합하여 공업구역,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에서 실행하는 이 조 제1항 제a호에서 규정하는 투자계획안은 투자방침의 결정을 위한 계획안을 성급인민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4.2.2. 외국인 투자자의 입업 투자 형태

입업 관련 외국인투자는 주로 기업설립을 통한 투자, 지분양수도 계약을 통한 투자, 경영협력계약을 통한 투자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4.2.3. 투자 절차

4.2.3.1. 투자등록증

- a) 외국인에 의한 투자사업과 투자법

23조 1항의 투자사업은 투자등록증 발행이 필요하다.

- b) 투자등록증 발행

투자등록증 발행 절차는 등록사무소를 통해 진행된다. 등록사무소는 사업이 투자법 30~32조의 규정대로 국가가 결정한 투자 정책을 따라야 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정책을 결정하고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이 투자법 위 30조~32조의 규정대로 국가가 투자 정책을 결

정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위 투자법 33조 1항에 명시된 서류를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사무소는 자료를 수령 후 1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만일 발행이 반려될 경우, 투자자에게 반려사유에 대한 서면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c) 투자등록증 발행·조정·폐지 권한

투자등록증 발행·조정·폐지 관련 법적 권한은 관리이사회와 지역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 있다. 관리이사회는 산업 단지, 수출·가공 지역, 첨단 구역, 경제 구역을 관리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등록증의 발행·조정·폐지 권한을 가진다. 기획투자부(MPI)는 산업 단지, 수출 가공 지역, 최첨단 구역, 경제 구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등록증의 발행·조정·폐지 권한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구역들이 다수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역 기획투자부가 산업 단지, 수출 가공 지역, 최첨단 구역, 경제 구역의 내·외부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등록증의 발행·조정·폐지 권한을 가진다.

d) 투자등록증의 내용

투자등록증의 내용은 투자자의 이름(법인명)과 주소, 인센티브 조건, 지원 현황, 자본투자규모, 자본 기부금, 자본 모금 계획, 실행계획과 투자사업과 관련된 사업명, 사업코드, 기간, 위치, 목적 등을 포함한다. 이때 사업의 실행계획에는 인프라 구축 계획, 사업성과 달성계획, 사업 단계별 기간,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 투자등록증 수정

투자등록증을 수정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수정 신청서, 수정신청 날짜까지 실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서, 투자 사업에 대한 수정 내용, 투자법 33조 1항의 b, c, d, e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등록사무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투자등록증 수정에 대한 승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정이 반려될 경우, 투자자에게 반려사유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목표, 자본투자금의 10% 이상 증감, 사업 기간 및 투자자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사무소는 국가가 결정한 투자 정책을 따라야 하는 사업에 대한 등록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자등록증 수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국가가 결정한 투자 정책을 따라야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결정한 투자 정책을 따라야 하는 사업에 대한 등록 절차대로 처리된다.

f) 투자등록증 철회

투자등록증 철회 역시 등록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등록 사무소는 투자법 48조 1항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투자등록증을 철회한다.

g) 투자 등록을 위한 신청 언어

투자 등록을 위한 신청 언어는 베트남어를 기본으로 한다. 관할 당국에 제출하는 투자 등록신청서, 서류, 보고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서에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는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본을 해당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서의 서류가

베트남어와 외국어 둘 다로 표기된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된 서류가 사용된다. 투자자는 사본과 원본의 불일치, 베트남어 버전과 외국어 버전의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4.2.3.2. 외국인투자 사업 조직

a) 기업설립을 통한 투자

투자자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의 형태, 운영 범위, 베트남의 공동사업자 및 기타 사항들은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통해 투자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단, 투자자가 지분의 양수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나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투자는 제외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조직에 투자되는 자본의 무한한 소유가 가능하다. 상장 회사, 공기업, 주식거래기업, 주식투자의 자본은 증권법의 규제에 따라 자본소유의 제한이 있다. 또한 민영화된 국유기업의 소유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민영화기업법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

b) 지분양수도 계약을 통한 투자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조직 설립, 자본투자, 주식매입, 경영협력계약을 통해 투자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은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의 51% 이상 혹은 그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거나, 주요 사업 파트너가 외국인 인 경우 근무하는 직원의 다수가 외국인 이어야 한다.
- 2) 투자사업체는 투자자본의 51% 이상을 보유한다.
- 3)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사업체는 투자자본의 51% 이상을 소유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조직 설립, 자본투자, 주식매입, 경영협력계약을 통해 투자할 때, 위 1~3항을 다른 경우의 외국인 투자사업체는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절차를 따르고, 관련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운 투자 사업을 실시하면 새로운 투자사업체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사업체의 투자실행을 위해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명시한다.

c) 자본투자, 주식 매입, 사업 조직의 자본 투자금 매입

자본투자, 주식 매입, 자본 투자금 매입을 통한 투자사업에서 투자 권리는 투자자에게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 25조와 26조에 명시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d) 자본투자, 주식 매입, 사업 조직의 자본 투자금 매입방법 및 조건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나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 회사나 협력업체에 자본투자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 유한

책임회사의 자본투자금을 매입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 협력사의 자본투자금을 매입하여 사업파트너가 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업조직의 자본투자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조직의 주식 또는 자본투자금을 매입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 유한책임회사의 자본투자금을 매입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은 투자법 22조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자본투자, 주식·사업 조직의 자본 투자금 매입절차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사업 조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주식, 자본투자금을 매입한다. 자금을 투자하거나 주식이나 자본투자금을 매입하는 경우, 투자법 23조 1항에 따라 사업 조직은 정관 자본의 51%를 보유한다.

f) 자본투자, 주식·자본투자금 매입 신청

자본투자, 주식·자본투자금 매입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투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고, 투자 후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재산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 시 서류는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에는 설립증명서 혹은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g) 자본투자, 주식·자본투자금 매입 절차

투자자는 자본투자, 주식·자본투자금 매입등록 신청서를 사업조직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기획투자부(MPI)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투자부(MPI)는 투자법 22조 1항 에 따라,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투자자가 자본투자, 주식·자본투자금 매입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투자부(MPI)가 투자자에게 결과와 관련 설명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또한 모든 자본투자, 주식·자본투자금 매입절차는 투자법 2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2.3.3.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을 통한 투자

경영협력계약(BCC)은 새로운 사업 조직의 설립 없이 경영협력과 수익 분배를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자들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 경영협력계약 역시, 투자법 37조에 제시된 투자등록증의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며, 경영협력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결정한다.

경영협력협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a) 계약자의 이름·주소·권한 관련 위임자, 사무실 주소 또는 사업 주소
- b) 사업의 목표와 범위
- c) 계약 당사자의 기여·투자·공헌과 수익분배
- d) 계약 일정과 계약 기간
- e)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f) 계약의 수정, 양도, 만료
- g) 계약 위반 시 책임, 분쟁 처리 방법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협력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운영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사무소의 위치를 결정한다. 경영협력협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사무소는 자체의 직인과 등록증을 가지고, 계좌 개설, 직원 고용 및 계약 서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운영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의 등록 사무소에 운영사무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 사무소 설립(Establishment) 신청서는 투자법 조항 49조 4항에 따른다.

4.3. 토지 임대 문제

4.3.1.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토지는 토지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소유주에게만 인정된다. 외국인투자 기업, 합작투자 기업, 그리고 투자법에 따라 합병·인수된 베트남 기업을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은 토지를 배당받거나 임차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해 승인된 토지 사용 권한을 가진다.

국가는 토지법 위반 시, 토지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토지법 16조 1항에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토지회수 조건은 토지법 64조 1항에 명시되어있으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a) 토지가 배당·임차된 목적이나 국가가 승인한 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토지의 부적절한 목적으로의 사용이 행정부의 경고에도 계속되는 경우
- b) 토지소유주가 의도적으로 토지를 훼손할 경우
- c) 토지가 타소유주에게 임차된 경우

- d)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토지인데 타소유주에게 양도된 경우
- e) 관리를 위해 국가가 토지 회수를 요청한 경우
- f)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부적격한 토지가 소유주의 책임으로 빼앗긴 경우
- g) 토지소유주가 국가에 대한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h)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일년생작물 토지, 1년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다년생작물 토지,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조림지

투자사업 실행을 위해 배당되거나 임차된 토지가 1년 이상 미사용되었거나 토지 이용이 사업 서류에 제시된 일정에 비해 2년 이상 늦어져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24개월 연장될 수 있고, 투자자는 지연된 기간 동안의 토지 임대료 또는 전체 토지 사용 징수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토지연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투자자가 여전히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토지나 토지에 부속한 자산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한다.

4.3.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권리

토지임대는 국가가 계약에 의해 토지 이용 수요자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일정 토지 구획에 대한 토지 사용권과 토지 부속 자산의 소유권 관련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타 소유주에게 배당되거나 임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를 개인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토지 배당, 임대, 토지사용권의 인정, 토지 사용목적과 토지 사용자의 세금 납부 형태 등에 따라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하여야 한다. 투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토지를 배당받거나 임차한 소유주들, 또는 정부에 의해 토지 전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투자사업 일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갖추어져야 하며 투자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임대 토지에서 다른 사업 실행 시 토지법을 준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 배당·임차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임차 기간의 만료 시점에, 토지소유주가 토지의 추가 배당·임차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베트남 정부는 50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3. 토지 가격

4.3.3.1. 토지 사용 부담금과 토지 임대

토지 사용부담금의 계산 기준은 토지사용권이 승인된 토지의 면적, 사용 목적, 토지법 114조에 규정된 토지 가격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토지 가격은 5년 주기로 수정되며 1월 1일에 공표된다. 토지 임대료의 계산 기준은 토지의 면적, 토지 임대 기간, 토지 임대 단가를 고려하여 설정되며, 경매를 통한 임대의 경우 토지 임대료는 낙찰 단가를 기준으로 임대 단가를 설정한다. 토지 사용 부담금 또는 토지 임대료 계산은 정부가 토지 배당·임차 결정 시점, 토지 전용허가 시점, 토지사용권 승인시점에 실시된다.

4.3.3.2. 토지 감정

토지 감정은 합법적인 토지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을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동일목적으로 양도된 토지의 일반적인 시장가, 토지사용권 경매에서 형성된 낙찰가, 토지 사용으로 얻는 소득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인근 토지의 구획은 같은 가격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5년 주기로 각 토지 유형과 지역에 따른 기준 지가 범위를 공표한다. 정부는 기준 지가 범위에 비해 시장의 일반가가 최대 기준가의 20% 이상 증가, 혹은 최저 기준가의 20% 이하 감소하는 경우 기준 지가 범위를 조정한다.

지역인민위원회는 토지 감정 방법 및 정부에서 공표한 기준 지가 범위를 바탕으로 지가표를 개발한다. 즉, 구체적인 지가를 결정하며, 지역의 토지 행정부서는 구체적인 지가 결정에 있어 위원회를 보조하고, 시행 기간 동안에 조언 기능을 갖는다. 지가표 역시 기준 지가 범위에 따라 5년 주기로 공표되며, 지역인민위원회는 을 지가표가 시행하는 동안 정부가 기준 지가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장의 토지 일반가가 변동하면 지가표를 조정한다. 지가표는 토지사용세의 계산, 토지 관리와 사용에 대한 요금과 수수료 계산, 토지와 관련된 법규위반 시 벌금 계산, 토지 관리와 사용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지불하는 배상금 계산 시에 활용된다. 또한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토지 사용권 평가액 계산 시에도 사용된다.

4.4. 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EIA)는 일정한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의 환경보호 조치를 위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은 목재 가공 및 벌목 사업이며, 규정된 생산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보호실행계획(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EPP)에 등록하여야 한다.

규정된 생산 규모의 조건은 우드칩과 건설용 자재로서 활용되는 목재 생산 공장의 경우는 연간 최소 3000m³의 생산규모, 합판 생산 공장의 경우는 연간 최소 100,000m³ 생산규모, 목제품 생산 공장의 경우, 최소 10,000m²의 Depot Area, 임산물 채취를 위한 사업은 조림지의 경우는 최소 200ha, 천연림의 경우는 최소 50ha다.

각 지역별로 지역인민위원회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투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한다.

4.5. 보고

투자 사업을 실행하는 모든 사업 조직은 대상 지역의 투자 등록 기관과 통계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종류는 월간 보고서와 4분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가 있다.

자본 사용에 대한 월간 보고서는 월말로부터 12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분기 보고서는 분기종료일 후 12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투자금, 순수익, 수출, 수입, 근로자, 세금, 토지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간 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며, 4분기 보고서에 관한 정보, 수익, 근로자, 소득, 연

구·개발 비용 및 투자, 환경 보호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작성된 보고서의 제출은 국가 투자정보시스템(National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보고서나 전자보고서의 형태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4.6. 사업 종료

투자 사업 중 규정된 경제구역(Economic zone)에서 시행되는 투자 사업, 투자사업 진행에 있어 극도로 열악한 지역 혹은 자본회수율이 느린 사업의 기간은 70년 이내, 경제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투자 사업의 기간은 50년 이내로 규정된다. 그러나 토지임대를 통해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가 지연된 기간은 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일시정지와 종료는 투자자, 투자 당국, 기획투자부 장관의 요청으로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투자자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때, 등록 사무소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중단되었다면, 사업 복구지원을 위해 중단된 기간만큼 토지 임대료가 면제된다.

기획투자부는 특정 경우에 따라 사업을 부분적으로 일시중지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결정한다.

-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 유적지, 유물, 고미술품, 국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복원을 위한 환경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직업 안전 조치 실행을 위한 노동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사업이 법원과 중재 재판소의 결정으로 일시중단된 경우

국무총리는 기획투자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의 실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사업의 일시중단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 투자자가 사업 종료를 결정한 경우
- 계약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 사업기간이 지난 경우
- 투자자가 일시중단의 사유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 사업부지가 정부에 의해 환수되거나 투자자가 토지 사용 허가 연장을 실패했을 때, 철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업 대상지 변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사무소가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법적 대표자와 사업의 일시 중지일로부터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투자자가 등록사무소에 등록된 일정에 따라 1년이 지나도 사업 실행에 실패하거나 실행할 수 없을 때, 사업 시행 연장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
- 사업이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의 결정 하에 종료된 경우

사업 중단 절차는 투자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투자자가 투자법 48조 1항의 세부항목 a에 명시된 대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 투자자는 사업중단 신청서를 중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등록증과 함께 등록사무소에 보내야 한다.

사업이 투자법 48조 1항의 세부항목 b, c에 규정된 계약 조건, 기업허가,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중단된 경우, 투자자는 사업의 중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등록 당국에 통지서와 관련 중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투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이 투자법 48조 1항의 세부항목 d, dd, e, f, g, h에 규정된 사업중단의 경우, 투자 등록 당국은 사업 중단 관련 결정을 공표하고, 투자 등록증을 철회할 수 있다. 투자등록증은 사업 중단 관련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무효화 된다.

사업 중단 후, 투자자는 자산정리법의 규제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고 토지전용을 실시한 사업은 토지법의 규제에 따라 정리된다. 또한 사업 정리 과정에서 파산한 경우, 투자자의 해산·파산 관련 법규제에 따라 사업이 정리된다.

사업 중단 후 등록사무소측에서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법적 대표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등록사무소는 중단된 사업의 투자자와의 연락 실패를 기록하고, 투자자가 사업 중단을 처리하기 위해 등록된 주소로 등록사무소로의 연락요청서를 송부한다. 이후 요청서 송부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투자자의 연락이 없는 경우, 등록사무소는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투자자와 다른 법인 사이의 모든 분쟁을 법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조치는 법원에 의해 합의된 중재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Part.

05

세금 시스템

- 5.1. 법인세
- 5.2. 자본배당이익세
- 5.3. 부가가치세
- 5.4. 개인소득세
- 5.5. 수입관세
- 5.6. 수출관세
- 5.7. 특별소비세
- 5.8. 원천징수세 · 외국인계약자세
- 5.9. 재산세
- 5.10. 천연자원세
- 5.11. 사업 등록세
- 5.12. 환경보호세 및 환경보호요금
- 5.13. 세무조사 및 가산세
- 5.14. 사회, 건강 및 실업 보험료

5. 세금 시스템(베트남 세금, 사회·건강·실업 보험)

임업을 포함한 베트남의 대부분 사업 및 투자 활동은 다음의 조세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 소득세
- 다양한 원천징수세
- 자본 양도세
- 부가가치세
- 개인소득세
- 수입세와 수출세
-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

특정 활동에는 다음 별도의 조세 규정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
- 천연자원세
- 재산세
- 환경보호세

5.1.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 CIT)

5.1.1. 세율

법인세(CIT) 납부의무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1월 1일부로 표준 법인세율 20%가 적용된다.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32%부터 50%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5.1.2.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은 법으로 정해진 투자장려 분야, 투자장려지역, 투자 규모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 확장 프로젝트도 2015년부터 법인세(CIT) 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받았거나, 집행은 이루어졌으나 별도의 세금 혜택 우대 대상이 되지 못한 확장 프로젝트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신규 투자 프로젝트 또는 사업 확장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 인수와 구조변경으로 설립된 프로젝트의 경우 포함하지 않는다.

베트남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에는 교육, 의료 서비스, 스포츠·문화, 첨단 기술, 환경 보호, 과학적 연구 및 기술 개발, 인프라 개발, 농수산물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생에너지가 해당된다.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재 제조와 관련된 신규 투자 또는 확장 프로젝트는 생산 제품이 첨단 기술 부문을 지원하거나 의류, 섬유, 신발, 전자 부품, 자동차 조립 및 기계 부문을 지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CIT) 혜택 자격이 주어진다.

투자 장려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지구 및 첨단기술지구, 특정 산업단지 및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CIT) 혜택이 적용된다. 첫 번째는 총 투자 자본이 6조 동(VND) 이상, 설립 허가 이후 3년 내 자본금이 완납된 프로젝트로서 운영 기간 4년 차까지 연 매출액이 최소 10조 동(VND)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운영 기간 4년 차까지 3,000명 이상 인원을 고용하는 조건이다. 두 번째는 총 투자 자본이 12조 동(VND) 이상, 설립 허가 후 5년 내 자본금이 완납되고,

관련 법률 내 장려된 기술로 평가된 기술을 사용한 조건의 프로젝트이다. 다만 법인세(CIT)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세금 혜택은 일반적으로 최초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15년간 10%를 적용받는 경우 혹은 10년간 20%를 적용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우대 세율 적용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기본법인세율 인하로 기존 20%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17%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우대 기간이 만료 이후에는 표준 법인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특정한 경우,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1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 특정 사회적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기간 동안 1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우대 세율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 우대 혜택 대상 활동으로부터 최초 수익(기타소득은 제외)이 발생한 해부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된다.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적용되는 세율의 50%가 부과된다. 다만,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이 세금 혜택 대상 활동에서 최초 수익이 발생한 이후 과세 수익이 3년 내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 공제 및 감면은 4년 차부터 시작된다.

다수의 여성과 소수 민족을 고용하는 제조, 건설 및 운송 사업은 추가 세금 감면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낮은 법인세율을 포함한 특정 세금 우대 혜택이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투자 장려 부문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은 기타소득의 경우 제외된다. 단, 폐기물 처분과 같이 세금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 사업 활동과 직접 연관된 소득은 혜택이 적용된다.

5.2. 자본배당이익세(Capital Assigment Profits Tax; CAPT)

베트남 소재 회사의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은 대부분의 경우 20%의 법인세(CIT) 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자본배당이익세(CAPT)로 불리지만 법인세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매각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매각부대비용을 제하여 계산한다.

매도자가 해외 법인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매각가액에서 자본배당이익세(CAPT)를 원천징수한 이후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매수자도 해외 법인인 경우, 자본배당이익세(CAPT)의 신고·납부의 책임은 지분을 매각하는 베트남 회사가 부담한다. 자본배당이익세(CAPT)의 신고·납부는 양도거래에 대한 관할 당국 공식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양도 거래에서 별도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지분 매각에 합의 일자틀 기준으로 10일 내에 신고·납부되어야 한다.

과세 당국은 자본배당이익세(CAPT) 계산 시, 거래가격이 시장의 공정가치 수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분양도가격(Transfer price)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최근에는 베트남 내 회사가 보유한 지분의 양도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베트남 내 회사 지분을 보유한 해외 모회사의 베트남 기업 지분 매각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동향이 나타난다. 이에 자본배당이익세(CAPT) 제도의 수정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해외 법인에 의한 증권(채권, 베트남 내 공개된 주식회사의 주식 등) 양도의 경우 법인세가 '전체 매각가'의 0.1%의 인정세율을 부과된다. 그러나 매각자가 베트남 내국법인 거주자일 경우 '매각으로 인한 이익'에는 20%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5.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VAT)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이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과제 대상은 비거주자로부터 구매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다. 베트남 내 사업자는 공급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된다. 수입자는 수입관세의 지급과 함께 관세청에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제공된 해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 FCT)를 통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VAT) 납부액은 매출 부가세에서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된 매입 부가세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세(VAT)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매입 부가세의 공제를 위해 제품 혹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세금명세서(VAT Invoice)를 취득하여야 한다.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VAT) 납부를 위해 세금 납부 영수증(Tax payment voucher)의 증빙이 필요하며, 외국인계약자세(FCT)를 통한 부가세 납부에는 외국인계약자세 지급 영수증의 증빙이 필요하다.

5.3.1. 세율

부가가치세(VAT)는 조건에 따라 0%, 5%, 10%의 세 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0% 세율은 ‘수출 제품’에 적용되며, 세부적으로는 비관세지역 및 수출 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EPE)에 판매된 제품,

수출용 가공 제품이나 국내 수출(in-country export, 특정 조건 있음) 용 가공 제품, 면세점으로 판매된 제품, 특정 수출 서비스, 수출가공기업(EPE)을 위해 제공된 건설·설치 서비스, 항공·해운·국제 운송 서비스의 조건인 경우 해당 세율에 적용된다.

5% 세율은 일반적으로 생필품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부문에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깨끗한 물, 교재, 서적, 비가공 식품, 의약품과 의료 기구, 축산 사료, 다양한 농산물과 서비스, 기술·과학 서비스, 고무 유액, 설탕과 설탕의 부산물, 특정 문화·예술·스포츠 서비스와 상품, 공공 지원 주택 등과 같은 부문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10% 세율은 부가가치세(VAT) 표준 세율이다. 0%, 5% 세율 적용 대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비대상, 면세 대상 조건에 적용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

회사의 특정 활동이 조세 조항에 따른 분류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범주에 속하는 부가가치세(VAT) 세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한다.

5.3.2. 부가가치세(VAT) 신고 납부 비대상 재화 및 서비스 목록

-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된 것을 제외한 보상금, 상여금, 보조금
- 탄소배출권 판매 및 기타 금융수익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부재한 해외 법인에 의해 해외에서 공급된 특정 서비스(운송수단, 기계 장치 및 장비 수리, 투자 및 무역 거래의 판촉, 광고, 마케팅, 해외 서비스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중개 활동, 교육훈련 서비스, 특정 국

- 제통신서비스 등)
-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
 - 아직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일부 기초 가공만 거친 농산물 판매
 - 현물 자본 투자
 - 보험회사가 제 3자로부터 획득한 보상, 배상금 수취액
 - 직접적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대금 회수만 수행하는 경우 (예시, 회사'가'가 회사'나'로부터 용역 및 서비스를 공급받고 대금은 회사'다'에게 지급하며 이후 '다'회사가 회사'나'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다'가 회사'나'에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우편, 통신, 복권, 항공 티켓, 버스표, 선박표, 기차표 등 기존 공급자가 결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리인, 0% 부가가치세(VAT)에 적용되는 국제 운송, 항공 및 해운 서비스 대리인, 보험 대리점 등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 부가가치세(VAT) 면세 대상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는 중개수수료
 - 베트남 외의 해외 구매자로부터 반품되는 제품

5.3.3. 면세 상품 및 서비스

- 특정 농산물
- 전년도 연수입이 1억 동(VND) 이하인 개인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 베트남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되는 굴착 장비, 비행기, 선박류
-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s: LUR)의 양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의 상세한 지침이 제공됨)
- 금융 파생상품, 신용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 금융 리스업, 팩토링업 포함),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인 담보부자산(Mortgaged assets)의 매각(채권자 허가 하에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및 신용정보의 제공
- 펀드 운용을 포함한 다양한 증권 관련 업무
- 지분 양도
- 외환 거래
- 채권매매업
- 특정 보험서비스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산물관련 보험 및 재보험 등)
- 의료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 교육 및 훈련
- 신문, 잡지 및 특정 서적의 인쇄 및 출판
- 공공 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서비스
- 기술,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이전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은 0% 세율 적용)
- 보석 가공의 이전 상태로 수입한 금괴
- 미가공 천연자원의 수출 및 가공 제품 중 원가 상 비중이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51%를 넘어서는 경우
- 과학적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설비 및 원재료의 수입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품목

-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채굴에 이용되는 설비, 기계장치, 예비 부품 및 특수한 운송장비와 필수 재료의 수입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품목
-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해외 원조금 등
- 국제원조로 무상 공여 형태로 수입된 재화 (제한조건 있음)
- 비료, 가축·가금류·해산물 및 기타 동물용 사료, 농업에만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5.3.4. 수출된 제품 및 서비스

비관세지역(non-tariff area) 내 회사를 포함한 해외 법인에 판매된 제품과 직접 제공된 서비스는 베트남 외부 혹은 비관세지역 내에서 소비된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된 제품 및 국제 운송을 제외한 서비스에 0%의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예: 계약서, 비현금지급증빙서류, 수출 재화의 경우 통관신고서)

반대로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첫 번째로는 해외 구매자에게 제공된 광고, 호텔 서비스, 교육 훈련, 오락,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관세지역(non-tariff area) 내에서 제공되는 주택 임대, 직원들의 통근을 위한 운송 서비스, 특정 음식 공급 서비스와 베트남 내의 제품 거래 및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5.3.5. 부가가치세(VAT) 산출 방법

부가가치세(VAT) 산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공제 방법 혹은 직접 계산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1)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은 모든 거래의 회계 장부,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 연 매출이 10억 동(VND) 이상이거나 공제 방법을 통한 부가가치세(VAT) 신고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소의 경우 적용된다. 공제 방법을 통한 부가가치세(VAT)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cdot \text{부가가치세(VAT) 납부세액} = \text{매출 부가가치세} - \text{매입 부가가치세}$$

1-1 매출 부가가치세(output VAT) 산출

매출 부가가치세(output VAT)는 과세 가격(세금공제 후)에 적절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과세가액과 수입관세, 특별 소비세(해당 시), 환경 보호세(해당 시)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분할대금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실제 지불되는 할부금액이 아닌 이자를 제외한 총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한다.

1-2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는 국내 매입의 경우 세금명세서를 기준

으로 산출한다. 수입의 경우, 세금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세금납부 영수증을 이용한다. 세금명세서는 회사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이전의 어느 시기나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하다. 2,000만 동(VND) 이상 지급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의 공제 경우, 은행을 통한 지급 증빙이 필요하다. 해외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외국인계약자세(FCT)에 따라 원천징수된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도 해당 납세자가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의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면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 과정에서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는 환급 및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0% 세율 적용 대상 혹은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이 아닌 공급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의 공제 사례와 상반된다. 부가가치세(VAT) 면세 및 과세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 활동과 과세 사업 활동 중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만 공제된다.

2) 직접 방법

직접 방법은 1)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 연 매출이 10억 동(VND) 미만인 사업, 2) 개인 및 가족회사, 3) 적합한 회계 장부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사업소 및 투자법에 규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 4) 금·은·보석을 거래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VAT) 납부세액 측정

부가가치세(VAT) 납부세액 = 판매된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 부가세율

일정 기간동안 금, 은, 보석의 매매에서 발생한 음(-)의 부가가치는 동기간 같은 활동으로 발생한 양(+의 부가가치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잔여 음의 부가가치는 같은 연도의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로는 이월할 수 없다.

한 번 선택한 부가가치세(VAT) 신고 방법은 2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5.3.6. 할인 및 판매촉진

가격 할인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는 가격을 낮춘다. 그러나 특정유형의 할인에서는 부가가치세(VAT) 계산과 여러 가지 규칙 및 조건이 적용되기 전에는 할인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5.3.7. 내부 소비 재화 및 서비스

내부 사용으로 소비한 제품 및 서비스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output VAT)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3.8. 신고 및 납부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부가가치세(VAT)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경우에 따라, 법인의 지점들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VAT)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 사업자는 매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VAT)를 신고

해야 하며, 전년도 연 매출이 500억 동(VND) 이하인 회사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30일까지 분기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5.3.9. 부가가치세(VAT) 환급

부가가치세(VAT) 환급은 오직 특정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가가치세(VAT) 환급 대상액이 3억 동(VND)를 초과하는 수출 사업자로 환급은 월별 혹은 분기별 납세자의 신고 기간에 따라 가능하다.

부가가치세(VAT) 환급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 매출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VAT) 금액은 수출 매출의 10% 이하 금액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제품을 수입 후 추가적인 가공 없이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기업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충족 시 환급이 가능하다.

공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한 회사의 프로젝트 가운데 운영 전 투자 단계에서 누적된 부가가치세(VAT) 공제액이 3억 동(VND)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규정 상의 투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부(conditional) 투자 프로젝트 또는 규정된 법정 자본금을 미납한 회사의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ODA 프로젝트, 외교와 관련한 면제, 해외소비용의 베트남 내에서 구매한 외국인은 환급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납세자의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가 매출 부가가치세(output VAT)를 초과하는 경우, 미래의 매출 부가가치세(output VAT)를 상쇄하기 위해 그 초과분을 이월해야 한다.

5.3.10. 세금명세서

베트남의 법인은 사전에 인쇄한 세금명세서, 직접 인쇄한 세금명세서 또는 전자세금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세금명세서의 양식은 필수항목을 포함해야하며, 지역의 과세 당국에 등록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 제품에 관해서는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을 국내 세금명세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5.3.11. 전자세금명세서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명세서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모든 기업은 전자세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명세서는 과세 당국의 인증코드 유무의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과세 당국의 인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명세서로, 전기, 석유, 통신, 교통, 금융 서비스, 보험, 의료,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교역 등과 같은 특정 산업 내의 기업들과 규정에 따라 과세 당국과 전자 처리를 진행한다. 그리고 기술 인프라, 회계 소프트웨어, 전자세금명세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기업들에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세 당국의 인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명세서로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업 및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인증코드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세금명세서 청구 이전에 베트남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하여 과세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에 인증코드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

세금명세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계속해서 그 전자세금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효력 발생일 이전에 직접 인쇄한 세금명세서, 사전 인쇄한 세금명세서 혹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구매한 세금명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세금명세서를 2020년 10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명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4.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5.4.1. 거주지국(과세 목적상)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따른다.

첫 번째로는 베트남에서 여러 해 또는 입국일 이후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베트남에서 영구 거주권·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혹은 외국인의 경우 영구, 임시 거주카드에 기록된 등록 거주지 또는 과세연도 동안 임대 주택을 포함한 183일 이상의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나라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거주자는 소득의 지급·수령 관계없이, 전 세계 과세소득에 대해서 베트남 개인소득세(PIT)의 납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은 누진세율에 기초하여 부과되며, 기타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은 조세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한다. 비거주자는 베트남 관련 근로소득에 대하여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비근로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이는 적용하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4.2. 과세연도

베트남의 과세연도의 기준은 1역년이다. 그러나, 첫 입국일로부터 역년까지 183일 미만 거주한 경우, 개인의 첫 과세연도는 입국일로부터 첫 12개월 기간이다. 이후 과세연도 기준은 1역년이다.

5.4.3. 근로소득

과세 되는 근로소득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금전적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 급여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 a) 출장 경비
- b) 통신료 및 사무용품비
- c) 근무복(현금 지급 시 일정 한도 내 비과세)
- d)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근무/야간근무 지급금 전액이 아닌 표준 임금의 추가적 수당)
- e) 1회 거주 이전비 지원
 - 1) 베트남 근로자가 해외 근로를 위해 해외로 이주 시
 - 2)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이주 시
 - 3)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베트남으로 귀국 시
- f) 출퇴근 비용 지원

- g) 베트남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매년 1회 본국 출입국 항공료
- h) 베트남 내 소재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 학비
- i) 직원교육훈련비
- j) 중간 교대 식사(현금 제공 시, 일정 한도 내 비과세) 회원비, 단체 의료보험비와 같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
- k) 석유, 광업 등 ㄱ 사업에서 교대 근무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항공료
- l) 근로자에게 누적된 보험금을 환급하지 않는 의료보험, 상해보험과 같은 국내외 특정 임의보험계약에 대한 고용주부담분
- m) 결혼 수당, 장례 수당(일정 한도 내 비과세)

5.4.4. 비근로 개인소득

비근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의 개인에게 과세 대상에 속하는 소득을 말한다.

- a) 사업소득(연간 1억 동(VND)을 초과하는 임대소득 포함)
- b) 이자, 배당금 등을 포함한 투자소득
- c) 유가증권(주식) 양도소득
- d) 부동산 양도소득
- e) 1,000만 동(VND)을 초과하는 상속소득
- f) 1,000만 동(VND)을 초과하는 상금·상품(카지노에서 발생한 소득 제외)
- g) 1,000만 동(VND)을 초과하는 저작권·프랜차이즈·로열티 이전 및 선물 수령으로 발생한 소득

5.4.5. 비과세 개인소득

- a)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 혹은 생명보험사로부터 취득한 이자소득
- b) 보험증권으로 취득한 보험 보상소득
- c) 사회보험법률 하에서 수령 받은 퇴직연금(또는 해외의 이와 동등한 규정)
- d) 직계 가족 사이에서 양도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e) 직계 가족 사이에서 수령한 상속·증여소득
- f)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의한 월 퇴직연금
- g) 해외 국적 선박 또는 베트남 국적 국제 운항 회사에서 일하는 베트남 선원들의 소득
- h) 카지노 상금 소득

5.4.6.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개인소득이 있는 베트남 거주자가 해당 국가에 납부한 개인 소득세(PIT)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납부한 사실을 증명 가능할 경우,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5.4.7.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필수 보장보험인 사회, 건강, 실업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 계약에 대한 부담금(제한 한도 내에 금액에 한함), 특정 승인된 자선기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에 적용된다. 그 밖의 각종 공제는 인적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로 구분된다. 인적 공제는 월 900만 동(VND)이 공제되며,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 가족당

월 360만 동(VND)이 공제된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 의무자는 공제 대상 자격에 맞는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과세 당국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4.8. 개인소득세(PIT) 세율

5.4.8.1. 거주자의 근로소득

[표 5-1] 거주자 근로소득별 세율

연간 과세 소득 (백만 동(VND))	월별 과세 소득 (백만 동(VND))	세율 (%)
0 - 60	0 - 5	5
60 - 120	5 - 10	10
120 - 216	10 - 18	15
216 - 384	18 - 32	20
384 - 624	32 - 52	25
624 - 960	52 - 80	30
960 이상	80 이상	35

5.4.8.2. 거주자의 기타소득

[표 5-2] 거주자 소득별 세율

과세 소득 유형	세율
사업소득	0.5-5% (사업소득 업종에 별도 세율 적용)
이자(은행이자 제외)·배당	5%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자본의 양도	순수익의 20%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저작권 소득	5%
프랜차이즈·특허권 사용료(Royalties) 소득	5%
상금 소득	10%
상속·증여 소득	10%

5.4.8.3. 비거주자 소득

[표 5-3] 비거주자 소득별 세율

과세 소득 유형	세율
근로소득	20%
사업소득	1-5% (사업소득 업종에 별도 세율 적용)
이자(은행이자 제외)·배당	5%
유가증권(주식)·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프랜차이즈·특허권 사용료(Royalties) 소득	5%
상속·증여 소득	10%

5.4.9. 신고 및 납부

5.4.9.1. 개인소득세(PIT) 신고 코드

과세 대상 소득을 갖는 개인은 각각의 신고코드를 획득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회사를 통해 개인신고 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그 파일을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개인 소득이 있는 개인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개인소득세(PIT) 신고코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5.4.9.2.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인 근로소득에 대한 예납신고납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월별 신고와 분기별 신고가 있다. 월별 신고는 근로소득 수령일로부터 익월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신고는 보고가 필요한 분기의 익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연말 정산을 수행하며, 추가적인 세금은 다음 해 90일 이내에 납부 해야한다.

베트남 파견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소득 최종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소득세가 성실히 납부·갹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간 납부된 내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 과다 납부가 확인된 경우 신고 코드를 가진 개인만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 시작 최소 7일 전에 과세 당국에 이름, 소득정보, 여권번호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근로소득의 경우, 각 개인별로 비근로 과세소득의 각 유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규정은 소득 수령 기점에 비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요구한다. 이때, 매년 신고하고 납부되는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5.5. 수입관세

5.5.1. 수입관세율

수입관세율은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특별우대관세율로 분류된다. 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최혜국 지위(Most Favoured Nation: MFN)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최혜국 지위(MFN) 세율은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서약에 따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특별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 특별우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베트남이 당사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회원국들 사이의 FTA, ASEAN회원국과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베트남과 일본, 칠레,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FTA,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과의 FTA가 존재한다.

베트남-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VKFTA)은 공식적으로 2015년 12월 20일부에 발효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과 비교해서, 베트남-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VKFTA)은 당사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주는 더 많은 특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VKFTA)은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KFTA)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 두 자유무역협정은 공존하며, 기업은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대관세율과 특별우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상품은 알맞은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수반해야 한다. 제품이 우대관세율 대상이 아닌 비우대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이라면, 보통세율이 부과된다.

5.5.2. 수입관세 계산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WTO) 평가 협정을 따른다.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가격은 전형적으로 거래가치(즉, 수입되는 제품에 지출되는 또는 지출될 대가, 관세 혹은 비관세 요

소에 따라 조정)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거래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세가격의 계산은 대체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특별소비세(Special Sales Tax; SST)와 환경보호세(Environment Protection Tax; EPT)는 수입관세에 더하여 일부 상품에 적용된다. VAT 또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5.5.3. 수입관세 면제

장려되는 분야 혹은 지역의 당해 프로젝트 및 특정 상황에서 수입된 제품은 수입관세에 대한 면제가 제공된다.

수입관세에 대한 면제 범주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 a) 권장 투자 프로젝트에서 베트남 내 생산되지 않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 장비, 전문화된 운송수단, 건축자재
- b) 석유와 가스 활동에서 베트남 내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전문화된 운송수단과 자재, 사무실용 설비
- c) 수출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의 원재료, 소모품, 부품
- d) 수출품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공급품, 부품
- 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내 제조, 가공, 재활용, 조립된 제품으로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수입된 원재료,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 f) 권장 프로젝트의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되는 원재료, 소모품, 부품

g) 보증, 수리 및 부품 교체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수출되는
상품

5.5.4. 수입관세 환급

수입관세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양하며, 수입관세가 납부되었으나 실제 물리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품,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해야 하는 수입 원자재, 국내시장의 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되었으나 후에 외국인 당사자와의 임가공계약으로 수출목적의 제품 임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5.5.5. 수입에 부과되는 기타세금

수입관세, 특별소비세(SST), 환경소비세(ETP) 그리고 수입 VAT 외에도 수입 제품에 부과될 수 있는 기타세금은 다양하다. 기타세금은 반상계관세(anti-dumping tax), 상계관세(anti-subsidy) 등이 포함된다.

5.6. 수출관세

5.6.1. 수출관세율

수출관세는 일부 항목에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모래,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철광석, 원유, 임산물 및 고철 등을 포함하는 천연자원에 부과된다. 관세율은 0%에서 40%로, 수출관세의 계산 방법의 과세 기준은 국경인도가격이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선적지 항구의 판매가격이 기준이 된다. 수출 제품의 관세가격

이 거래가치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 관세당국이 다음의 관세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관세 가격을 결정한다. 관세 평가 기준은 관세당국의 가격책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사한 수출 제품의 거래가격, 일부 조정된 국내시장의 유사한 제품 판매가, 관세당국에 의해 수집·분류·조정된 수출 제품의 판매가이다.

5.6.2. 관세조사

관세당국은 사후 관세조사를 그들의 사무소나 납세자의 점포와 같은 탁상조사와 방문조사 형태로 수행한다. 이 조사는 주로 HS코드 분류, 관세 가격, 상품의 원산지 확인, 수출 규정 및 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 면제 제도 적정 준수 여부 문제에 중점을 둔다.

5.7. 특별소비세(Special Sales Tax; SST)

특별소비세(Special Sales Tax; SST)는 소비세의 한 형태로 담배, 술, 맥주, 24인승 미만의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보트 등 수입품과 마사지, 카지노, 도박, 복권, 골프클럽, 베틱요소가 포함된 오락 등의 수입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때, 가솔린을 제외하고 수입과 판매 단계 모두에서 SST를 부과한다.

SST 세율은 대상에 따라 7%에서 150%까지의 범위로 적용되며, 수출 상품은 SST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8.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5.8.1. 적용대상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는 베트남에 소재한 계약 주체(외국인이 소유한 기업 포함)와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해외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FCT는 별도 분리된 세목이 아니며 대체로 VAT와 법인세(CIT), 또는 외국인 개인 소득세(PIT)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FCT에 납부 대상은 이자비용, 특허권 비용, 서비스 이용료, 리스(lease)임대료, 보험료, 운송비, 증권의 매매수익,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제품 및 베트남에서 주어지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득 등을 포함한다.

해외 법인이 베트남 내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 제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유통방식은 FCT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이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담당하는 경우, 제품과 서비스의 질에 책임을 지는 경우,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 베트남 기업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베트남 내에서 일정부분의 제품 유통과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FCT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품의 순수한 공급(즉,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한 이후에 제품과 관련된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관련 서비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의 경우,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경우, 온전히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는 수리, 훈련, 광고, 프로모션 등과 같이 다양한 기타 서비스의 경우를 포함한다.

5.8.2. 배당

이익배당에 따른 송금 시에도 해외 법인의 주주가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5.8.3. 이자

5%의 법인세(CIT)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해외 법인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 이자에 적용된다. 특정 외국 정부나 준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역외 차입금 관련 이자 지급 시 이중과세협정 또는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한 경우 원천징수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채권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지급 이자와 해외 법인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 지급은 5%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5.8.4. 특허권 사용료

FCT는 사용권 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의 이전,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양도를 위해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에 적용된다.

5.8.5. FCT 납부 방법

외국인 계약자는 공제 방법, 직접 방법, 혼합 방법과 같이 FCT 납부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8.5.1. 방법1-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을 적용 시 외국인 계약자는 VAT 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법인세(CIT)와 VAT 신고서 역시 베트남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첫 번째 조건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2) 두 번째 조건은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182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세 번째 조건은 베트남 회계 시스템(VAS)을 온전히 채택, 납세자 등록을 완료, 신고코드 부여가 되어야 한다이다. 외국인 계약자는 필요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베트남 발주처는 외국인 계약자가 계약서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공제 방법으로 FCT를 납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 한 프로젝트만이라도 공제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계약자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공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 계약자는 순이익에 대해 20%의 법인세(CIT)를 지급하여야 한다.

5.8.5.2. 방법 2- 직접 방법

직접 방법을 채택한 외국인 계약자는 외국인 계약자는 VAT 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세(CIT)와 VA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대신, CIT와 VAT는 외국인 계약자에 의해 납부된 지급액을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을 베트남 발주처를 통해 원천징수된다.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된 VAT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발주처의 매입 VAT 공제 대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 공제이다.

외국인 계약자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직접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CT 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8.5.3. 방법 3- 혼합 방법

혼합 방법은 외국인 계약자가 VAT 세법상 납세의무자 등록과 이에 따라 공제 방법으로 VAT를 납부(즉, 매출 VAT를 뺀 매입 VAT)를 허용한다. 그러나, 총매출액에 대한 법인세(CIT)는 직접 방법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공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첫 번째 조건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2) 두 번째 조건은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182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세 번째 조건은 재무부의 규제와 지침에 적합한 회계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이다. 외국인 계약자는 필요조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혼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방법에 따른 주요 외국인계약자세 세율은 다음 표와 내용과 같다.

[표 5-4] 직접방법에 따른 주요 외국인계약자세 세율

업종	간주된 VAT 세율	간주된 CIT 세율
베트남 내 제품 공급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	면제	1%
서비스	5%	5%
기계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3%	2%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관리 서비스	5%	10%
자재, 기계 또는 장비의 공급이 없는 시설 설치	5%	2%
자재, 기계 또는 장비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설치	3%	2%
기계 및 장비의 임대	5%	5%
선박과 항공의 임대	면제	2%
운송	3%	2%
이자	면제	5%
특허권 사용료 (Royalty)	면제	10%
보험	면제/5%	5%
재보험, 재보험 수수료	면제	0.1%
증권의 양도	면제	0.1%
금융파생상품	면제	2%
기타 활동	2%	2%

- a) 제품의 VAT가 외국인계약자세(FCT)에 의해 면제되었거나, 수입 시 수입 VAT가 납부된 경우에는 따로 VAT를 지급하지 않음
- b) 계약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 c)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기준 10% VAT 세율의 대상임. 특정 제품과 서비스는 VAT가 면제되거나, 5% VAT 세율의 대상이 됨
- d) 항공과 선박이 베트남에서 제조될 수 없는 국제 운송의 경우 0% VAT의 대상이 됨
- e)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 및 지식 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포함)의 이전은 VAT가 면제된다. 그러나, 기타 특허권 (Royalties)은 VAT의 과세대상임
- f) 특정유형의 보험은 VAT 면제 대상이다(VAT 부분에 기술된 '면세 제품과 서비스'를 확인하여야 함

5.8.6. 조세조약규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법인세(CIT) 원천징수는 관련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에 기인하는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외국인 계약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5% CIT 원천징수는 DTA에 의해 제외된다.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약 80개의 조세교약규정(DTAs)에 서명했으며, 그 외 협상 단계에 있는 다양한 조세교약규정(DTAs)도 존재한다.

5.9. 재산세(Property tax)

베트남의 재산세는 토지 사용료, 토지임대료, 비농업용 토지사용세와 같이 3가지 형태로 부과된다.

토지 사용료는 각 지역별 토지에 대해 적용된다. 토지 임대료 총액은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땅을 임차(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액은 토지의 위치, 토지가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 임대료 납부는 매년 또는 지정된 기간에 지급한다.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는 시골,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지와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농업용 토지에 적용된다. 세금의 계산은 세율과 토지면적,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세율은 특정 토지 사용에 따라 0.03%에서 0.15% 사이의 누진세가 부과된다.

5. 10. 천연자원세(Natural Resource Tax; NRT)

천연자원세(Natural Resource Tax; NRT)는 금속성 또는 비금속성 광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가스, 천연 임산물, 천연 수산물, 천연수, 제비의 등지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개발 및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 부과된다. 세율은 천연자원의 분류 또는 생산량에 따라 1%에서 40%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천연림에 생산되는 상품의 세율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에서 35%까지 적용된다.

[표 5-5] 천연자원세율

천연 임산물	세율 (%)
I등급 목재	35
II등급 목재	30
III등급 목재	20
IV등급 목재	18
IV 등급 이외의 목재	12
가지, 뿌리	10
목공품	5
대나무와 등나무 (rattan, ratan)	10
침향나무	25
아니스, 계피, 두구속, 카다멈 등 작물	10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기타 상품	5

5. 11. 사업 등록세(Business Licence Tax; BLT)

사업등록세(Business Licence Tax; BLT)는 사업등록 라이선스나 투자 라이선스에 기록된 등록 자본에 따라, 매년 100동(VND) 부터 300 동(VND) 내에서 경제조직에 부과된다.

5. 12. 환경보호세(Enviromental Protecton Tax; EPT) 및 환경 보호요금(Environmental protection Fee; EPF)

2012년 베트남은 환경보호세(EPT)를 도입하였다. 환경보호세(EPT)의 목적은 가솔린, 석유와 운할유, 석탄 및 특정 화학적 비닐봉투와 같이 환경에 손해를 끼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보호세의 세율은 다음 표에서 나타난다.

[표 5-6] 환경보호세율

No.	상품	단위	세율(VND)
1.	가솔린, 디젤유 등 유류	L/kg	1,000 - 4,000
2.	석탄	ton	15,000 - 30,000
3.	수화염화불화탄소(HCFCs)	kg	5,000
4.	비닐 봉투(*)	kg	50,000
5.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	kg	500 - 1,000

EPT 외에도, 베트남은 환경 보호 요금(EPF)을 도입했다. 환경 보호 요금(EPF)의 목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가스, 그리고 금속 및 비금속 성 광물을 포함하는 천연자원 채굴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율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5.13. 세무조사 및 가산세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행되며, 여러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세무조사 실시 전, 납세자에게 감사 시기와 대상 범위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보낸다.

다양한 세법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체계적인 규정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처벌의 가산세부터 기존의 평가된 부가세의 몇 배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과세 당국은 세금 불일치를 적발하면, 과소 신고된 세금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체납 시 하루에 0.0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법률상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가산세는 최대 5년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세금과 가산세의 법률상 존속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계속하여 징수할 수 있다.

현존하는 조세관리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입법안이 6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7차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5.14. 사회, 건강 및 실업 보험료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의 보험료는 베트남 국적을 소지한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HI)의 보험료는 베트남 근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 개인 모두에게 요구된다. 2018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SI)료는 베트남인 개인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기간 또는 무기한 고용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도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회

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파견된 특정 외국인 근로자와 법정 정년(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 55세)에 다다른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료의 부담률은 다음 표에서 나타난다.

[표 5-7] 사회, 건강, 실업보험료 부담률

	사회보험 부담률	건강보험 부담률	실업보험 부담률	Total
근로자	8%	1.5%	1%	10.5%
고용주	17.5%	3%	1%	21.5%

[표 5-8] 세부항목별 사회보험료 부담률

SI	고용주	근로자	외국인의 납부의무자격 발효일
질병, 출산 급여	3%	-	2018년 12월 1일
산업재해 급여	0,5%	-	2018년 12월 1일
연금 및 유족 급여	14%	8%	2022년 1월 1일



Part.

06

산림 투자 모델 및 사례

- 6.1. 인공조림지 사업
- 6.2. 목재 가공·유통·물류

6. 산림 투자 모델 및 사례

6.1. 인공조림지 사업

6.1.1. 투자 사업지 민족

2020년까지 목표로 하는 산림 면적은 약 16백만 ha이며, 그 중 목재생산림의 조성계획 면적은 약 8백만 ha이다. 2018년 기준, 조성되어있는 목재생산림 면적은 약 6백만 ha 정도로, 향후 추가 조림이 가능한 면적은 약 170만 ha이다. 이에 베트남 각 지역별로 추가 조림이 가능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6-1] 2018년 기준 지역별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8,017,654	6,245,300	2,334,727	3,910,574	1,772,354
북서지역	913,503	570,340	97,428	472,912	343,163
북동지역	2,563,559	1,993,028	1,000,310	992,718	570,531
북쪽 삼각주	14,184	10,217	8,903	1,314	3,967
북부 중앙	1,735,973	1,355,177	515,930	839,247	380,796
중부 연안	1,079,237	738,354	357,503	380,851	340,883
북부고원	1,427,428	1,391,971	197,388	1,194,583	35,457
남동지역	145,940	130,034	101,186	28,849	15,906
남서지역	137,830	56,180	56,079	101	81,650

[표 6-2] 2018년 기준 북서지역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913,503	570,340	97,428	472,912	343,163
호아빈 (Hoà Bình)	148,864	101,084	72,966	28,119	47,780
선라 (Sơn La)	340,889	210,886	16,012	194,874	130,003
라이쩌우 (Lai Châu)	196,825	156,256	4,826	151,429	40,569
디엔비엔 (Điện Biên)	226,925	102,115	3,625	98,490	124,810

[표 6-3] 2018년 기준 북동지역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2,563,559	1,993,028	1,000,310	992,718	570,531
하장 (Hà Giang)	260,676	208,377	55,616	152,761	52,299
뚜옌꽁 (Tuyên Quang)	266,423	203,895	118,995	84,901	62,528
카오방 (Cao Bằng)	218,932	150,038	11,559	138,479	68,894
랑손 (Lạng Sơn)	452,861	369,208	175,341	193,867	83,653
라오까이 (Lào Cai)	188,487	139,762	70,464	69,298	48,725
옌바이 (Yên Bái)	282,260	223,367	131,586	91,781	58,893
타이응우옌 (Thái Nguyên)	99,573	65,594	47,015	18,579	33,979
박칸 (Bắc Kạn)	303,508	237,176	69,233	167,944	66,332
푸토 (Phú Thọ)	127,254	82,128	69,047	13,081	45,126
박장 (Bắc Giang)	119,718	101,557	76,708	24,849	18,161
꽁닌 (Quảng Ninh)	234,424	203,693	166,706	36,987	30,731
빈푹 (Vĩnh Phúc)	9,443	8,233	8,041	192	1,210

[표 6-4] 2018년 기준 북부 삼각주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14,184	10,217	8,903	1,314	3,967
하노이(Hà Nội)	6,508	4,473	3,203	1,269	2,035
하이퐁(Hải Phòng)	100	0	0	0	100
하이두응(Hải Dương)	2,865	2,738	2,729	9	127
박닌(Bắc Ninh)	0	0	0	0	0
하남(Hà Nam)	2,373	736	701	35	1,637
남딘(Nam Định)	0	87	87	0	▼87
닌빈(Ninh Bình)	2,338	2,184	2,184	0	155
타이빈(Thái Bình)	0	0	0	0	0

[표 6-5] 2018년 기준 북부 중앙지역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1,735,973	1,355,177	515,930	839,247	380,796
타인호아 (Thanh Hóa)	360,795	325,304	152,722	172,582	35,491
응에안(Nghệ An)	615,000	434,457	119,422	315,034	180,543
하띤(Hà Tĩnh)	150,371	135,759	72,474	63,285	14,612
꽝빈(Quảng Bình)	327,837	259,775	59,114	200,660	68,062
꽝트리(Quảng Trị)	144,394	95,811	63,208	32,604	48,583
투안티엔후에 (Thừa Thiên Huế)	137,576	104,071	48,989	55,082	33,505

[표 6-6] 2018년 기준 중부 연안지역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1,079,237	738,354	357,503	380,851	340,883
다낭 (Đà Nẵng)	17,935	13,589	9,162	4,428	4,346
꽝남 (Quảng Nam)	274,048	177,748	105,778	71,970	96,300
꽝응아이 (Quảng Ngãi)	159,090	97,205	72,996	24,209	61,885
빈딘 (Bình Định)	160,323	117,292	64,566	52,726	43,031
푸옌 (Phú Yên)	153,892	92,265	59,456	32,809	61,627
칸호아 (Khánh Hòa)	108,000	82,763	21,674	61,089	25,237
닌투언 (Ninh Thuận)	39,910	16,690	1,223	15,467	23,220
빈투언 (Bình Thuận)	166,039	140,801	22,648	118,153	25,238

[표 6-7] 2018년 기준 중앙고원지역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1,427,428	1,391,971	197,388	1,194,583	35,457
닥락 (Đắk Lắk)	296,516	209,273	39,577	169,696	87,243
닥농 (Đắk Nông)	162,489	137,811	13,486	124,325	24,678
기아 라이 (Gia Lai)	534,195	419,095	43,905	375,190	115,100
꼰툼 (Kon Tum)	94,671	346,664	50,009	296,655	▼251,993
람동 (Lâm Đồng)	339,557	279,128	50,411	228,717	60,429

[표 6-8] 2018년 기준 남동부지역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145,940	130,034	101,186	28,849	15,906
호치민 (HàChíMình)	1,558	498	498		1,060
동나이 (ĐôngNai)	25,291	26,811	15,988	10,823	▼1,520
빈둥 (BìnhDương)	6,794	5,323	4,849	474	1,472
빈프억 (BìnhPhước)	97,516	84,763	71,211	13,552	12,753
떠이닌 (Tây Ninh)	10,312	8,790	4,790	4,000	1,522
바리어붕따우 (BàRịa-VũngTàu)	4,469	3,850	3,850	0	619

[표 6-9] 2018년 기준 남서부지역 생산림 현황

(단위 : ha)

지역별	목재생산림 계획면적	목재생산림 면적 현황			계획 대비 현황 면적
		소 계	인공림	천연림	
전체	137,830	56,180	56,079	101	81,650
롱안 (Long An)	19,846	15,674	15,666.6	7.7	4,172
띠엔장 (TiềnGiang)	900	688	688	0	212
벤째 (BếnTre)	1,446	335	314	22	1,111
짜빈 (Trà Vinh)	5,285	0	0	0	5,285
속짱 (SócTrăng)	1,900	2,682	2,682	0	▼782
안장 (An Giang)	1,527	534	513.17	20.50	993
하우장 (HậuGiang)	269	275	275	0	▼6
동탑 (ĐồngTháp)	3,913	1,965	1,965	0	1,948
끼엔장 (Kiên Giang)	10,959	2,931	2,888	43	8,028
박리우 (BạcLiêu)	0	47	47	0	▼47
까마우 (Cà Mau)	91,785	31,049	31,041	8	60,736

6.1.2. 인공조림지 조성을 위한 주요 수종

농업·농촌 진흥부는 연구 및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요 산림종 목록을 발표했다. 각 지역별 수종은 다음과 같다.

6.1.2.1. 북서지역(선라(Sơn La), 라이쩌우(Lai Châu), 디엔비엔(Điện Biên), 호아빈(Hoà Bình))의 주요조림수종

1.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교배종(*Eucalyptus urophylla S.T.Blake and varieties hybrided*)
2. 감람나무와 달베르기아 후페아나(*Protium serratum and Dalbergia hupeana laccifera*)
3. 초령목(*Michelia mediocris*)
4.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5.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6. 인도 마호가니(*Chukrasia tabularis*)
7. 덴드로칼라무스속(*Dendrocalamus*)
8. 마카다미아너트(*Macadamia integrifolia*)
9. 백등(*Calamus tetradactylus*)
10. 망리에타 코니페라(*Manglietia conifera*)
11. 넓은잎삼나무(*Cunninghamia lanceolata*)
12. 애기동백(*Camellia sasanqua*)
13. 도시니아 인디카(*Docynia indica*)
14. 티크(*Tectona grandis*)
15.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

16. 마미송(*Pinus massoniana*)
17. 알누스 네팔렌시스(*Alnus nepalensis*)
18. 감람나무(*Canarium album*)
19. 트람덴(*Canarium tramdenm*)
20. 일본유동(*Vernicia montana*)
21. 밤부사속 대나무(*Bambusa*)
22. 스키마 왈리치(*Schima wallichii*)
23. 멸구슬나무(*Melia azedarach*)
24.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25. 유칼립투스 교배종(*Eucalyptus hybrid*)
26. 인도 마호가니(*Chukrasia tabularia*)
27. 판야나무(*Bombax malabarica DC*)
28. 아퀼라리아 크라스나(*Aquilaria crassna*)

6.1.2.2. 기타 6개 지방(라오까이(Lào Cai), 옌베이(Yên Bái), 하 장(Hà Giang), 뚜옌꽁(Tuyên Quang), 푸토(Phú Thọ), 빈푹(Vĩnh Phúc))의 주요조림수종

1.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교배종(*Eucalyptus urophylla and hybrid varieties of Eucalyptus hybrid.*)
2. 월남안식향(*Styrax tonkinensis*)
3. 망천수(*Parashorea chinensis*)
4. 초령목(*Michelia mediocris*)
5.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6.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7. 인도 마호가니(*Chukrasia tabularia*)
8. 격목(*Erythrophleum fordii*)
9. 덴드로칼라무스속(*Dendrocalamus*)
10. 백등(*Calamus tetradactylus*)
11. 망리에타 코니페라(*Manglietia conifera*)
12. 사이프러스(*Fokienia hodginsii*)
13. 육계나무(*Cinnamomum cassia*)
14. 넓은잎삼나무(*Cunninghamia lanceolata*)
15. 도시니아 인디카(*Docynia indica*)
16. 케시아소나무(*Pinus kesiya*)
17.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
18. 마미송(*Pinus massoniana*)
19. 참죽나무(*Toona sinensis*)
20. 알누스 네팔렌시스(*Alnus nepalensis*)
21. 감람나무(*Canarium album*)
22. 트람덴(*Canarium tramdenm*)
23. 밤부사속 대나무(*Bambusa*)
24. 스키마 왈리치(*Schima wallichii*)
25.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
26.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27. 덴드로칼라무스 오라미(*Dendrocalamus ohlami Kengf*)
28. 일본유동(*Vernicia montana*)
29. 유칼립투스 우로필라(*Eucalyptus urophylla S.T.Blake*)

6.1.2.3. 북동지역(까오방(Cao Bằng), 랑선(Lạng Sơn), 박간(Bắc Kạn), 타이응우옌(Thái Nguyên), 광닌(Quảng Ninh), 박장(Bắc Giang))의 주요조림수종

1.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교배종(*Eucalyptus urophylla and hybrid varieties of Eucalyptus hybrid.*)
2. 약밤나무와 잣밤나무 교배종(*Castanea mollissima and Castanopsis boisii.*)
3. 초령목(*Michelia mediocris*)
4. 팔각(*Illicium verum*)
5.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6.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7. 격목(*Erythrophleum fordii*)
8. 망리에타 코니페라(*Manglietia conifera*)
9. 육계나무(*Cinnamomum cassia*)
10. 넓은잎삼나무(*Cunninghamia lanceolata*)
11. 애기동백(*Camellia sasanqua*)
12. 리소칼퍼스 피서스(*Lithocarpus fissus*)
13.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
14. 마미송(*Pinus massoniana*)
15. 수마트라 소나무(*Pinus merkusii*)
16. 참죽나무(*Toona sinensis*)
17. 감람나무(*Canarium album*)
18. 트람덴(*Canarium tramdenm*)

19. 죽순대(*Phyllostachys edulis*)
20. 스키마 왈리치(*Schima wallichii*)
21. 멸구슬나무(*Melia azedarach*)
22.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23. 맹종죽(*Phyllostachys pubescens Majielex.H.delehaie*)
24. 구수(*Ilex kaushue S.Y.Hu*)
25. 유칼립투스 우로필라(*Eucalyptus urophylla S.T.Blake*)

6.1.2.4. 북부 삼각주(하이퐁(Hải Phòng), 하이두옹(Hải Dương), 박닌(Bắc Ninh), 흥옌(Hưng Yên), 하노이(Hà Nội), 하띠이(Hà Tây), 타이빈(Thái Bình), 남딘(Nam Định), 하남(Hà Nam), 닌빈(Ninh Bình))의 주요조림수종

1.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교배종(*Eucalyptus urophylla and hybrid varieties of Eucalyptus hybrid.*)
2. 소네라티아 카세오라리스(*Sonneratia caseolaris*)
3.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4.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5.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6.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7. 인도 마호가니(*Chukrasia tabularia*)
8. 덴드로칼라무스속(*Dendrocalamus*)
9. 백등(*Calamus tetradactylus*)
10. 목마황(*Casuarina equisetifolia*)

11. 인면자나무(*Dracontomelon duperreanum*)
12. 황단(*Dalbergia tonkinensis*)
13. 암홍수(*Kandelia obovata*)
14. 밤부사속 대나무(*Bambusa*)
15. 아프리카 마호가니(*Khaya senegalensis*)
16. 멸구슬나무(*Melia azedarach*)
17. 포레스트검(*Eucalyptus tereticornis*)
18. 아프리카 마호가니(*Khaya senegalensis*)
19. 판야나무(*Bombax malabarica DC*)
20. 덴드로칼라무스 오라미(*Dendrocalamus ohlami Kengf*)
21. 스페인삼나무(*Cedrela odorata*)
22. 유칼립투스 우로필라(*Eucalyptus urophylla S.T.Blake*)

6.1.2.5. 북부중앙지역(타인호아(Thanh Hóa), 응에안(Nghệ An), 하띤(Hà Tĩnh), 팡빈(Quảng Bình), 광트리(Quảng Trị), 투안티엔후에(Thừa Thiên Huế))의 주요조림수종

1.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교배종(*Eucalyptus urophylla and hybrid varieties of Eucalyptus hybrid.*)
2. 소네라티아 카세오라리스(*Sonneratia caseolaris*)
3. 아퀼라리아 크라스나(*Aquilaria crassna*)
4. 맹쿨랑(*Tarrietia javanica*)
5. 아카시아 디피실리스, 아카시아 투미다, 아카시아 투루로사(*Acacia difficilis, Acacia tumida, Acacia torulosa.*)
6. 아카시아 크라시카파(*Acacia crassicarpa*)

7.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8.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9.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10. 인도 마호가니(*Chukrasia tabularia*)
11. 격목(*Erythrophleum fordii*)
12. 덴드로칼라무스속(*Dendrocalamus*)
13. 마카다미아너트(*Macadamia integrifolia*)
14. 백등(*Calamus tetradactylus*)
15. 망리에타 코니페라(*Manglietia conifera*)
16. 목마황(*Casuarina equisetifolia*)
17. 육계나무(*Cinnamomum cassia*)
18. 호말리움 세이란시움(*Homalium ceylanicum*)
19. 애기동백(*Camellia sasanqua*)
20. 리소칼퍼스 피서스(*Lithocarpus fissus*)
21. 황단(*Dalbergia tonkinensis*)
22.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
23. 수마트라 소나무(*Pinus merkusii*)
24. 감람나무(*Canarium album*)
25. 트람덴(*Canarium tramdenm*)
26. 암홍수(*Kandelia obovata*)
27. 밤부사속 대나무(*Bambusa*)
28.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
29. 유칼립투스 우로필라(*Eucalyptus urophylla S.T.Blake*)
30. 켈커타 대나무(*Dendrocalamus membranaceus Munro*)

6.1.2.6. 남부중앙지역(광남(Quảng Nam), 광응아이(Quảng Ngãi), 빈딘(Bình Định), 푸옌(Phú Yên), 칸호아(Khánh Hoà), 닌투언(Ninh Thuận), 빈투언(Bình Thuận))의 주요조림수종

1. 레드리버검(*Eucalyptus camaldulensis*)
2.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교배종(*Eucalyptus urophylla and hybrid varieties of Eucalyptus hybrid.*)
3. 소네리티아(*Sonneratia*)
4. 볼리우드(*Litsea glutinosa*)
5. 이행나무(*Dipterocarpus alatus*)
6. 아퀼라리아 크라스나(*Aquilaria crassna*)
7. 리조포라(*Rhizophora*)
8. 맹쿨랑(*Tarrietia javanica*)
9. 아카시아 디피실리스, 아카시아 투미다, 아카시아 투루로사(*Acacia difficilis, Acacia tumida, Acacia torulosa.*)
10. 아카시아 크라시카파(*Acacia crasscarpa*)
11.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12.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13.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14. 격목(*Erythrophleum fordii*)
15. 아비세니아속(*Avicenia*)
16. 목마황(*Casuarina equisetifolia*)
17. 육계나무(*Cinnamomum cassia*)
18. 호페아 오도라타(*Hopea odorata*)

19.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
20. 스테쿨리아 포에티다(*Sterculia foetida*)
21. 브루구에이라속(*Bruguiera*)
22. 스테쿨리아 마크로포디움(*Sterculia macropodium*)
23. 님나무(*Azadirachta indica*)
24.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
25. 포레스트검(*Eucalyptus tereticornis* Sam)
26. 세이바(*Ceiba pentandra* (L.) Gaertn)

6.1.2.7. 중부 고원 지역(람동(Lâm Đồng), 닥농(Đắk Nông), 달랏(Đà Lạt), 기아 라이(Gia Lai), 꼰똌(Kon Tum))의 주요조림수종

1. 유칼립투스 교배종(*Eucalyptus* and *Eucalyptus hybrid*)
2. 볼리우드(*Litsea glutinosa*)
3. 이행나무(*Dipterocarpus alatus*)
4. 카담, 바늘방석나무(*Neolamarckia cadamba* and *Nauclea orientalis*)
5. 초령목(*Michelia mediocris*)
6.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7.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8. 마카다미아너트(*Macadamia integrifolia*)
9. 호페아 오도라타(*Hopea odorata*)
10. 황단(*Dalbergia tonkinensis*)
11. 티크(*Tectona grandis*)

12. 케시아소나무(*Pinus kesiya*)
13.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
14.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
15.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16. 유칼립투스 우로필라(*Eucalyptus urophylla S.T.Blake*)
17. 아프리카 마호가니(*Khaya senegalensis*)
18. 아퀼라리아 크라스나(*Aquilaria crassna*)

6.1.2.8. 남동부지역(붕따우(Vũng Tàu), 동나이(Đồng Nai), 빈둥(Bình Dương), 빈프억(Bình Phước), 띠이닌(Tây Ninh), 호치민(Hồ Chí Minh))의 주요조림수종

1. 붉은마호가니,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레드리버검(*Eucalyptus pellita, E. urophylla, E. camaldulensis and hybrid varieties*)
2. 소네리티아(*Sonneratia*)
3. 이행나무(*Dipterocarpus alatus*)
4. 아퀼라리아 크라스나(*Aquilaria crassna*)
5. 리조포라(*Rhizophora*)
6. 카담(*Neolamarkia cadamba*)
7. 바늘방석나무(*Nauclea orientalis*)
8.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9.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10.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11. 아비세니아속(*Avicenia*)

12. 호폐아 오도라타(*Hopea odorata*)
13. 황단(*Dalbergia tonkinensis*)
14. 티크(*Tectona grandis*)
15.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
16. 밤부사속 대나무(*Bambusa*)
17. 브루구에이라속(*Bruguiera*)
18. 아프리카 마호가니(*Khaya senegalensis*)
19. 아카시아 크라시카파(*Acacia crassicarpa*)
20. 레드리버검(*Eucalyptus camaldulensis*)
21. 세이바(*Ceiba pentandra* (L.) Gaertn)
22.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 L
23. 스페인삼나무(*Cedrela odorata*)

6.1.2.9. 남서부지역(롱안(Long An), 벤 째(Bến Tre), 동탑(Đồng Tháp), 속짱(Sóc Trăng), 빈롱(Vĩnh Long), 컨터(Cần Thơ), 띠엔장(Tiền Giang), 박리우(Bạc Liêu), 까마우(Cà Mau), 끼엔장(Kiên Giang), 안장(An Giang), 짜빈(Trà Vinh))의 주요조림수종

1. 유칼립투스 우로필라, 레드리버검(*Eucalyptus urophylla*, *E. camaldulensis* and hybrid)
2. 소네리티아(*Sonneratia*)
3. 이행나무(*Dipterocarpus alatus*)
4. 리조포라(*Rhizophora*)
5. 아퀼라리아 크라스나(*Aquilaria crassna*)
6. 카담(*Neolamarkia cadamba*)

7. 바늘방석나무(*Nauclea orientalis*)
8.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9. 아카시아 만기움과 아우리쿠리포미스 교배잡종(*Acacia mangium*
x Acacia auriculiformis)
10. 아비세니아속(*Avicenia*)
11. 호페아 오도라타(*Hopea odorata*)
12. 백천층(*Melaleuca leucadendra*)
13. 니아올리(*Melaleuca quinquenervia*)
14. 카주풋(*Melaleuca cajuputi*)
15. 브루구에이라속(*Bruguiera*)
16.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Wild
17. 레드리버검(*Eucalyptus camaldulensis*)
18. 포레스트검(*Eucalyptus tereticornis* Sam)
19. 리조포라 아피쿨라타(*Rhizophora apiculata*)
20. 덴드로칼라무스 오라미(*Dendrocalamus ohlami* Kengf)

6.1.3. 목재생산을 위한 인공조림지 관리 및 벌채

6.1.3.1. 목재생산을 위한 인공조림지 조성, 양분공급 및 관리

1) 신규조림

a) 대상

- (i) 나지 혹은 갈대나 풀로 피복된 비산림지역
- (ii) 가치회복이 어려운 수고 0.5m이상, ha당 500본 이하의 밀도를 가진 용재림, 관목지, 비산림 지역
- (iii) 가치회복이 어려운 20% 이하의 피복을 가진 죽림

b) 관리

- (i) 수종 선정 : 사업에 따른 생산목적과 환경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되, 토질 개선이나 주수종의 생육을 위한 보조수종의 식재 가능
- (ii) 하층식생 관리 : 식물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조건에 따라 식생 제거. 또한 제거된 식생은 임분단위별로 모으거나 태울 수 있으나 식생을 태우는 경우 적절한 관리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함
- (iii) 토양 준비 : 기계 또는 수작업을 통해 25°이상의 급경사지에 대한 토양 정리 실시(산림조성을 위한 수로 생성, 땅고르기 등)
- (iv) 묘목의 규격과 품질 인증 필요
- (v) 식재 밀도 : 수종, 대상지 지황, 식재방법 및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식재밀도 선택
- (vi) 식재 방법 : 대상지 지황과 단순림, 혼효림 조성 혹은 혼농임업 등 사업 목적에 대한 고려를 통한 식재 방법 선정 실시

- (vii) 산불피해가능성이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방화대와 도로 설치가 필요하며 법에 의거한 산림 화재 예방법과 소방 대책에 대한 고려 필요
- (viii) 자세한 기술적 방법은 각 종에 맞는 식재매뉴얼을 따름

2) 재조립

a) 대상

- (i) 개별작업을 실시한 산림지
- (ii) 자연재해나 다른 원인에 의해 손상된 후 자연회복이 어려운 산림지
- (iii) 토질개선을 위한 보조수종이 식재된 산림지

b) 관리

- (i) 수종 선정 : 사업에 따른 생산목적과 환경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되, 토질 개선이나 주수종의 생육을 위한 보조수종의 식재 가능
- (ii) 하층식생 관리 : 식물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조건에 따라 식생 제거. 또한 제거된 식생은 임분단위별로 모으거나 태울 수 있으나 식생을 태우는 경우 적절한 관리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함
- (iii) 토양 준비 : 기계 또는 수작업을 통해 25°이상의 급경사지에 대한 토양 정리 실시(산림조성을 위한 수로 생성, 땅고르기 등)
- (iv) 묘목의 규격과 품질 인증 필요
- (v) 식재 밀도 : 수종, 대상지 지황, 식재방법 및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식재밀도 선택

- (vi) 식재 방법 : 대상지 지황과 단순림, 혼효림 조성 혹은 혼농임업 등 사업 목적에 대한 고려를 통한 식재 방법 선정 실시
- (vii) 산불피해가능성이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방화대와 도로 설치
가 필요하며 법에 의거한 산림 화재 예방법과 소방 대책에 대한
고려 필요
- (viii) 자세한 기술적 방법은 각 종에 맞는 식재매뉴얼을 따름
- (ix) 3회 이상의 수확벌채 후에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대비 및
생산성 회복을 위한 수종갱신 필요

3) 조림지가꾸기(Tending plantation forests)

a) 대상

- (i) 속성수의 경우, 조림 후 3년 경과된 산림
- (ii) 조림 후 5년 경과된 산림 및 해안림

b) 관리

- (i) 침습성 잡초제거, 흙 고르기 및 하층식생 보호 실시
- (ii) 실시 횟수 :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의 침입 범위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적으로 일년에 두 번 실시
- (iii) 양분공급 : 산림의 생장특징에 따라 양분공급 시기와 횟수,
비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
- (iv) 보식 : 식재 후 1개월 뒤, 생존율 확인 후, 생존율이 식재 밀
도의 85% 이하인 경우, 보식 실시
- (v) 추가적으로 맹그로브 조림지의 관리를 위한 기술적 방법은
식재매뉴얼을 따름

4) 간벌

a) 대상

- (i) 2~4년생의 속성수가 식재된 산림이나 6~10년생의 일반수 식재 산림
- (ii) 태풍이나 사이클론이 발생하지 않거나 강도 6 이하의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 내 중 토심이 50cm 이상인 인공조림지
- (iii) 식재밀도가 ha당 1,000본 이상인 대규모 조림지

b) 관리

- (i) 덩굴, 관목, 침습성 잡초 제거
- (ii) 병해충 피해목, 피압목,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수목들에 대한 간벌을 통해 우량재 생산을 위한 관리 실시
- (iii) 간벌강도 :
 - 1단계(하) : 주벌 수확시, 수목 간격이 수관지름 33% 이하가 되도록 관리
 - 2단계(중) : 주벌 수확시, 수목 간격이 수관지름의 33%~50% 이하가 되도록 관리
 - 3단계(상) : 주벌 수확시, 수목 간격이 수관지름 이하가 되도록 관리
 - 4단계(최상) : 주벌 수확시, 수목 간격이 수관지름보다 더 크도록 관리
- (iv) 간벌 횟수 : 수종, 대상지 조건, 임령과 간벌강도를 고려하여 3~6년 간격으로 시행, 다만 앞선 간벌 이후 수관울폐율이 100%일 경우, 추가 간벌 실시

- (v) 간벌 시기 : 건기 혹은 강우량이 적은 달에 실시
- (vi) 간벌 기술 : 간벌대상목의 벌채후 수고는 직경의 2/3 이하가 되도록 실시, 잔존목의 피해를 고려하여 간벌 대상목의 벌채 방향 선택, 잔존목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실시
- (vii) 간벌 후 관리 : 벌채부산물 정리 실시, 가지나 벌채된 수간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태우지 않고 잘게 파쇄
- (viii) 가지치기 : 가지치기 시, 수관 아래에 위치한 가지를 제거하되, 수관피해가 없도록 실시
- (ix) 잔존목의 밀도는 10~15년의 벌기령을 가진 속성수의 경우, ha당 400본~800본, 15년 이상의 대경재생산을 위한 수종의 경우에는 ha당 300~700본으로 유지
- (x) 간벌의 경우, 앞서 서술한 기술적 조치와는 별개로 대상지 조건에 따라 간벌 후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비료를 줄 수 있으며, 종류와 양은 대상지 조건과 각 수종의 성장 특징에 따라 다르게 실시
- (xi) 자세한 기술적 방법은 각 종에 맞는 관리매뉴얼을 따름

6.1.3.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생산림의 산림 증명

산림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계획(SFMP)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계획의 시행 기간은 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이다. 국가 기관이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할 때, 혹은 산림 소유주가 관리, 생산 및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산림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된 내용의 승인을 받기위해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계획의 설정에 필요한 파일, 서류, 지도는 법적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이에 직접 수집·조사된 자료이거나 활용된 자료가 기존의 서류, 지도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료의 변경이나 재조사가 있었다면 갱신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도의 유형은 베트남 기준표 TCVN 11565에 따른 산림현황도, 천연자원 및 환경부의 규제에 따른 토지사용지도, 산림면적과 VN 2000 기준계에 따른 축척 1:5,000, 1:10,000, 1:25,000, 1:50,000 지도 등을 활용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환경, 사회, 경제 현황 평가: 산림 위치, 생산 및 사업 결과, 시장 영향력 및 해당 결과들이 산림사업에 미치는 영향
 - a) 환경, 사회, 경제 현황 평가
 - (i) 토지 사용, 산림, 산림 생태계, 생물 다양성, 역사·문화적 유물과 산지 내 경관 평가, 지리학적 위치, 지형 측량, 수문학적 기후, 토양 및 사회 경제에 관한 현황 평가
 - (ii) 부록 2의 붙임 1에 따라, 인구, 노동력, 연간 자본소득 등에 현황 평가 정보 기입
 - (iii) 부록 2의 붙임 2에 따라, 운송,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의 현황 평가 정보 기입
 - (iv) 부록 2의 붙임 3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계획 수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자의 산림조사 결과를 반영한 토지 사용 현황 평가 정보 기입
 - (v) 부록 2의 붙임 4, 5에 따라, 산림 및 보존림의 현황에 대한 정보 기입

- (vi) 부록 2의 붙임 6, 7, 8, 9에 따라, 멸종위기의 식물과 동물, 고유종과 서식환경 등 생태계에 대한 정보 기입
 - b) 부록 2의 붙임 14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시작하기 전 3년간 산림 소유주의 사업 및 생산 결과물에 대한 정보 기입
 - c) 산림 소유주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국내 목재 및 임산물 시장 평가 실시
 - (i) 목재 및 임산물 시장이 상품 생산과 사업활동, 임산물 가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 2)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계획을 통한 기대효과
- a) 경제적 : 집약적 조림, 생산성 향상, 산림 환경 서비스, 산림 탄소량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가치 상승 등
 - b) 환경적 : 보호림 면적, 산림 피복, 생물 종다양성 보전,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산불 발생 감소 등
 - c) 사회적 : 일자리 창출, 근로자 소득 증대, 산림 보호·개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
- 3) 산림 관리, 보호, 개발, 사용과 무역에 관한 계획 설정
- a) 산림 소유주의 토지 사용 계획 정보 기입 산림 보호 계획, 동·식물 보호계획, 산불 예방 및 소방계획, 병해충 보호 계획 등을 설정
 - (i) 부록 2의 붙임 10에 따라, 공동체(Community) 수준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한 산림 소유주의 토지 사용 계획 작성
 - (ii) 부록 2의 붙임 11에 따라, 산림 관리·생태계 보호에 관한 계획 작성

- (iii) 생물 종다양성 보전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에 관한 계획 작성
- (iv) 임업법 39조에 따른 산불 예방 및 소방 계획 작성
- (v) 임업법 40조에 따른 산림 내 화학비료, 약제 사용계획 작성
- b) 산림기능 구분
- c) 산림 개발 계획 : 부록 2의 붙임 11에 따라, 산림면적 및 수종 결정
- d) 임산물 수확계획 : 산림 면적, 유형에 따른 생산량 결정, 목재 생산량은 부록 3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출하며, 부록 2의 붙임 12에 따라 산림 생산 계획 정보 기입
- e) 과학적 연구, 교육 및 실습훈련 계획 개발 : 임업법 60조 3, 4, 5항에 따른 생태관광, 리조트 및 휴양지 개발 계획 정보 기입
- f) 임업법 60조 1, 2항에 따라 임업, 농업, 수산업을 결합한 생산계획 정보 기입
- g) 인프라 구성 및 유지 계획, 지역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운용 계획, 관련 법의 선전, 보급 및 교육에 대한 계획 정보 기입
 - (i) 부록 2의 붙임 13에 따라, 임업법 51조에 규정된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의 건설 및 보수·유지 계획
 - (ii) 종자, 기술, 훈련, 산림 보호 및 개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인프라에 관한 지역 사회 및 사람들을 위한 활동 지원 계획
 - (iii) 산림 보호와 개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선전, 보급 및 교육 계획
 - (iv) 산림환경서비스 시행 및 산림환경 이용계획
 - (v) 국가의 현행규정에 따라 개인 및 지역 공동체의 산림보호 및 개발 계획
 - (vi) 임업법 35조, 농업개발부의 규정에 따른 산림 변화 모니터링 계획

- h) 산림 이용 목적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 발급 계획
 - i) 임산물 가공 및 무역 계획 개발 : 가공시설의 위치와 크기, 가공 기술, 기계와 장비, 자재 원산지, 제품유형, 소비 시장 및 투자규모 등에 대한 정보 기입
- 4)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실행 및 방안
- (i)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
 - 조직과 인적자원 관리 방안
 - 이해 당사자 간 협력 방안
 -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과 보존 방안
 - 금융 자원, 유통, 투자자 유치 방안
 - 기타 산림관리 계획 실행을 위한 방안
 - (ii)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의 실행 준비
 - 계획 관리 방안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개발 단계
- 1) 산림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안, 신청서 및 견적서 작성
 - 2) 기존 통계자료, 서류, 지도 검토 및 평가
 - 3) 계자료, 서류, 지도에 관한 추가 정보 조사 및 수집
 - 4)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개발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승인
- 산림 소유주는 자기 투자 자본으로 생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로, 생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

차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자체 승인하고 이행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 집합은 7개의 원칙, 34개의 기준, 122개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기준에 관한 상세사항은 첨부된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의 유형

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 (i) 국가에 의해 발급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
- (ii) 국제 기구에 의해 발급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
- (iii)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해 공동으로 발급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

2) 위 1)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증명서들은 목재출처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서이다.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의 평가와 인증

- (i) 국가에 의한 증명서 평가 및 인증
- (ii) 국제 기구에 의한 증명서 평가 및 인증
- (iii)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한 증명서 평가 및 인증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증명서 승인

1) 산림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의 유형을 결정하고, 증명서에 관한 평가와 인증을 받는다.

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의 승인 :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산림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발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증명서의 평가와 승인이 이루어진다.

· 산림 소유주의 책임

- 1) 산림 소유주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의 승인 또는 이의 자체 승인을 위해 관할 당국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계획을 실행한다.
- 2) 산림 소유주 승인된 산림관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3) 기업체가 산림소유주일 경우, 매년 12월 10일 이전에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의 실행 결과에 관해 부록 6을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보고한다.

6.1.3.3.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조림지의 활용

산림 소유주는 스스로 개발을 결정한다. 수확 후, 임산물 소유주는 임산물 신고 목록을 작성하며, 임산물 신고 목록에 관한 법과 목록에 있는 상품의 법적 출처를 해명할 의무가 있다. 임산물 목록의 견본은 첨부된 부록 7의 붙임 1에 따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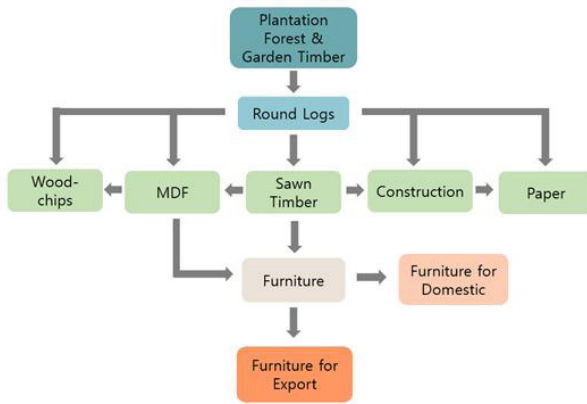
6.2. 목재 가공·유통·물류

6.2.1. 주요 가공 품목 및 유통

현재 베트남의 조림지를 통해 생산되는 원목은 5개의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먼저, 조림지를 통해 생산된 원목은 우드칩 제조공장으로 운송되며,

우드칩으로 가공되어 일본, 중국, 한국 등으로 수출된다. 또한 두 번째로는 MDF 생산에 활용되어, 가구 제조업체에 제공된다. 또한 MDF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구제조공장에 공급되기도 한다. 이후 가구제조공장에서 제재소와 같은 공정을 거쳐 국내 시장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제지생산 원료로 활용된다.



[그림 6-1] 조림지에서 생산된 원목의 국내 유통흐름

6.2.2. 우드칩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우드칩의 양은 약 9.4 백만 ton으로 대부분 일본, 중국 및 한국에 수출됩니다. 우드칩 제조 공장은 베트남 해안 지역을 따라 건설되어 해상 선박으로 수출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다.

우드칩 제조회사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부터 남부지역까지 다음과 같다.

- 1) Quang Ninh 지역의 Cai Lan

- 2) Thanh Hoa 지역의 Nghi Son
- 3) Thua Thien Hue 지역의 Chan May
- 4) Da Nang City 지역의 Tien Sa
- 5) Quang Ngai 지역의 Dung Quat
- 6) Binh Dinh 지역의 Quy Nhon
- 7) Ba Ria Vung Tau 지역의 Vung Tau

우드칩 생산은 아카시아를 포함하여 약 90%, 유칼립투스 가 약 10%를 차지하는 원목 최대공급처이다. 넓은 범위의 토양과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아카시아가 유칼립투스보다 훨씬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우드칩 생산에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

우드칩 공장의 주요 장점은 직경 3cm의 목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드칩으로 활용되는 직경 3cm의 목재는 너무 작아서 실제 입방미터 단위로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우드칩 제조용 목재의 측정단위는 톤 단위로 활용한다.

우드칩 생산을 위한 원목 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톤당 120달러(USD)~135달러(USD)로 다양하다.

6.2.3. MDF

MDF는 우드칩과 더불어 조립지를 통해 생산된 원목이 많이 활용되는 제품이다. MDF 생산에 활용되는 원목의 수종은 아카시아와 유칼립투스, 요구 수종이 우드칩과 비슷하다. 따라서 우드칩 공장보다 MDF 공장은 원목자재 공급을 위해 직접 경쟁한다. 연간 약 700,000m³의 생산능

력을 가진 MDF 공장에는 약 140~150만 m³의 원목량이 필요하다. 또한 MDF용 목재 재료는 직경이 3cm 이상인 줄기로 구성되므로 우드칩용 목재와 마찬가지로 측정 단위는 톤 단위다. 또한 원목 자재의 가격은 우드칩의 가격과 비슷하다.

MDF 제조회사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부터 남부지역까지 다음과 같다.

- 1) Yen Bai 지역(MDF 80,000m³/year, 적층판(laminated boards) 20,000m³/year)
- 2) Hoa Binh 지역의 MDF VINAFOR(54,000m³/year)
- 3) Quang Tri 지역(60,000m³/year)
- 4) Gia Lai 지역(54,000m³/year)
- 5) Binh Phuoc 지역(160,000m³/year)
- 6) Binh Thuan 지역
- 7) Kien Giang 지역(87,000m³/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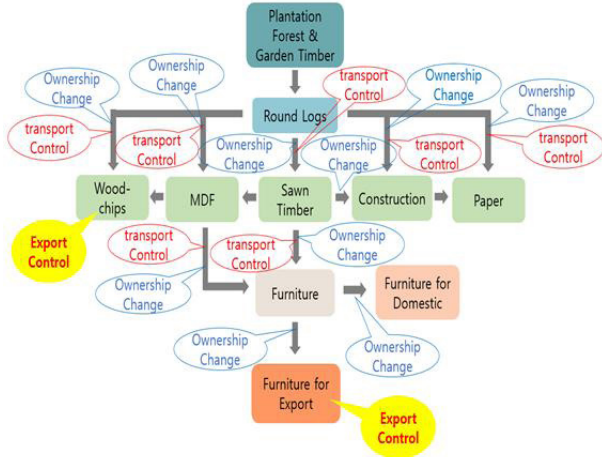
공장에서 생산된 MDF는 2차 목재 가공 공장으로 공급되고 이후 가구와 다른 목제품의 원료가 된다. 이에 MDF 산업은 MDF를 사용하는 가구 산업과 건설 공사의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아카시아는 계속해서 우드칩, MDF와 제지 산업을 위해 활용될 것이며, 아카시아의 확보를 위한 우드칩, MDF, 제지산업 간 경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2] 목재가공 공장 분포

6.2.4. 목재공급체인

국내의 목재 흐름 분석은 목재의 생산에서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판매 되는 목제품의 생산과정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재공급에 대한 공급량은 원자재, 가공부품, 최종 목제품 등 각 단계별 공급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선 5가지 제품 유형에 대한 공급흐름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지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림 6-3] 베트남 국내 목재 공급 흐름

1) 분석 목적 및 공급점

베트남 목재 적법성 보증 체계(Vietnam's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VNTLAS) 측면에서 목재 공급체인의 분석목적은 목재의 원출처를 밝히는 것과 목재생산의 적법성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공급사슬에 위치한 목제품의 각 단계별 공급점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공급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분석 대상

목재공급체인의 분석은 나무가 벌채된 산림에서부터 운송,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생산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공급망 중 각 공급점에서의 목재를 대상으로 한다.

3) 분석 지표

분석 지표는 목재의 원출처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며, 목재생산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

4) 정보

정보는 공급점의 구성성분에 대한 검증 내용이다. (Information verified is verifier for a component of the control point.)

5) 이해 당사자 또는 연루된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 및 연관된 당사자는 목재공급체인에 관련된 조직, 기관, 개인이다.

6) 참조사항

참조사항은 각 공급점에서의 법적 규제, 절차, 업무 지시사항 및 목재 공급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Part.

07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 모델

- 7.1. 베트남 임업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개요
- 7.2.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수, 국가별 자본 규모
- 7.3.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수, 투자시점별 자본규모
- 7.4.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 사업 현황
- 7.5. 국가 및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사업 특징
- 7.6.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을 통한 목재 및 임산물 수출
- 7.7. 베트남 산림분야 투자 모델 소개



7.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 모델

7.1. 베트남 임업분야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요

베트남의 문호개방정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기업은 베트남 주요 소득원인 사회투자자본 및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2018년 이후, 목재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투자국 가운데 중국, 일본 및 한국은 수많은 사업과 큰 투자규모를 가진 국가들로 손꼽힌다.

목재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목재 가공 기업 그룹: 목재 가구 생산 기업, 목조 주택 건축 자재 건설용 목재 가구, 다른 재료와 결합된 목재 가구, 목재 장난감
- 우드칩: 칩 생산 특화 기업
- 목공 서비스: 투자, 증명서, 우표인쇄, 조사, 운송 기업, 생산에 관한 상담활동을 하는 기업
- 목재 팔레트: 목재 선반을 생산하는 기업
- 보조 목재 산업: 접착제, 페인트, 플라스틱, 스크루, 옷감, 가공 기계, 야금, 포장, 전기 장치, 장식 분야의 기업
- 목재 무역: 통나무, 용재, 두꺼운 판자, 목재 가구와 같은 품목을 포함하여 목재와 목재상품의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
- 인공 보드: 파티클 보드, 합판, 컴파운드 보드와 합판 보드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보드를 기업

- 목재 팔레트: 목재 팔레트를 생산하는 기업
- 기타: 목재 펄프와 목탄 등을 생산하는 기업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총 900여개로 총 투자액은 약 55억 달러(USD)에 이른다. 특히 2019년의 1월부터 9월까지 2018년 한 해동안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67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이 신규 등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산업 및 보드 생산의 지원을 받는 수출용 가구를 가공하는 분야에 주로 활동한다. 현재 운영 중인 867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중 61%(529개 기업)가 수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한다. 2018년, 이 기업들의 수출 매출액은 약 40억 달러(USD)로 목재 산업의 총 수출 매출액의 46.7%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은 이처럼 중요한 경제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한다. 기업들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총 근로자는 20여만 명으로 기업 당 평균 약 200명 수준이다. 다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재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매출액과 노동력 수치는 베트남 목재 산업의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특히, 목재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수출 총 매출액 비율(46.7%)은 일반적인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치(70%)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는 수출 부문에 대한 베트남 입업과 관련된 기업의 많은 노력과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기업의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현재 목재 산업 관련 기업은 약 4,500개로, 목재 산업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의 5배 이상 수준이다. 각 베트남 기업은 평균 약 50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목재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총 근로자 수는 약 38만 명 수준이다.

각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평균 투자 자본 규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투자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 각 사업의 평균 투자 규모는 2000년대에 가장 컸으나,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1년과 2018년 사이의 각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투자 규모는 지난 10년 대비 60% 미만으로,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각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에 의한 투자 규모의 70%에 해당한다. 투자 자본 규모의 변화는 생산품 시장의 변화, 기관의 변화, 자본·과학·기술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 생산 전략과 사업 분야에서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투자자본 규모의 이러한 변동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불확실하다.

목재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특히 빈즈엉(Binh Duong), 동나이(Dong Nai), 호치민(Hồ Chí Minh) 등 남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제도적 환경, 인접 목재산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입 항구와 도로 접근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자원의 접근성, 원자재 공급, 공급망의 모든 공급단계에서의 기업의 존재 유무등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지방 제도의 질, 해당 지역의 중앙 및 지방 수준의 정책메커니즘 실행의 질적 측면에서 기인할 수 있다.

7.2.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 국가별 자본 규모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고, 첫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은 1989년에 실시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는 2000년대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8년 말까지, 목재산업에서 등록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의 총 수는 984개 였으나 117개의 사업체가 폐업하여 운영 중인 기업은 867개이다. 특히, 2019년 첫 9개월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2018년 총 등록 수와 같은 67개가 신규로 등록하였다.

2018년 말까지 등록된 기업의 총 투자 자본은 약 55억 달러(USD)였다. 기업에 등록된 총 근로자 수는 201,794 명이였다. 투자 국가에 따른 사업 수, 자본 및 사업 당 평균 투자 규모 정보는 표 7-1와 같다.

[표 7-1]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

국가	사업 수	총 등록된 자본 (천 USD)	사업당 평균 자본규모 (천 USD/사업 수)
대만	246	1,060,811	4,312
중국	181	437,517	2,417
한국	114	391,497	3,434
일본	83	609,046	7,338
영국령 버진 제도	48	888,018	18,500
홍콩	47	801,360	17,050
싱가포르	37	162,813	4,400
말레이시아	33	217,235	6,583
미국	25	44,350	1,774
사모아	17	182,270	10,722
호주	16	10,494	656
프랑스	13	22,723	1,748
영국	13	29,330	2,256
브루나이	12	146,650	12,221
기타	99	500,849	5,059
총합	984	5,504,964	-

대만, 중국, 한국 및 일본은 목재 투자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국가들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는 각각 총 기업의 25%, 18%, 12% 및 8%를 차지한다. 대만, 중국, 한국 및 일본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 기업 수는 목재산업에서 사업 중인 총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의 63%를 차지한다.

등록된 자본의 비율 기준으로 대만, 중국, 한국 및 일본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각각 19%, 8%, 7%, 11%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목재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은 한 사업 당 평균 자본 400~500만 달러(USD)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나 영국버진 제도, 홍콩, 브루나이 및 사모아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상대적으로 큰 자본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다.

7.3.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 투자시점별 자본규모

기간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 자본 비율 및 각 사업의 규모 현황은 표 7-2와 같다.

[표 7-2] 기간별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수 및 투자자본

기간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 수	투자자본(천 달러(USD))
1900년~2000년	80	460, 286
2001년~2010년	458	3, 217, 428
2011년~2018년	445	1, 826, 807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등록된 기업은 약 80개로, 2018년 말까지 등록된 총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 가운데 8%에 불과하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등록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1900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총 기업 수의 47%를 차지한다.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1900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총 기업 수의 45%를 차지한다.

등록된 사업 중인 기업 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분야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비율은 84% 수준이며,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등록되어 현재 영업 중인 기업은 82%, 그리고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기업은 95%로 가장 높다.

투자된 자본 비율에 관련하여,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등록 자본은 2018년 말까지 등록된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등록 자본의 8%를 점유했다.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등록 자본은 2018년 말까지 등록된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등록 자본의 58%,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등록 자본은 2018년 말까지 등록된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등록 자본의 33%를 차지했다.

사업 규모 측면에서는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등록된 기업은 사업당 약 700만 달러(USD)를 투자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등록된 기업은 한 사업당 약 580만 달러(USD)를 투자했다.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 등록된 기업의 수는 많았으나 각 사업의 규모는 한 사업당 약 410만 달러(USD)로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7.4.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은 총 984개가 등록되었고, 현재 867개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7개는 중단되었다(표 7-3).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되었고 그 중 수출용 목재 가공, 원조적 목재 산업, 가공보드의 제작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표 7-3]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투자 유형 투자 유형	총 투자 사업(건) 총 투자 사업(건)	진행중인 사업		중단된 사업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수출용 목재 가공	623	538	86.4	85	13.64
우드칩	25	22	88.0	3	12.0
목재 산업 서비스	16	12	75.0	4	25.0
나무 팔레트	6	6	100.0	-	-
원조 목재 산업 (supporting timber industry)	174	163	93.7	11	6.3
목재 무역	38	37	97.4	1	2.6
인공 보드	94	84	89.4	10	10.6
목재 펄릿	6	5	83.3	1	16.7
기타	2	-	-	2	100.0
계	984	867	88.1	117	11.9

7.5. 국가 및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특징

베트남에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수행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업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만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현재 216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등록된 기업 수가 연평균 10개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등록 기업 수는 감소하였으나, 2016년 무렵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만 기업의 약 2/3가 수출용 목재 가공 부문에서 운영되며, 등록업체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원조 목재 산업(supporting timber industry) (17%)과 인공 보드 생산 부문(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베트남 목재 산업에 투자한 초기 국가들 중 하나로 현재 96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등록 기업의 50% 이상(114개)이 수출용 목재 가공 부문에서 운영되며, 그 다음으로 원조 목재 산업(supporting timber industry) (22%), 나머지는 서비스 사업과 목재 무역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

등록 기업의 동향은 대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001년과 2010년 사이에 기업이 등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보다 베트남 목재 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의 수가 훨씬 적은 수준(25개 중 18개 진행 중)이다.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록 기업 중 60% 이상은 목재 가공 부문에서 운영 중이며 다음으로, 30% 이상은 원조 목재 산업(supporting timber industry)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

홍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수가 43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운영 중인 총 기업 수의 50% 이상이 수출용

목재 가구 가공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원조 목재 산업 부문(supporting timber industry)과 인공 보드 생산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말레이시아는 운영 중인 기업이 28개로 등록된 기업 수 33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운영 중인 기업의 60% 이상이 수출용 목재 가구를 가공에 운영되며, 그 다음으로 원조 목재 산업 부문(supporting timber industry)(14%), 인공 보드 생산 부문(11%)로 나타났다.

일본은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수는 79개로, 가장 많은 수의 운영 기업을 가진 국가 중 4위이다. 한국, 대만, 미국, 중국의 몇몇 기업과는 달리 중단되는 기업 수가 적은 수준이다. 등록 기업의 대략 60%는 수출용 목재 가공 산업, 20%는 원조 목재 산업 부문(supporting timber industry)에서 운영된다.

싱가포르는 일본,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늦게 시작되었다. 등록 기업은 37개로, 그 중 33개의 기업이 최근 운영 중이다. 수출용 목재 가구 가공 부문에서 45%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기업은 다른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에 비해 원조 목재 산업 부문(supporting timber industry)(30%)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을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중 두 번째로 높다. 181개의 등록된 기업 중 89% 수준인 161개가 가동되고 있다. 2013년 이래, 등록 및 운영 중인 기업 수가 연평균 약 30개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등록 및 운영을 유지하는 기업의 총 기업 수와 동일하다.

중국 기업은 50% 이상이 수출용 목재 가구의 가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공 보드 생산(22%), 원조 목재 산업(suppor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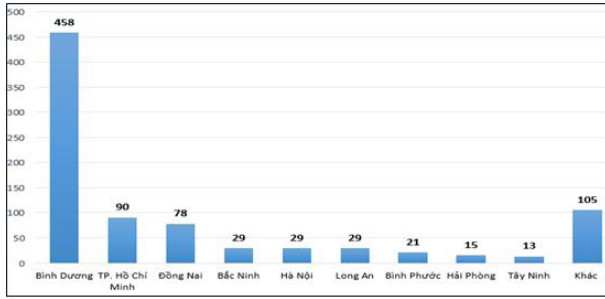
timber industry)(19%) 순이다. 따라서 수출용 목재 가구 생산에 더해 인공 보드의 생산은 중국기업의 우선순위 부분 중 하나이다.

영국 버진 제도는 목재 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크며, 48개의 등록 기업 중 45개의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이다. 수출용 목재 가공 산업에 등록된 기업은 80%, 나머지는 다른 산업에 종사한다.

영국 버진 제도 기업은 한 사업 당 1,850만 달러(USD)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평균 자본 규모를 가지며, 이는 목재 산업에서 각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당 평균 자본 크기보다 3배 이상 수준이다.

[표 7-4]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분포 지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 자본과 노동력 현황

지역	프로젝트 수(명)	프로젝트 진행률 (%)	총 등록 투자 자본 (천 달러 (USD))	총투자율 (%)	총 등록 근로자 수(명)	총 등록 근로자 비율(%)
빈둥 (Binh Duong)	458	52.8	2,143,586	38.9	118,766	58.8
호치민 (HCMC)	90	10.4	243,692	4.4	12,873	6.4
동나이 (Đồng Nai)	78	9.0	1,443,996	26.2	40,101	19.9
박닌 (Bắc Ninh)	29	3.3	65,485	1.2	243	0.1
하노이 (Hà Nội)	29	3.3	326,272	5.9	4,158	2.1
롱안 (Long An)	29	3.3	68,977	1.3	6,361	3.1
빈프억 (Binh Phước)	21	2.4	297,750	5.4	3,535	1.7
하이퐁 (Hải Phòng)	15	1.7	65,640	1.2	130	0.6
떠이닌 (Tây Ninh)	13	1.5	101,050	1.8	2,182	1.1
기타 지역	105	12.3	748,516	13.6	13,445	
계	867		5,504,964		201,794	



[그림 7-1] 현재 진행중인 지역별 목재 산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의 수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의 사업 등록 유형별 특징은 수출용 목재 가공 유형이 기업의 사업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목재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몇몇 지역에서, 다수의 사업체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빈즈엉 성(Bình Dương): 총 511개 등록 기업 중 373개 기업(73%)이 현재 수출용 목재 가구 가공 부문에 종사하며, 다음으로 원조 산업(페인트, 금속, 접착제 등)에 종사한다.

동나이 성(Đồng Nai): 94개의 등록 기업 중 61개가 수출용 목재 상품 가공 기업 부문(65%), 다음으로 보조 산업 부문, 인공 보드 생산 기업과 목재 가구 가공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호치민(Ho Chi Minh City): 103개의 등록된 기업 중 40개가 수출용 목재 상품 가공 기업(39%), 다음으로 원조 산업, 목재 무역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7.6.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을 통한 목재 및 임산물 수출

7.6.1.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출 기업

2018년에 베트남은 목재와 목재 생산품을 수출하는 국내외 기업이 총 3200여개로, 총 수출 매출액은 대략 84억 8000만 달러(USD)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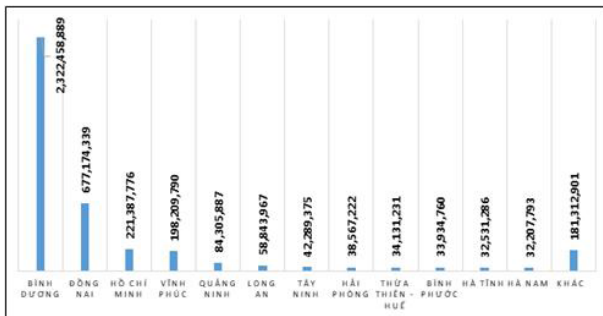
그중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전체의 약 20%(529개)를 차지하며, 수출 매출액은 39억 5700만 달러(USD)로 전체 수출 매출액의 약 46.7%를 차지한다.

직접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의 수는 총 기업 수의 80%(2,676개)를 차지하며, 수출 매출액은 약 45억 1000만 달러(USD)로, 전체 수출 매출액의 53.3%를 차지한다. 표 7-5은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이 분포하는 지역을 보여준다.

빈즈엉 성(Binh Duong)은 가장 큰 수출 매출액을 보이는 지역으로, 전국 목재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총 수출 매출액 중 58.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동나이 성(Đồng Nai)이 17.1%, 호치민(Ho Chi Minh City)이 5.6%, 그리고 빈푹(Vinh Phuc)이 5%를 뒤따른다.

[표 7-5] 1,000만 달러(USD)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분포 지역

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수	수출 매출액 (천 달러(USD))
빈둥 (Bình Dương)	272	2,322,459
동나이 (Đồng Nai)	68	677,174
호치민 (HCMC)	64	221,388
빈푹 (Vĩnh Phúc)	5	198,210
꽝닌 (Quảng Ninh)	1	84,306
롱안 (Long An)	16	58,844
떠이닌 (Tây Ninh)	9	42,289
하이퐁 (Hải Phòng)	12	38,567
투안티엔후에 (Thừa Thiên Huế)	3	34,131
빈프억 (Bình Phước)	7	33,935
하띤 (Hà Tĩnh)	2	32,531
하남 (Hà Nam)	2	32,208
칸호아 (Khánh Hoà)	2	29,052
다낭 (Đà Nẵng)	4	20,399
타인호아 (Thanh Hoá)	1	15,771
꽝남 (Quảng Nam)	1	15,566
푸토 (Phú Thọ)	4	13,755
닥농 (Đắk Nông)	1	13,338
흥옌 (Hưng Yên)	3	11,662
기타	52	61,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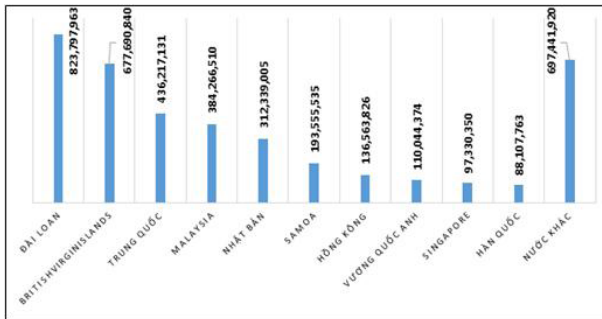
[그림 7-2] 2018년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 수출 매출액

7.6.2.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출 기업

높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출 매출액을 기록한 국가들의 현황은 표 7-6와 그림 7-3과 같다. 대만은 2018년 수출 매출액이 목재 산업에서의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의 전체 수출 매출액 중 2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매출을 보이는 국가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국 버진 제도(18%), 중국과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표 7-6] 2018년 국가별 큰 매출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국가	활동중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수출 매출액 (천 달러(USD))	수출 매출액의 비율 (%)
대만	71	806,744	23%
영국 버진 제도	17	634,386	18%
중국	42	406,869	12%
말레이시아	16	402,166	12%
일본	32	315,780	9%
사모아	6	215,757	6%
싱가포르	9	107,714	3%



[그림 7-3] 2018년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의 수출 매출액

7.7. 베트남 산림분야 투자 모델 소개

7.7.1. 일본의 100% 외국인 소유 기업 모델: 꾸이년 산림 조림 회사

- 거래명 : QPFL
- 활동 유형: 1인 유한 회사

꾸이년 산림 조림 회사는 1995년 Oji Paper Company(51%), Sojitz(39%) 그리고 Dai Nippon Printing(10%)을 포함하는 100% 일본인 소유 합작 벤처 회사로, 124 Phan Chu Trinh, Tp. Qui Nhon, Binh Dinh과 259 Le Hong Phong, Tp. Qui Nhon, Binh Dinh에 위치한다. 투자 자본은 2,075만 달러(USD)이고, 19명의 사무직원과 730명의 계약사원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두 가지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사업은 조림 및 산림관리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20년 이상을 조림해오고 있으며 빈딘 성(Bình Định)의 이점을 이어받은 후, 회사는 원자재 공급을 위해 8개 구역(화이안(Hoài Ân), 화이년(Hoài Nhon), 푸마이(Phú Mỹ), 푸깃(Phù Cát), 띠이선(Tây Sơn), 뚜이프억(Tuy Phước), 반칸(Vân Canh), 안년(An Nhon)) 27개 지역에서 9,762 ha의 산림을 조성하는 데 투자했다.

주요 조림수종은 아카시아 교배종,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와 레드리버검(Eucalyptus camaldulensis)으로, 가구 생산을 위한 용재 혹은 종이 생산용 우

드칩을 제공하기 위해, 7, 8년의 윤벌기를 가진다. 2010년 이래, 빈딘(Bình Định)의 목재 가공 산업에 대한 원자재 제공을 위하여 가치가 높은 종의 용재림을 이루기 위한 투자를 시작해오고 있다.

조림 투자 형태는 많은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 투자 협력 계약 형태이며, 특히 2010년 이래 1,500ha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Ha Thanh Forestry Company에 투자하였다.

회사는 조림을 위해 매년 200만 그루의 묘목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조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많은 복지 사업에 투자한다. 이 회사의 산림은 FSC로부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관한 인증을 받았고, 증명서 번호는 No. SGS-FM / COC-002539, 2021년에 만기된다.

두 번째로는 우드칩 생산으로 2008년 이래 일본시장으로 수출하는 우드칩을 생산하기 위해 PISICO Binh Dinh Company와 합작 투자해오고 있다. 2018년 이 합작회사의 우드칩 수출 매출액은 약 500만 달러(USD)에 달하였다.

7.7.2. 100% 국내 소유 기업 모델: 특수 임산물 수출을 위한 꽝남 합자회사(주식회사)

- 거래명 : FOREXCO QUANGNAM
- 활동유형: 합자회사(주식회사)

특수 임산물 수출을 위한 꽝남(Quảng Nam) 합자회사는 특수 임산물 수출을 위한 꽝남-다낭 기업이란 이름으로 1986년 11월 29일에 설

립되었고, 1997년에 특수 임산물 수출을 위한 쩡남(Quảng Nam) 합작 회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4년 12월 9일에 쩡남(Quảng Nam)성 인민위원회의 2004년 12월 9일자 결정(No. 5084 / QD-UB)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합자회사로 전환됐고, 특수 임산물 수출을 위하여 국가 기업의 공정화 계획에 찬성했다. 2006년 1월 1일 회사는 쩡남(Quảng Nam)에 기반을 둔 특수 임산물 수출을 위한 쩡남(Quảng Nam)합작회사로 공식적으로 전환됐다. 회사는 모든 종류의 실내외 목재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전문화된 4개의 목재 가공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회사는 베트남 비상장기업거래소(the Unlisted Public Company Market: UPCoM)에 기재되어 있다.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의 총 수는 현재 600명이다.

회사는 두 가지의 주요 사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주요 사업은 설계, 상담, 산림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조성된 산림 활용으로서 쩡남(Quảng Nam)과 다낭(Đà Nẵng)에서 1,570ha의 조성된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수종은 아카시아(Acacia)와 소나무(Pinus)로, 세 종류의 아카시아 아우리쿠리포미스(Acacia auriculiformis), 아카시아 만기움(Acacia mangium), 아카시아 교배종과 소나무(Pine), 캐리비아 소나무(Pinus caribaea)이다. 수확 주기는 7~10년이고, 연간 수확 면적은 연간 1,000톤~1,600톤의 목재를 생산하는 약 80ha~100ha이다. 수확 이후 수확지역은 재조림을 실시한다.

2006년 12월 6일, 회사는 공식적으로 베트남 산림 사업 네트워크(Viet Nam Forest and Trade Network: VFTN)에 가입했다. 현재 회사는

COC 증명서 ISO 9001-2000를 가지고 있고,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있다. FSC의 원칙과 기준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을 추구한 수년 후인, 2012년 9월 18일에 회사는 FSC에 의해 1,570ha의 조림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관한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았다.

두 번째 주요 사업은 목재 가공 및 특수 임산물 활용으로, 모든 종류의 실내외 목재품을 생산하는 데 전문화된 이탈리아, 대만, 독일에서 수입된 기계류를 갖춘 4개의 목재 가공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장은 현대적인 이탈리아 기술을 이용한 증기 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총 평균 수용량은 연 700개의 컨테이너 수준이다. 주 수출 시장은 유럽이며, 광남(Quảng Nam)과 다낭(Đà Nẵng) 주변 지역에서 자라는 합법적 획득한 재료들로 실내외 가구를 제작한다. 아울러 야외용 가구를 생산을 위한 FSC 인증의 아카시아(Acacia) 나무, 유칼립투스(Eucalyptus), 티크(Tectona Grandis) 등을 수입한다.

7.7.3.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모델: MDF 베트남고무그룹 (VRG)-동화 목재 합작회사

- 거래명 : VRG DONGWHA
- 활동유형: 합작 회사

MDF 베트남고무그룹(VRG)-동화 목재주식회사는 2008년에 동화 인터내셔널과 베트남 고무그룹(VRG) 간 투자 합작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동화 인터내셔널은 합판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회사이며, 베트남

남고무그룹(VRG)은 베트남에서 고무나무 생산과 가공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소유 회사이다.

MDF 베트남고무그룹(VRG)-동화 목재주식회사는 사무/공장 복합 지역 총 면적이 39ha에 달하며, 베트남 빈프억(Bình Phước)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장은 베트남 호치민(Hồ Chí Minh)과 인접한 민흥(Minh Hưng) 코뮌에 위치해 있다. 주요 재료는 빈프억(Bình Phước), 빈둥(Bình Dương), 떠이닌(Tây Ninh), 닥농(Đắk Nông) 지역에서 공급되는 고무나무, 소나무이다. MDF 베트남고무그룹(VRG)-동화 목재주식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베트남 목재 산업의 현대화 및 산업화에 대한 기여 및 수출을 목표로 한다.

MDF 베트남고무그룹(VRG)-동화 목재주식회사는 2010년 7월 13일부터 1억 6천만 달러(USD) 수준의 첫 합판 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독일, 스위스, 핀란드에서 수입한 진보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갖춘,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MDF/HDF 공장 사업였다. 대부분 기계와 장비는 연간 수용력이 최대 650,000m³, 고품질 MDF 생산 및 독일에서 현대적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인 Siempelkamp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오늘날 이용 가능한 가장 현대적인 압축기인 8 'x 47m ContiRoll 압축기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Siempelkamp Contractor 또한 공장의 기계공학 부분과 대부분의 단말 장치를 담당한다. 제공 장비로는 고무나무를 이용한 합판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섬유 건조 시스템과 광섬유 스크린 기계뿐만 아니라 목재 절삭기, 톱밥 저장고, 목재 파쇄기 스크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사일로가 있다. 더하여 접착제를 밀착시키는 시스템 또한 Siempelkamp Contractor에 의해 제공된다.

2015년 회사의 총 수입은 대략 1억 달러(USD), 수익은 4천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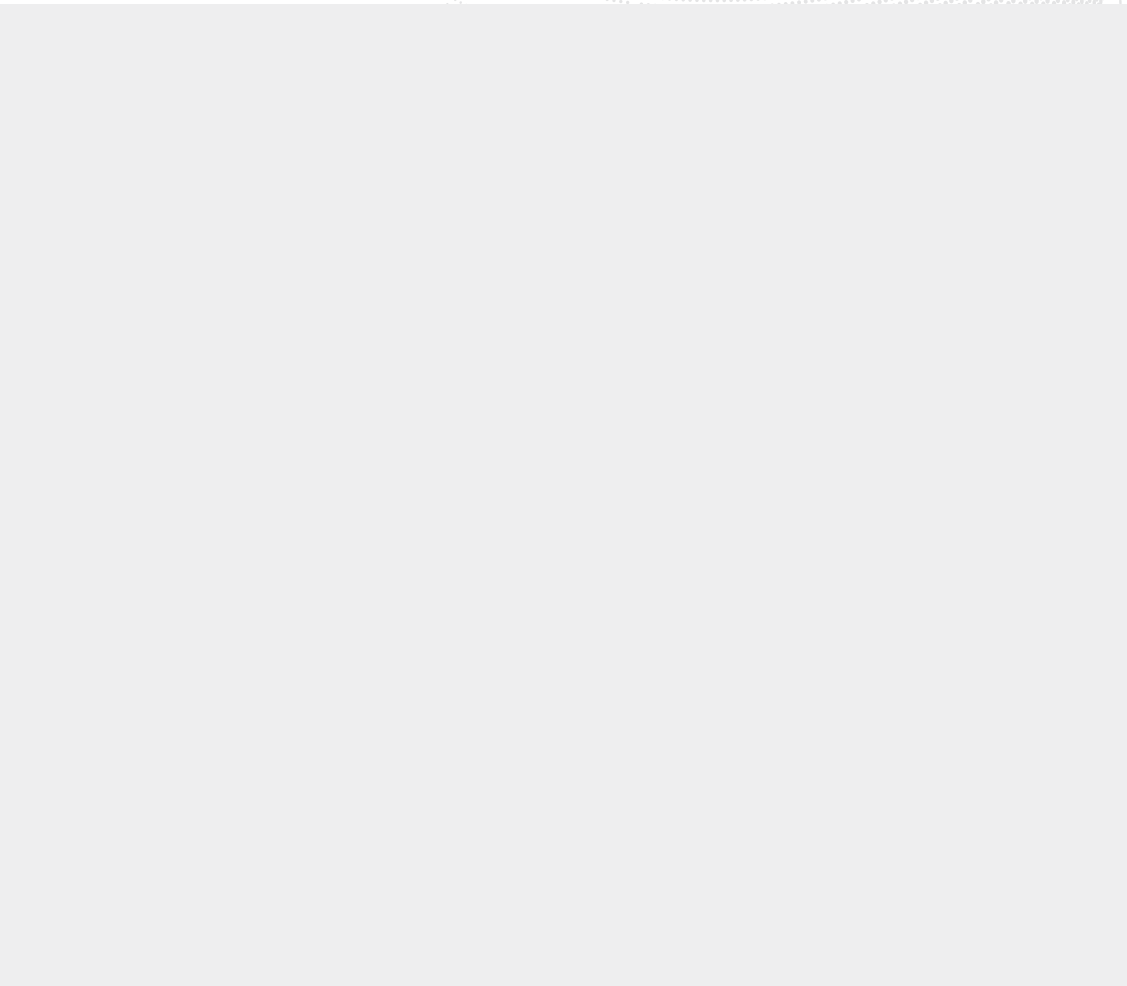
(USD)에 달했다. 또한 두 회사의 CEO는 180,000m³의 수용량을 갖춘 두 번째 생산 라인의 건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7천만 달러(USD)를 투자하였다. 2016년 3월 8일에 MDF 베트남고무그룹(VRG)-동화 공장의 두 번째 생산 라인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7년쯤 두 번째 생산 라인은 공식적으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여 회사가 연간 600,000 block의 설계 용량을 가진, MDF 제조 산업에서 가장 큰 아시아 회사가 되는데 기여했다. 한국 대사는 MDF 베트남고무그룹(VRG)-동화 목재주식회사의 투자 모델을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경제 개발 협력 모델로 평가했다.

동화의 숙련된 지역 전문가와 외국인 전문가의 관리와 감독 아래, 회사는 그들의 상품이 합판 산업에 대한 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소비자 만족도를 제공하고 최대화하는 것이 회사의 최우선이므로, 최고의 고객 서비스와 함께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최고의 임무이다. 시장에서의 상품을 안정화하기 위해, 회사는 상품 촉진에 크게 집중하며, 계열사 및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아시아 지역 MDF 산업에서 최고 제조사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한다.

Part.

08

결론



8. 결론

베트남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는 베트남의 산림 부문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혹은 해외 투자자에게 베트남의 전반적인 일반 현황, 산림 및 임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임업 부문의 투자 환경, 여건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투자 대상국의 임산업 현황, 전반적 경제 상황, 자연환경 조건, 정치 안정성, 인프라
- 산림 관련 정책
- 해외 투자자의 산림자원개발 시 절차 및 요구사항
- 실제 투자 대상국의 투자모델 사례 분석

실제 베트남은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오랜 개방과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되어 최근 사상최대치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뽑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무역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영향으로 인한 다자 통상 채널 확대에 따라 베트남

남와의 경제 협력 활용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만 이처럼 투자여건이 우수하나 성공적인 해외산림투자를 위해서는 환율, 물가 등의 외생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에 대한 이용권리, 산림자원의 소유권, 기업의 투자로 발생한 산림자원의 소유권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변화되는 법 체계나 조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변화에 맞추어 투자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지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면밀히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KDB미래전략연구소, 2018. 베트남 인프라시장 동향과 시사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 베트남에도 드디어 도시철도 시대 도래하나.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0804&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Idx=&page=1&row=0>. (2016.07.11.).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베트남 이동통신시장 더디게 진화 중.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6235>. (2017.01.09.).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베트남 주요 항구 및 운영 현황.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173&searchNationCd=101084>. (2017.04.24.).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베트남 주요 항구 및 운영 현황.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8173>. (2017.04.24.).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 5.5% 인상.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6299>. (2019.07.18).

- KOTRA 국가지역정보.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 natnSn=63](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63).
- Letrainauvietnam. 2016. <https://lavieauvietnam.com/voyage-train-vietnam/>. (2016.07.19.).
- MAPS Vietnam. 2019. <https://ko.maps-vietnam-vn.com/>. (2019.06.20).
- TOURTIMES. 2019. 베트남 뱀부항공. 2019년 10월부터 한국-베트남 노선 신규 취항. http://m.tourtimes.net/128586#_enliple. (2019.10.02).
- VOVWorld. 2019. 하천 체계와 수원 보호. <https://vovworld.vn/ko-KR.vov>. (2019.1.11).
- Worldometers. Vietnam Population (LIVE) retrieving data. 2019. <https://worldpoverty.io/headline/>
- 국토교통부. 2019. 해외철보정보_베트남. 철도 건설시장 환경(2019년 6월)
- 김승현. 2016. 베트남의 지질과 자연재해 특성. 한국지반공학회지. 32(4): 8-13.
- 베트남 도로총국. 2017. <https://drvn.gov.vn/>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외교부. 2018. 베트남 개황
- 외교부. 2019. 재외동포현황
- 위키백과. 2019. 베트남의 지리.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D%8A%B8%EB%82%A8%EC%9D%98_%EC%A7%80%EB%A6%AC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9. 2019년 베트남 전력사업 현황 및 전망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2018년 해외진출 특화모델 개발 연구(베트남)

부록 1. 임업법

임업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따른다.

국회가 임업법을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범위

이 법은 산림의 관리, 보호, 개발 및 이용, 즉 임산물 가공과 거래를 다룬다.

제2조 정의

본 법률의 목적상, 이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숲”은 산림의 관리, 보호, 개발 및 이용, 임산물 가공과 거래를 포함하는 경제와 기술이다.
2. “산림 운영”에는 산림의 관리, 보호, 개발 및 이용, 임산물 가공 및 거래와 관련된 하나 또는 일부 활동이 포함된다.
3. “숲”은 지역 면적이 최소 0.3ha, 캐노피 최소 0.1ha인 모래산 또는 바위산, 침수지, 모래땅의 식물군 또는 다른 전형적인 식물군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는 나무, 대나무 또는 종려과의 하나 또는 일부 종이 주요 성분인 숲의 동식물, 균, 미생물, 산림지 및 다른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생태계이다.
4. “캐노피”는 10분의 1로 나타내는 산림 면적의 단위에 수직으로 숲 윗부분을 덮는 부분이다.
5. “지피 식생 비율”은 특정 지리적 지역의 총 자연 토지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의 비율이다.
6. “천연림”은 추가적인 조림으로 재생 또는 자연 재생에 의해 복원 가능한

숲을 의미한다.

7. “초목 산림”은 조림되지 않은 땅에 새로 심기, 개선해 심기, 이식해 심기 또는 인간이 수확한 후 재생한 숲을 의미한다.
8. “성림”은 숲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신념이나 관습과 연관된 숲이다.
9. “산림 소유주”는 국유지의 산림을 할당 또는 임대하거나, 조림, 산림 재생 또는 개발을 위해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하거나, 산림을 이전 받거나, 산림을 기증 받거나, 법 규정에 따라 산림을 상속하는 조직, 가구, 개인 또는 지역사회이다.
10. “식물 생산림 소유권”은 산림 소유자가 조림 할당/임대 기간 동안 투자한 산림의 동식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용권 및 산림 소유주의 재량권을 포함한다.
11. “산림 사용권”은 산림 소유자가 숲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12. “산림가치”는 주어진 시간 및 특정 산림 지역에서의 산림생태계 및 산림 환경가치의 구성요소의 총 가치이다.
13. “산림 사용권의 가치”는 주어진 시간 및 특정 산림 지역에서의 산림 사용권의 금액적인 총 가치이다.
14. “멸종위기/희귀 산림 동식물종”은 특수한 경제·과학·의료·생태·경관·환경적 가치를 지닌 산림 동식물종이다. 이러한 종들은 극히 일부만 자연에 존재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15. “산림 동식물종 표본”은 산 또는 죽은 산림 식물, 동물, 알, 유충, 부분 또는 그 파생물이다.
16. “임산물”이란 목재, 비목재 임산물, 가공된 등나무와 대나무 제품 등으로 구성된 산림 식물, 동물 및 기타 산림 유기체를 포함한 숲에서 활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17. “임산물에 관한 문서”는 임산물 공장이나 상점에 보관되어 있고 임산물의 이용, 판매, 수출, 수입, 운송, 처리 또는 저장의 과정에 사용되는 임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문이나 책을 의미한다.
18. “합법적 목재”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 거래 또는 생산되는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의미한다.

19.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는 산림가치 향상, 생계개선, 환경보호, 국가 안보 유지에 기여하며 산림보호와 개발목표의 달성을 가치 저하 없이 보장하는 산림관리방법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는 산림보호와 개발목표의 달성을 가치 저하 없이 보장하고 산림가치 향상, 생계개선, 환경보호, 국가 안보 유지에 기여하는 산림관리방법이다.)
20.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산림지역을 인정하는 문서다.
21. “국가가 임대한 산림”은 산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산림 임대권(임차?)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국가의 행위를 의미한다.
22. “임차 산림 환경”이란 단체나 개인이 법에 따라 임야임대차 계약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산림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산림 소유자와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산림 환경 서비스”는 산림 환경의 이용에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24. “공동체”는 같은 마을, 촌락 또는 주택가에 살면서 같은 관습을 가진 베트남 공동체다.
25. “완충 지대(buffer zone)”는 예비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예비림의 경계에 가까운 산림 지역, 토지 지역 또는 수면 지역이다.
26. “예비림 내 특별하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또는 종, 서식지 보호구역에 완전히 보존된 지역을 의미한다.
27. 특수 용도 산림의 “생태학적 복구 하위구역”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또는 종, 서식지 보호구역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다.
28. “예비림의 서비스·행정 하위구역”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또는 종, 서식지 보호구역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건설공사와 결합한 보호림 관리소, 연구·실험기관, 관광, 환대 또는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 운영 지역이다.
29. “자연림 폐쇄”란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자연림에

서 생산된 목재 사용을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0. “자연림 개방”은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자연림에서 생산된 목재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한다.
31. “산림훼손”은 산림 기능 저하로 인한 산림 생태계의 쇠퇴를 말한다.

제3조 산림관리 시행 규정

1. 사회-경제적 성장, 국가 안보,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목표의 조화를 확립하고 산림 캐노피와 산림 서비스 가치를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지역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임업과 관련된 임업 소유주 및 주체의 이익에 대한 국가 이익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업과 관련된 민간 부문을 보유한다.
3. 산림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보호, 개발 및 임산물의 가공 및 거래에 이르기까지 사슬의 연결을 보장한다.
4. 임업과 관련된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의 홍보, 투명성 및 참여를 보장한다.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국인 임업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준수하거나, 입법 문서에 명시화 되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국인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제4조 국가의 임업 정책

1. 국가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 안보정책에 따라 임업과 관련된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을 동원해야 한다.
2. 국가는 예비림과 보안림의 관리, 보호, 개발을 위한 자원을 보장해야 한다.
3. 국가는 임업과 관련된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의 정당한 권익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4. 국가는 생산림의 관리, 보호 및 개발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산림 품종, 산림 복구 및 산림화,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과학을 연구 응용, 직원 교육 제공,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 대규모 목재 식림, 소규모 목재에서 대규모 목재 식림으로의 전환, 인프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임산물 가공 및 거래, 임업의 국제 협력이 이에 해당된다.

5. 국가는 임업-농업-어업 조합 생산, 유기농 임업 생산을 장려하고, 조림된 생산 임야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6. 국가는 산림과 임업농어업의 결합 생산을 위하여 주로 산림에서 수입을 얻는 소수 민족과 지역사회에 산림과 토지를 배분해야 하고, 산림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와 산림 소유주와의 산림 보호와 개발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숲과 관련된 문화 및 신념의 실천을 촉진해야 한다.

제5조 산림 분류

1. 자연림과 조림된 산림은 주요 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a) 예비림
 - b) 보안림
 - c) 생산림
2. 예비림은 주로 자연 산림 생태계, 산림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과학적 연구 수행 및 역사, 문화적 유적, 신념의 보존, 예비림 내 특별하위보호구역을 제외한 접대 및 현대의 생태관광과 관련된 명승 보존에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립공원
 - b) 자연 보존
 - c) 종 - 서식지 보호구
 - d) 역사, 문화적 유적, 경관, 신앙림 보존과, 시가지, 공업단지, 수출 자유 구역, 경제 구역 그리고 첨단 구역의 보호에 사용되는 산림을 포함한 경관 보호 지역
 - dd) 과학적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림, 국립식물원, 국립산림보육원
3. 보안림은 주로 수자원 및 토양 보호, 침식/산사태/홍수 방지, 사막화 방지, 재난 제한, 기후 규제, 생태관광, 접대 및 현대와 관련된 환경 및 국가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 산림환경 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되어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 분수령 보안림, 경계 보호림, 지역사회를 위한 수자원을 보호하는 산림

- b) 바람/모래 방안림, 조수 차폐 또는 해수 침입 예방을 위한 보안림
- 4. 생산림은 주로 임산물, 임업농어업 결합 생산 및 교역, 생태관광, 접대 및 환대, 산림 오락 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되어야 한다.
- 5. 정부는 산림 측정 및 분류기준과 산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6. 농업개발부 장관은 보안림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제6조 산림 경계 확정

- 1. 산림은 임야관리 문서와 함께 부지 및 지도에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산림 경계 확정 시스템은 전국의 하위 구역, 대지 및 산림 부분들 간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 2. 농업개발부 장관은 이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 산림 소유

- 1. 국가는 다음을 포함하는 공유림 소유자 대표자여야 한다.
 - a) 자연림
 - b) 국가가 투자한 조림 산림
 - c) 국가에 의해 책정 또는 제공된 조림 산림 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림 산림
- 2.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조림 생산림을 소유한다.
 - a) 자체 산림
 - b) 다른 소유주로부터 양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산림

제8조 산림 소유자

산림 소유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산림 및 보호림 관리 유닛을 갖는다.
- 2. 이 장 7조항에 기술된 소유주 제외한 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및 기타 사업체를 포함한 사업체.
- 3.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산림을 배정받은 관계자(이하 “무장 관계자”이라 한다).

4. 과학 기술 기관, 임업 직업 교육 및 훈련 센터.
5. 국내 가구와 개인.
6. 지역사회.
7. 산림 생산 조립을 위해 국유지를 임차한 외국투자기업.

제9조 금지법

1. 불법적인 벌목, 산림 파괴, 산림의 이용 또는 잠식.
2. 불법적인 하수 방류 또는 독성 화학물질, 폭발물, 가연성 물질, 도구 또는 차량의 산림 반입, 보호림이나 새로 조립된 산림과 예비림 내 특별하위보호 구역의 가축 방목.
3. 산림 동물의 불법적인 사냥, 사격, 포획, 케이징, 도살, 운반 또는 거래, 불법적인 산림 동식물 중 건본의 수집.
4. 산림자원, 생태계 또는 산림 보호 및 발전에 활용되는 작업물의 파괴.
5. 산림 내 화재 안전 규정 위반, 산림에 유해한 유기체의 예방 및 제거, 유해한 외래종의 관리, 산림 환경 서비스의 제공.
6.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국인 국제 협정 및 베트남 법률 규정에 반한 임산물을 저장, 교역, 운송, 가공, 홍보, 전시, 수출, 수입, 임시 수입, 임시 수출 또는 거래.
7. 천연자원, 광물자원 또는 산림환경의 착취, 산림생태계의 자연경관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법의 규정에 반한 건축, 채굴, 댐 건설, 자연 흐름 또는 기타 활동의 방해.
8. 불법적인 숲의 할당, 임대 또는 도용, 산림 유형 전환, 산림용도 변경, 임산물의 불법적 이용 또는 운반. 산림 지역 변경, 이동, 상속, 증여, 저당 또는 산림 사용권 또는 조립 생산림 소유권의 가치로 자본을 기증, 산림의 배정 또는 임대 시 종교, 신앙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
9. 임산물 가공을 위한 불법적인 물질 사용.

제2장 산림관리 계획

제10조 산림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 및 근거

1. 산림관리 계획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산림 계획은 전반적인 국가 계획, 국유지 이용 계획, 국가 산림 개발 전략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전략에 적합해야 한다.
 - b) 산림 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국가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산림의 수확 및 이용,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역사적 가치의 향상, 환경 안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및 민생 개선을 보장한다.
 - c) 천연림은 예비림, 보안림 및 생산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d) 산림 계획은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홍보, 투명성 및 성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 dd) 지방 및 국가 산림 관리 계획에 명시된 산림 관리 내용은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산림 관리 계획은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근거 및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한다.
 - a) 국유림 계획은 전반적인 국가 계획, 국유지 이용 계획 및 국유림 개발 전략에 기초해야 한다.
 - b) 지방 및 국가 산림 관리 계획에 명시된 산림 관리 내용은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c) 산림 관리 계획은 자연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가 또는 지역 자원에 기초해야 한다.

제11조 산림 관리 계획 기간 및 내용

1. 국가 산림 관리 계획 기간은 30년~50년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0년이다.
2. 산림 관리 계획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는 계획 규정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자연 및 사회 경제적 조건 및 산림 자원의 실제 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평가, 관련 정책 및 개발 방향 및 계획, 개발 자원과 문제 평가의 해결이 필요하다.
 - b) 산림 관리, 보호 및 개발, 임산물 가공 및 거래, 과학기술 및 인력 투자에 대한 이전 산림 계획의 이행 평가
 - c) 임산물 수요와 시장, 산림 환경 서비스, 기후 변화의 영향, 과학기술적 진보 및 산림 관리에 적용되는 기술적 진보의 예측
 - d) 산업 사례 및 관련성 연구, 산림 관리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요건 결정

- dd) 산림 관리 시점 및 발전 목표 결정
- e) 예비림, 보안림 및 생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 g) 산림 관리 인프라의 발전 방향
- h) 시장, 재료 공급 지역 및 임산물의 가공의 발전 방향
- i) 계획 구현을 위한 해결책 및 자원

제12조 국유림 계획의 준비, 내용, 평가, 승인 및 조정

1. 국유림 계획을 준비하는 단체의 책임:

- a) 농업개발부는 국유림 계획을 수립한다.
- b) 국가 산림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정부 부처, 장관의 지휘권 및 지방인민 위원회는 농업개발부와 협력한다.

2. 국유림 계획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

- a) 농업개발부는 관련 주 당국,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에서 내용을 수집하고, 국가 산림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통합, 선정 및 설명해야 한다.
- b) 국가 산림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와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하며, 회의나 워크숍을 조직해야 한다.
- c) 내용 수집의 제한시간은 관할 당국이 내용 수집을 결정하는 날로부터 60 일이어야 한다.

3. 국유림 관리 계획의 평가

- a) 총리는 국유림 계획을 담당하는 평가 위원회를 설치한다.
- b) 농업개발부는 국유림 계획 평가위원회의 고정 권한이다.
- c) 평가위원회는 국가 산림 관리 계획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 개발부에 송부한다. 농업개발부는 평가 내용을 받았음을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 d) 평가내용에는 전체 국가계획, 국유림 개발전략 및 국토이용계획의 준수, 지속가능한 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산림을 이용하는 실제 상황, 자원, 수요 및 역량, 사회경제적, 환경적 효율성, 그리고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무총리는 농업개발부 장관이 제출한 국가 산림 관리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5. 국유림 계획의 조정:

- a) 본 문서의 제2조항 11에 언급된 산림 계획 내용에서 국가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국가 산림 관리 개발 전략이 크게 변경될 경우 국유림 계획을 조정한다.
 - b) 국유림 계획의 조정은 본 문서 제3조항 및 제4조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승인되어야 한다.
6. 국유림 계획의 수립, 내용, 평가, 승인 및 조정은 본 문서에 명시된 조항과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산림 관리 계획 수립 컨설팅 서비스 조항

- 1. 산림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입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컨설팅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다.
- 2. 컨설팅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법적 인원의 지위와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산림 관리

제1절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그리고 산림 유형의 전환

제14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규정

- 1.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은 국유림 관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지방 산림 지역에 준거한다.
- 2. 중요한 국가사업, 국가안보 목적의 사업 또는 기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긴급 사업을 제외하고 자연림을 용도 변경할 수 없다.
- 3. 분쟁 산림지역은 배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 4. 산림 소유자는 국가가 다른 단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투자한 자연림 또는 조림지 지역을 임대할 수 없다.
- 5. 산림과 토지의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및 전용은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6. 산림 배분 또는 임대 조건과 한도는 토지 배분 또는 임차 조건 한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7.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및 전용은 현지인의 참여로 홍보와 투명성을 보장한다. 숲을 할당하거나 임대할 때 종교, 신앙 또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8.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및 전용은 지역사회의 생활공간과 관습을 존중한다. 산림과 관련해 전통적인 관습, 문화 또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법규정을 준수하며 지역사회 규칙을 갖는 소수민족,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5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기준

1. 지방인민위원회가 채택한 자치구 인민위원회의 산림 배분, 임대 또는 용도 변경 계획, 관할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구의 연간 토지 이용 계획.
2. 조림 예정 산림 또는 토지 구역.
3. 산림 사용을 위해 단체의 투자 사업의 명시 또는 가구, 개인 또는 공동체의 산림 할당,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의 조사서 필요.
4. 단체, 가구,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환경 파괴 없이 지속될 수 있게 산림을 관리할 능력.

제16조 산림 배분

1. 국가는 부담금이 없는 예비림을 다음 단체에 배분한다.
 - a) 국립공원의 예비림관리단위, 자연보호구역, 종 - 서식지 보호구역, 명승지와 역사문화 유적 보존에 이용되는 산림을 포함한 경관보호구역, 도시지역, 산업단지, 수출처리구역, 경제지구 및 첨단기술지구의 산림보호구역, 국유림 묘포 또는 국립 식물원
 - b)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림의 관리를 하는 과학 기술 기관 또는 직업 교육 훈련 센터 또는 국립 식물원
 - c) 보안림 관리 단체, 기업체, 역사문화유적 및 명승지 보존에 사용되는 산림을 포함한 경관보호구역의 무장관계자, 도시지역, 산업단지, 수출처리구역, 경제구역 및 첨단기술지구의 산림보호구역과 배분된 산림 지역과의 대체
 - d) 전통적으로 신앙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역사회

- dd) 국유림 묘포를 산림 지역과 대체하는 국내 기업체, 과학기술기관 또는
임업의 직업교육훈련센터
2. 국가는 부담금이 없는 보안림을 다음 단체에 배분한다.
- a) 보안림 관리 단체 또는 분수령 또는 경계 보안림의 무장 관계자, 바람
또는 모래 보안림, 조수 보호 또는 해양 침식 예방을 위한 보안림
 - b) 보안림과 생산림 지역을 대체하는 사업체
 - c) 분수령 보안림, 바람 또는 모래 보안림, 조수 보안림 또는 해수 침해 예
방을 위한 보안림이 위치한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개인
 - d) 분수령 보안림, 바람 또는 모래 보안림, 조수 보안림 또는 해수 침해 예
방을 위한 보안림, 또는 수자원을 보호하는 산림이 위치한 공동체에 합법
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주민
3. 국가는 부담금 없는 생산림을 다음 단체에 배분한다.
- a) 산림이 위치한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개인 또는 지역사
회, 무장 관계자
 - b) 예비림/보호림 구역으로 대체하는 예비림 관리단체 또는 생산림의 보호
림 관리단체

제17조 생산림 임대

국가는 자연 생산림 또는 조림지를 임업-농업-어업 합동 생산, 생태관광, 환
대 또는 접대를 취급하거나 임산품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가구 또는 개
인에게 일괄 또는 연간 임대하여야 한다.

제18조 산림 유형 전환

1. 산림 유형 전환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전환은 산림 계획에 적합하다.
 - b) 전환은 산림 분류 기준을 충족한다.
 - c) 산림 유형 전환 계획이 가용하다.
2. 산림 유형 전환 권한:
- a) 국무총리는 농업개발부의 요청에 따라 조성한 산림의 유형을 전환하도
록 결정한다.

- b)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위원회가 산림 유형 전환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본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산림의 유형을 전환하도록 결정한다.

제19조 산림 용도 변경 요건

1. 산림 용도 변경은 국가임업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기획에 따른다.
2. 관할 국가기관은 산림 용도 변경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3. 산림 용도 변경은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된 투자사업을 가져야한다.
4. 대체 조림 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대체 조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제20조 산림 용도 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1. 국회는 예비림, 분수령 보안림, 최소 50ha의 경계 보호림, 바람, 모래 방안림 및 최소 500ha의 조수 방호림, 최소한 1,000ha의 생산림 등의 용도 변경을 결정한다.
2. 국무총리는 50ha 미만의 예비림, 20ha~50ha의 분수령 보안림 또는 경계 보안림, 20ha~500ha의 바람/모래 보안림 및 조수 해수 방호림, 50ha~1,000ha의 생산림의 산림 용도 변경을 결정한다.
3. 지방 인민위원회는 분수령 보안림, 경계 보안림, 바람/모래 보안림 및 20ha 미만 조수 해수 침식 방지, 50ha 미만 생산림, 지역사회의 수자원을 보호하는 산림의 용도 변경을 결정한다.

제21조 산림 용도 변경 시 대체 조림

1. 토지를 배분하거나 임대하여 산림 용도 변경을 하는 사업책임자는 조림된 산림의 경우 용도변경된 산림의 면적과 동등한 대체 산림을 조림하거나 자연림일 경우 용도변경된 산림의 면적을 3배로 늘린다.
2. 본 1조항에 언급된 사업책임자는 산림을 조리할 때에는 지방인민위원회에 대체 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해야하고 또는 산림을 조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을 지방 산림보호개발기금에 납부하거나 하여야 한다.
3. 지방 산림보호개발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본 1조항에 규정하는 대체 조림이며, 지방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ha당 값을 곱한 금액이며, 지방 인민

위원회는 대체 조림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사용을 결정한다.

4. 사업 책임자가 도내 산림 보호 개발 기금을 전액 지급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방인민위원회가 대체 조림지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대체 조림량은 다른 지방의 대체 조림을 조직하기 위하여 국유림보호개발기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5. 농업개발부 장관은 본조에서 언급한 대체 조림 시행에 대한 내용, 절차, 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산림 전용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산림을 전용한다.
 - a) 산림 소유자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거나, 국가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임업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반한 경우
 - b) 산림 소유자가 관할 국가기관이 확인한 불가항력 사건을 제외하고, 산림이 배분되거나 임차된 날로부터 12개월 연속하여 산림 보호 개발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c) 산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산림을 반환한 경우
 - d) 국가가 배분하거나 임대한 산림의 기간이 연장 없이 만료된 경우
 - dd) 산림이 잘못된 대상에게 또는 월권으로 배분 또는 임대된 경우
 - e) 산림 소유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개인인 경우
 - g) 토지법에 규정된 기타 산림지전용사례
2. 산림 소유자는 국가가 국가 안보 목적으로 산림을 전용할 때,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 산림이 잘못된 대상에게 또는 월권으로 배분 또는 임대된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23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권한

1.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
 - a) 단체의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 b) 베트남의 임산물 식수를 위한 해외투자기업에 토지 임대
2. 지역 인민위원회의 권한:

- a) 가구와 개인의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 b) 지역사회의 산림 배분, 용도 변경 또는 전용
3. 전용 산림지역이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대상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림전용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4. 정부는 배분, 임대, 용도 변경, 전용 그리고 산림유형의 전환을 명시한다.

제2절 산림 관리

제24조 산림 관리 규정

- 1. 국가는 산림을 배분, 임대, 관리 및 보호하여 산림지역이 보유되도록 한다.
- 2. 산림 소유자는 산림 관리 규정에 따라 산림을 지속적 관리, 보호, 개발,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 예비림 및 보안림 설정 권한

- 1. 국무총리는 국가 또는 지역간 중요성이 있는 예비림 및 보안림 설정을 결정한다.
- 2. 지방인민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예비림 및 보안림 설정을 결정한다.
- 3. 산림관리 규정에 따라 예비림과 보안림 등을 설정한다.

제26조 예비림 및 보안림 관리

- 1. 예비림 관리:
 - a) 예비림 관리 단위는 각 공원/보호구역의 면적이 최소 3,000ha인 경우 국립공원, 종 - 서식지 보호 구역 또는 경관 보호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 b) 각 지방에는 하나 또는 일부 자연보호구역, 종- 서식지 보호구역 또는 경관보호구역이 각 보호구역/면적이 3,000ha 미만인 경우, 각 지방에는 예비림 관리단위를 설정해야 한다.
 - c) 과학적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산림을 제공 받는 단체, 국립식물원 또는 국유림 묘포 등은 자체 산림을 관리한다.

2. 보안림 관리:

- a) 보안림 관리단위는 각 산림의 면적이 최소 5,000ha인 경우 분수령 또는 경계림, 또는 각 산림의 면적이 최소 3,000ha인 경우 바람/모래 보안림, 조수 차폐 또는 해수 침입 예방을 위한 보안림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 b) 본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보안림은 지방의 사업체, 가구, 개인, 지역사회 또는 무장 관계자가 관리한다.
3. 예비림 및 보호림은 산림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절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제27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1.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책임:
 - a) 산림 소유자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b) 가구, 개인, 지역사회 또는 관련 가구 및 개인인 산림 소유자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2. 예비림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계획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자연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가 안보의 평가, 산림 생태계의 실제 상태, 생물 다양성, 유기체의 유전자원, 역사문화적 유적 및 경관
 - 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목표 및 범위 확인
 - c) 복원 및 보존하기에 저평가된 구역의 산림 구역 결정
 - d) 산림관리, 보호, 보존, 개발 및 이용의 결정
 - dd) 계획의 해결책 및 이행
3. 보안림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계획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자연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가 안보의 평가, 산림 자원의 실제 상태
 - 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목표 및 범위 확인
 - c) 산림 보호 결정
 - d) 산림관리, 보호, 개발 및 이용의 결정
 - dd) 계획의 해결책 및 이행
4. 생산림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계획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자연 및 사회경제적 조건의 평가, 산림 자원의 실제 상태, 생산성과 수

- 입, 산림 소유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평가
- 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목표 및 범위 확인
 - c) 임산물의 관리, 보호, 개발, 사용 및 거래의 결정
 - d) 계획의 해결책 및 이행
5. 농업개발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계획의 내용과 해당 계획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절차를 명시한다.

제28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

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인증은 산림소유주에게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발급한다.
2. 산림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또는 국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을 부여 받는다.
3.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인증을 평가 및 교부하는 단체는 베트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농업개발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기준을 명시한다.

제4절 천연림의 개방 및 폐쇄

제29조 천연림 개폐 규정

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보장하고 산림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
2. 홍보와 투명성을 보장한다.
3. 천연림을 개폐 시 관계 당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한다.

제30조 천연림 개방 또는 폐쇄의 경우

1. 천연림은 다음의 경우에 폐쇄한다.
 - a) 산림 벌채 또는 불법 산림 개발이 복잡해지거나 산림 자원이 심각하게 감소할 위험이 있다.
 - b) 산림의 생물다양성과 보호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열악한 천연림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2.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문제가 해결된 후 천연림을 개방한다.
3. 천연림의 개폐는 산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천연림 개폐에 관한 결정의 권한, 절차, 공포

1. 국무총리는 전국 또는 여러 지방/수도권에 걸쳐 천연자원을 개방 또는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가 천연림 개폐 계획을 채택한 후 그 지방에 위치한 천연림을 개방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
3. 천연림 개폐에 관한 결정은 공개적으로 한다.
4. 천연림의 개폐 절차는 산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천연림을 폐쇄 시 국가의 책임

1. 국가는 천연림이 폐쇄되었을 때 천연생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농업개발부는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자연림이 폐쇄되었을 때 산림 소유자 지원 검토를 위한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재정부에 지시하고 협조한다.
3.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천연림이 폐쇄되었을 때 그 곳의 인민위원회에 산림 소유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산림 조사, 상황 점검, 개발 점검과 산림 데이터베이스

제33조 산림 조사

1. 산림 조사 내용:

- a) 산림 조사 및 분류, 보호림 순위의 중요도
 - b) 산림 특성 및 산림 개발 가능성 조사 및 평가
 - c) 산림 손실 및 훼손 조사 및 평가
 - d) 산림 생물 다양성 조사 및 평가
 - dd) 산림 개발 감독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e) 산림 손실과 훼손을 제한하고,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산림 탄소 매장량을 보존하고 증가시키는 해결책을 찾으므로써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평가한다.
2. 산림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a) 농업개발부는 5년마다, 각 주제에 따라 국유림 조사결과를 시행, 발표한다. 도유림 조사 직접 실시

- b)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에서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3. 농업개발부 장관은 산림조사 내용, 산림조사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다.

제34조 산림 상황 점검

1. 산림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산림지역, 산림보호구역 또는 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특정 산림관리자와 연계한 지방당국의 명령에 따라 산림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 및 비산림 데이터베이스를 개정한다.
2. 산림 상황 점검 기본 내용:
 - a) 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통합 및 처리
 - b) 산림 지역 및 산림 구획 매장량의 상황 점검 실시
 - c) 산림 지역 및 산림 소유자 매장량의 상황 점검 실시
 - d) 행정수준에 따라 전체 산림 지역 및 보호구역의 상황 점검 실시
 - dd) 행정 당국 및 산림 소유자, 산림 구획, 표준지 또는 하위 구역 관리에 대한 문서 작성
 - e) 산림 상황 점검 결과 공표
3. 토지 상황 점검 시기에 따라 10년마다 산림 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4. 산림 소유자는 산림 소유자자가 단체인 경우 산림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 산림 관리 관계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산림 소유자가 가족단위/개인/지역 사회인 경우 표본에 따른 산림 상황 점검 수치를 신고하고,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구역의 산림 관리 관계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산림 당국은 기법에 도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산림 상황 점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소유자가 가족단위/개인/지역 사회인 경우 산림 상황 점검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농업개발부 장관은 산림 상황 점검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산림 개발 점검

1. 산림 관리, 보호 및 개발에 기여하는 다양한 산림 유형 지역인 산림 또는 비산림 유형 지역의 변동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산림의 개발을 점

검한다.

2. 산림 계획은 산림 개발을 검사하는 기본 단위로서, 각 산림 소유자의 각 산림 표준지나 하위 구역에 따라 수집되고, 지역공동체/지역/지방 또는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3. 농업개발부 장관은 이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 데이터 베이스

1. 산림 데이터베이스는 산림 관리, 보호, 개발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활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 업데이트 및 유지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집합이며, 산림 관리 정보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2. 산림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산림 관련 법률 문서에 대한 데이터
 - b) 산림관리, 보호, 개발 및 사용에 관한 데이터, 자연보호, 멸종위기종/희귀종, 산림과 관련된 과학연구
 - c) 산림 조사, 상황 점검, 개발 및 산림 관련 온실가스 배출감소 결과 등에 관한 자료
 - d) 산림에 관련된 기타 데이터
3. 농업개발부는 전국의 산림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산림 보호

제37조 산림 생태계 보호

산림 생태계 또는 산림 유기체 성장과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관계자,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 사회는 여기에 명시된 조항과 환경안전, 생물다양성 보호, 동식물의 보호 및 격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산림 동식물 보호

1.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의 산림 동식물은 관리 및 보호하도록 등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멸종위기종과 희귀종 산림 동식물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록에 수록된 멸종위기/희귀/야생 동식물종 사용절차에 관한 정책을 수립, 개발한다.
3. 농업개발부 장관은 본조 제2항의 규정과는 별개로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및 산림동물 사용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산불 안전

1. 산림 소유자는 화재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 국가기관의 지시 및 검사에 따른다.
2. 조림지를 마련하기 위한 야산이나 들판을 비우기 위해 산림 근처 또는 내에 불을 지피거나, 건조기 전에 불을 지피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불꽃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불을 피우는 자는 화재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산림 근처 또는 내에서 활동을 실시 또는 불을 지피는 단체, 가구 및 개인은 화재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림 소유자가 제안한 화재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산불 발생시 산림 소유자는 즉시 불을 끄고 신속히 관계 당국 또는 기관에 신고하고, 화재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할 국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관련 기관은 산불의 신속한 진화에 협력해야 한다.
5.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광대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진화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규정을 따라야 한다.
6. 산림주사는 산림 소유자의 화재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소방경찰의 책임과 협조를 받아야 한다.
7.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산림해충 예방 및 제거

1. 산림해충의 예방 및 제거, 산림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된 규정과 생물 다양성, 동식물의 보호 및 격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산림 소유자는 산림 해충의 예방 및 제거 조치를 취하고, 즉시 가장 가까운 식물 또는 동물 보호 및 방역 당국에 할당/임차된 산림 지역의 해충을 통보하고, 산림 해충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산림 관리 또는 생물학적 조치를 취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해충에 대한 직접적인 예방 및 구제조치 등 전염병을 예측한다.
4. 인민위원회는 산림 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산림 해충에 대한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조직하고 지시한다.

제41조 산림 소유주의 산림 보호 담당 부대

1. 산림주사가 없는 지역의 보존림 관리 부대 및 보호림 관리 부대, 국유기업, 국가가 산림과 산림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한 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는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2.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부대는 다음과 같다.
 - a) 산림 관리용으로 계획된 산림 및 산림지 보호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수행한다.
 - b) 화재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 c) 산림관리, 보호 및 개발에 관한 규정 위반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법 규정에 따라 전투장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3. 산림 소유자는 산림 보호를 담당하는 부대의 활동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며, 산림 보호를 담당하는 부대의 정책을 보장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산물 원산지 점검

1. 임산물 원산지 점검에는 임산물에 관한 서류 검사, 수확, 운반, 가공, 거래, 수출, 수입, 이식, 보관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검사는 계획에 따라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임시로 실시한다.
3. 산림 주사는 베트남 경찰과 군대, 민병대, 시장 감시 기관, 세관 및 관련 기관 및 당국과 협력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위반에 대한 예방조치, 점검,

탐지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베트남 경찰과 군대, 민병대, 시장 감시 기관, 세관 및 관련 기관 및 당국은 관할 내에서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산림주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5. 농업개발부 장관은 임산물 원산지 관리를 위해 합법적 임산물에 관한 문서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전 국민의 산림 보호 책임

1. 국가 기관,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는 여기에 명시된 규정과 화재 및 환경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생물다양성 보호, 동식물 보호 및 격리와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
2. 단체, 가구, 개인 및 지역사회는 관할 국가 기관 또는 산림 소유자에게 산 불, 산림 해충 및 산림 관리 및 보호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고, 산불 발생 시 관할 국가기관의 인력 및 차량 동원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산림 개발

제44조 산림 식물 품종 개발

1. 유전적 자원을 비축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품종을 공급할 수 있는 국유림 종묘장을 구축한다.
2. 재종립, 산림보육원, 눈접용 접가지 과수원 개발 및 개량. 1차 수목의 경우 인정된 품종, 품종 자원과 재료만을 생산하거나 거래한다.
3. 임산물의 거래요건을 충족시키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유전적 질을 향상시키고, 높은 생산성과 고품질, 감염에 대한 우수한 저항력을 가진新品种을 선정하여 재생산한다.
4. 연구를 수행하고 높은 생산성 및 고품질의 산림 식물 품종을 선정, 번식 및 전파하는 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용하며, 품종 관리, 번식 실행 및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며, 산림 식물 품종에 대한 개인,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5. 농업농촌지능부 장관은 1차 식물 품종 목록, 품종 자원 및 재료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한다.

제45조 생물학적 산림 대책

1. 생물학적 산림 대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천연림 재생산 또는 추가 식재의 현지화 및 촉진
 - b) 산림 사육 및 비옥화
 - c) 천연림 재생
 - d) 새로운 산림을 식재, 이식하고, 이를 사육
2. 농업개발부 장관은 이 조항을 명시한다.

제46조 보존림 개발

1.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및 종서식지 보호구역은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 a) 산림의 자연 구조를 유지하고, 보존림 내 특별하위보호구역에서 산림의 자연적 개발을 보장한다.
 - b) 산림의 자연 구조 복원, 산림의 천연 갱신 및 비옥화, 보존림 생태 복원 하위 구역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보존림 서비스 및 행정 하위 구역의 조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c) 유기체 종을 구조, 보호 및 성장시킨다.
2. 경관 보호 구역의 경우:
 - a) 이용 가능한 산림 지역 유지
 - b) 조림 기술을 적용하고 산림 품질을 개선을 위해 천연림 갱신 및 비옥화를 현지화하며 촉진한다.
3. 과학적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림은 산림 소유자 또는 관할 국가기관이 결정한 과학적 연구과제에 따라 보호 및 개발한다.
4. 국립 채종림은 관할 국가기관이 채택한 계획에 따라 유지, 개발한다.
5. 국립식물원은 환경 및 관광분야에서 과학적 연구,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자생수종을 채취, 선정, 비축, 식재한다.

제47조 보안림 개발

1. 유역 및 국경 보안림은 산림으로 집중되거나 지역간 구애되지 않은 곳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산림보호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구조를 유지, 형성해

야 한다.

2. 지역사회 수자원을 보호하는 산림 및 보호림의 유역 또는 경계인 경우:
 - a) 산림 비옥화와 함께 천연림 갱신의 보호 및 현지화와 축진을 결합한다.
 - b) 공한지에 위치하거나 천연 갱신될 수 없는 산림의 식재, 다양한 자생수종, 다목적 나무 및 비목재 임산물의 식물 혼합.
3. 바람/모래를 막기 위한 방풍림, 조수 보호 또는 해양 침식 예방을 위한 방풍림의 경우:
 - a) 각 구역의 자연 조건에 따라 산림 지대를 설정한다.
 - b) 뿌리 깊은 나무종, 특히 거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수종으로 조림법을 적용하고, 조림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구역에 추가로 식재한다.

제48조 생산림 개발

1. 이용 가능한 천연 생산림을 유지하고, 이용되었으나 산림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역의 천연림을 복원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천연림만을 재형성한다.
2. 산림으로 집중된 지역을 형성하고, 식재된 산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산물 가공 산업을 위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최신 생명공학 및 집약적인 임업 기술을 적용한다.
3. 혼합수종이나 비목재 임산물의 조림을 촉진하고, 성장이 빠른 소교목을 심는 것과 장기적인 교목을 심는 것을 병행하며, 작은 용재림에서 큰 것으로 전환한다(가능한 경우).

제49조 산림 식물 이식 및 산림 동물 번식

1. CITES 부록 또는 일반 산림 동물의 목록에 있는 멸종위기 또는 희귀의 산림동식물의 이식과 번식시키는 단체 및 개인은 합법적인 품종/종류에 대한 요건, 인간과 가축의 안전을 보장하는 농가, 자연환경에서 종의 개체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및 전염 안전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정부는 CITES 부록 및 일반 산림 동물의 목록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희귀한 산림 동식물의 번식과 산림 식물의 이식과 번식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절차, 권한을 명시한다.

제50조 산발적 조림

1. 산발적 조림이란 녹색 공간을 늘리고, 경관을 만들고, 수목이나 목재의 공급, 관광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지역 이상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 및 지방 당국과 단체는 산발적 조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고해야 하며, 도시/농촌지역과 산업단지에 산재한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3. 국가는 품종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재한 나무의 조림 기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51조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1. 임산물 수출/운송용 도로, 산림 보호를 위한 순찰 도로, 창고 또는 제재소 등 임업 경로 시스템.
2. 산림 해충의 예방 및 제거, 산림 동식물의 구조,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업무.
3. 화재안전을 위한 수로, 배수로, 저수지와 댐, 방화벽, 산불망대, 관측소 및 산불 예측소를 포함한 산불 안전 업무.
4. 산림보호소, 표지판, 경고표지판, 산림경계표지판, 하위 구역, 표준지 및 산림 구획들.
5.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기타 필수 인프라.

제6장 산림의 사용

제1절 보존림 사용

제52조 보존림 내 임산물 사용

1.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및 종서식지 보호구역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a) 보존림의 특별하위보호구역 내 임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존림 생태 복원 하위 구역에서 죽은 나무 또는 부러진 나무의 2차 채굴을 수행하지 않는다.
 - b) 보존림 서비스 또는 행정 구역에서 죽은 나무, 부러진 나무 및 균류의 2차 채굴 권한을 갖는다.

- c)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업무 구축을 위한 지상 허가 범위 내에 있는 수목, 목재, 비목재 산림 식물 및 균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d)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학 기술 과제에 따라 산림 동식물, 균류 및 유기체 유전자원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경관 보호림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a)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업무 구축을 위한 지상 허가 범위 내에서 생태계, 풍경, 문화 또는 역사를 보존, 개조 또는 복원하기 위한 생물학적 산림 관리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수목, 목재, 비목재 산림 식물 및 균류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b)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학 및 기술 과제에 따라 산림 동식물, 균류 및 유기체 유전자원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c) 신앙림은 죽은 나무, 부서진 나무, 산림 식물, 균류 및 비목재 임산물의 2차 자격을 가지며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공공 목적을 위한 목재들을 사용한다.
3. 과학적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림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a)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학 기술 과제에 따라 임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 b) 관할 국가기관이 채택한 업무 구축을 위한 지상 허가 범위 내에서 수목, 목재 및 산림 식물의 2차 채굴, 산림에 대한 그룹 조정, 산림 육성 및 기타 생물학적 산림관리법 적용 과정에서 수목, 목재, 비목재 산림 식물 및 균류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c) 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 동식물 및 유전적 자원의 표본, 산림 동식물, 균류, 미생물의 종을 수집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4. 국립 식물원 및 국립 채종림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a) 묘목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b) 관할 국가기관이 채택한 업무 구축을 위한 지상 허가 범위 내에서 수목, 목재 및 산림 식물과 죽은 나무 및 부러진 나무의 2차 채굴, 산림에 대한 그룹 조정, 산림 육성 및 기타 생물학적 산림관리법 적용 과정에서 수목, 목재, 비목재 산림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5. 보존림에서 임산물의 사용은 여기에 명시된 조항과 산림 관리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 제53조 보존림에서의 과학적 연구, 교육, 실천활동,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
1. 보존림에서의 과학적 연구, 교육, 관례행사,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 활동은 산림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존림 내 특별한 위보호구역에서의 환대 및 오락 활동은 금지된다.
 2. 산림 소유자는 관할 국가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보존림에서의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 사업 계획을 구상한다.
 3.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 활동에 투자한 기업은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에 관한 사업과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을 수립한다.
 4. 산림 소유자는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환경경관 및 기타 산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보존림에서의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 교역을 위하여 산림환경을 조직, 협력, 연계 또는 임대한다.
 5. 보존림에서의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에 대한 사업을 개발, 평가 및 승인하고, 이를 위한 업무 구축 관리를 위한 절차는 산림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4조 보존림과 보존림 내 완충 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

1.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보존림으로의 이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보존림경영단위는 산림보호 및 개발을 지역가구,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맡긴다. 특정 조건에 따라, 보존림경영단위는 관할 국가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는 이주 또는 이전 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3. 생태계 복구 하위구역을 가지는 보존림경영단위는 산림 보호 및 개발에 있어 지역가구, 개인 또는 지역사회와 배정, 협력 또는 연계한다.
4. 보존림에서 대체되는 가구, 개인 또는 사회의 주거지 또는 생산지가 보존림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할 주 당국이 채택한 토지 이용 계획과 산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 따라 가구,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계속 사용할 수 자격을 갖는다.
5. 보존림경영단위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업, 완충지대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보존림 내 대체 주거지 또는 생산지를 위한 관리 계

획 검토 및 수립에 있어 지역 당국과 협력하고, 승인을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이를 송부한다.

6. 완충지대에서 운영되는 지방단체, 가구, 개인, 지역사회 또는 단체들은 완충지대 프로그램 또는 사업 관리에 있어 감독, 시행 및 협력할 수 있다.
7. 보존림 및 보존림 완충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화는 산림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절 보호림 사용

제55조 보호림 내 임산물 사용

1. 천연보호림은 숲 밀도가 규정된 밀도보다 높은 곳에서 있는 죽은 목재, 부서진 나무, 병든 나무 또는 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
2. 천연보호림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목재 임산물을 사용한다.
 - a) 보호 요구 사항이 충족될 경우 보호림 내 대나무, 죽순, 균류를 사용한다.
 - b) 산림보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목재 임산물을 사용한다.
3. 식재된 보호림의 경우:
 - a) 식재된 나무가 규정된 밀도보다 높은 밀도를 가진 경우 지주목을 사용하거나, 전지 또는 가지치기할 수 있다.
 - b) 지정된 산림 구획 또는 산림 지역에서 택벌 또는 개별 수확 방식으로 사용기준에 도달했을 때 선목을 사용할 수 있다.
 - c) 산림 소유자는 사용 후 다음 계절에 숲을 재생 또는 이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4. 보존림에서 임산물의 사용은 여기에 명시된 조항과 산림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6조 보호 산림에서의 과학 연구, 훈련, 연습 활동, 생태 관광, 서비스 그리고 오락

1. 보호 산림에서의 과학 연구, 훈련과 연습 활동은 산림 관리 규정과 다른 적절한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산림 소유자들은 보호 산림에서의 생태 관광, 서비스 또는 오락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해야 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적절한 주 당국에 보내

야 한다.

3. 생태 산림, 서비스 또는 오락 활동에 투자한 단체들은 적절한 법과 생태 산림, 서비스 또는 오락에 대한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구성한다.
4. 자연 생태 체계, 생물 다양성, 환경 조경 또는 다른 산림의 기능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산림 소유주들은 생태 산림, 산림 서비스 또는 오락을 공유하기 위하여 단체들에게 산림 환경을 구성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거나 임대한다.
5. 생태 산림, 서비스 또는 오락에 관한 사업과 보호 산림에서의 생태 산림, 서비스 또는 오락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 작업에 사용되는 산림부지를 개발하고, 평가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산림 관리 규정과 다른 관련 법에 대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제57조 보호 산림에서의 통합된 산림-농산-수산 생산물

1. 농식물과 비목재 목제품을 번갈아 가며 심는 것은 허용된다: 산림 보호 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임관 아래에서 수생식물을 기르고 심는다.
2. 산림 보호 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통합적인 농목제품을 위하여 비산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보호 산림에서의 통합된 임업-농업-수산업 생산은 산림 관리 규정과 다른 관련 법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3장. 생산림의 이용

제58조 천연 생산림에서의 임산물 이용

1. 천연 생산림에서의 임산물 이용을 위한 요구사항:
2. 천연 생산림에서 임산물의 이용은 아래 언급된 조항과 산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9조

1. 산림 소유주들은 그들의 조림지 이용을 결정해야 한다.
2.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조림지 경우, 소유주들은 결정된 투자 승인을 위

해 당국에 임산물 이용을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생산용 조림지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이용은 아래의 조항과 산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0조 보호림 통합된 산림-농림-수산 생산물, 과학적 연구, 훈련, 연습 활동, 생태 관광사업, 서비스와 오락

1. 농식물과 비목제품을 번갈아 가며 심는 것이 허용된다: 산림 보호 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 임관 아래에서 수생 식물을 기르고 심는다.
2. 토지의 황폐화, 오염 또는 전용되지 않는 조건 하 통합된 농림-목제품을 위해 비산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생태 관광, 서비스와 오락은 과학적 연구, 훈련과 연습활동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4. 특정 단체에 산림 또는 산림 환경을 조직, 협력, 협동 사업, 연합 또는 임대하는 것은 산림 소유주들의 생태 관광, 서비스 또는 오락 사업에 대한 권리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생태관광, 서비스 또는 오락 제공은 허가가 필요하다.
6. 본 조항에서 언급된 활동은 산림 관리 규정과 다른 해당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4장. 산림 환경 서비스

제61조 산림 환경 서비스

1. 토지 보호, 호수바닥, 강 바닥과 개울 바닥의 침식과 퇴적 제한.
2. 산림의 탄소 흡수와 저장, 산림 손실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와 녹색 성장
3. 천연 조경미의 보호 및 유지,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보존
4. 산란지, 먹이 자원, 천연 번식 동식물, 산림으로부터의 수자원과 환경 요소들 그리고 수경 재배를 위한 산림 생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제62조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1. 3절 2조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산림 환경 서비스가 제공되며 61조에 언급된 산림 환경 서비스 중 하나 또는 몇몇이 제공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산림 환경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산림 환경 안정 서비스에 대한 청구비는 직·간접적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4.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이용자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요 비용으로 추가될 것이다.
5. 산림 환경 서비스는 공공성, 민주주의, 객관성과 평등을 분명히 할 것이다. 베트남법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협약을 준수.

제63조 공급자, 이용자, 지불 방법에 대한 옵션과 산림 환경 서비스의 관리

1. 산림 소유주:

- a) 국가가 설립한 기관의 산림 소유주와 협약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고용된 기관들, 가족단위, 개인 및 지역 공동체
- b) 국가가 산림 관리를 위해 할당한 공동체의 인민위원회와 기타 기관들

2.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다:

- a) 토지보호, 호수 바닥/ 강바닥/ 개울 바닥의 침식 또는 퇴적 제한, 수력발전 기반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수자원의 규제와 유지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수력전기 공급자들
- b)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해 수자원을 규제와 유지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깨끗한 물 공급자들
- c) 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수자원을 규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산업 생산자
- dd)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데 대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양 온실 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생산자들과 거래자들
- e) 양식장, 식량 공급원, 자연 육종, 수자원, 환경 요소 및 양식을 위한 산림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수산물 생산 업체
- g) 법의 규정에 명시된 기타 지불자들

3.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법의 옵션들:

- a)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공급자들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 b)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공급자들에게 산림 보호와 개발 기금으로 송금함으로써 지불해야 한다.
 - c) 국가는 산림 환경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정부가 규정한 금액에 기초하여 합의에 도달 시 모든 경우에 직접 지불을 장려한다.
4.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의 관리와 사용:
- a) 산림 환경 서비스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익을 결정한다.
 - b) 산림 환경 서비스의 지불 금액을 확인한다.
 - c) 산림 환경 서비스의 공급자를 확인한다.
 - d) 산림 환경 서비스의 지불 방법에 대한 선택사항을 확인한다.
 - dd)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익과 지불 계획을 수립한다.
 - e)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를 정한다.
 - f)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 g) 산림 환경 서비스 비용의 관리와 사용을 조사하고 감독한다.
5. 정부는 공급자와 이용자, 지불 방법의 선택사항,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액, 지불 금액의 조정과 면제를 명시해야한다. 산림 환경 서비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제64조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권리와 의무

1.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a) 산림 환경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림 지역에서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실행과 결과 알림을 받는다. 산림 환경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의 구역, 질 그리고 상태에 대한 알림
 - b) 공급자에게 송금된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으로부터 산림 환경 서비스를 위한 지불의 결과 통보를 받는다.
 - c) 산림 환경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림 구역 내에서 계획 잡는 과정에 참여하고, 실행을 구성하고, 산림 보호와 개발 결과의 검사, 감독과 의뢰를 실시한다.
 - d) 만약 공급자가 합의된 산림 구역을 확실히 하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이미 지불한 산림의 품질 또는 상태를 낮추었을 경우, 해당 당국에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합의를 결론 짓고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을 송금된 산림 환경 서비스의 지불가능한 금액을 신고한다.
- b) 직접 지불의 경우, 산림 소유주에게 합의서에 따른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을 제 시간에 한다. 또는 간접 지불의 경우에는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으로 송금한다.

제65조 산림 환경 서비스의 공급자들의 권리와 의무

1. 산림 환경 서비스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a) 여기 3절63조에 언급된 산림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요청한다.
- b) 산림 환경 서비스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 c) 계획 개발과 금액 지불에 관한 문서 준비에 참여하고, 국가 당국과 산림 보호와 개발 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불 절차를 조사한다.

2. 산림 환경 서비스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공급자는 산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해 채택된 산림의 각 유형별로 계획과 관리계획에 의해 보호되고 개발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 b) 기관/가정/개인/공동체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고용된 공급자들은 산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지역이 산림 소유주와 합의한 사항대로 보호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
- c) 국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공급자들은 법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수령한 금액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7장 임산물 가공 및 거래

제1절 임산물 가공

제66조 임산물 가공의 개발에 대한 정책

1. 임산물 가공의 개발에 대한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생산, 산림의 지속적 관리, 생산품 소비, 최신 과학 기술의 적용 및 녹색 성장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부가 가치 증대를 위하여 산림 소유주들과의

- 협력, 합작투자 또는 연대를 통한 기업에 대한 지원
- b) 임산물 가공에서 산업 개발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시하는 것
 - c) 임산물 가공에 대한 인력 훈련 지원
2. 1절에서 언급된 임산물 가공의 개발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이 조항에서는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며 수행될 것이다.

제67조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 가공

1.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 가공자들은 이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투자, 기획, 환경 보호, 식물과 동물의 보호와 격리, 상품의 질, 식품 안전과 CITES 규정에 대한 준수에 대한 법의 규제.
2. CITES 별첨부록에서 제공된 산림 식물과 동물의 멸종 위기에 처한/희귀/야생 종의 표본 가공은 다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표본은 법적으로 묘목장이나 농장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
 - b) 표본은 법적으로 자연적인 사용 목적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
 - c) 표본은 법의 규제하에 몰수되어야 한다.
3. 다른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 가공은 법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제68조 목제품 가공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1. 임산물의 가공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 a) 국가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임산물을 생산한다.
2. 임산물의 가공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투자, 기획, 환경 보호, 노동, 재정에 대한 법 규정을 준수한다. 임산물에 대한 법적 문서에 대한 규정과 임산물의 원산지를 조사한다.
 - b) 여기 67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을 가공한다.
 - c) 가공절차가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해 실시되는 관리와 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제69조 천연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

1. 국가는 국가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사용, 운송, 소비, 가공 및 수출하는 기업의 분류를 위한 기

준, 권한, 절차를 만든다.

2.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2절 임산물에 대한 거래

제70조 임산물 시장의 개발에 대한 정책

1. 임산물 가공의 개발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어야 한다:

- a) 단체 협력, 연합, 목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소비는 신용 장려금을 제공 받는다.
- b) 국가는 브랜드 개발을 돕고, 거래를 장려하고, 시장을 개발하고 국내와 국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제1조에 언급된 임산물 시장의 개발에 대한 정책은 정부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1조 목제품 거래자들의 권리와 규제

1. 임산물의 거래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국가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임산물에 대한 거래
- b)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법적인 권리와 이윤을 가진다. 경영 분야의 지원 받는다. 여기 70조에 언급된 정책과 교외 지역 중, 특히 외곽지역에서의 투자와 기획에 대한 규정을 시행한다.

2. 임산물의 거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투자, 기획, 환경 보호, 노동, 재정에 관한 법의 규제를 따른다. 임산물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과 임산물의 원산지를 조사한다.
- b) 사업 절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관리와 조사를 용이하게 한다.

제72조 임산물의 거래 관리와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에 대한 거래

1. 임산물의 거래 관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각 기간별 시장 예측과 임산물 가공의 개발 교육
- b) 거래에 대한 국제 협약을 협상하는 것, 임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장하는 것, 법률상의 목재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의 상호 인정

-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적합한 수출/수입 임산물
의 허가증 발행
 - d) 수출, 수입, 임시 수입, 임시 수출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 운반은 베트남 법과 CITES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dd) 국내 임산물 거래는 임산물에 관한 법률서류 및 그 원산지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e)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2.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에 대한 거래:
- a) CITES 별첨부록에 있는 산림 식물과 동물 중 멸종 위기에 처한/희귀한/
야생의 종의 표본을 거래하는 것은 사용, 이식, 가공과 소비를 위한 양육
에 대한 원산지와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 b) 이 절, a항목에서 언급된 종의 표본은 특성과 각 표본의 범주에 따라서
법적인 원산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리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
어야 한다.
 - c) 농촌개발부 장관은 원산지를 명시하고 이 절의 항목 a와 b에서 언급된
종의 표본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절차와 문서를 명시해야 한다.

제8장 산림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산림 소유주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제73조 산림 소유주의 일반 권리

1.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해 인정되는 산림 사용 권리 또는 조립된 생산림 소유
권을 가진다.
2. 천연/조립된 보존림 또는 자신이 투자한 보호림으로부터의 목제품의 증가
를 누린다.
3. 여기에 언급된 규제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산림 할당/임대 기간과 산
림지 할당/임대 기간 동안 산림을 사용한다.
4. 산림 환경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서 생긴 혜택을 즐긴다.
5.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산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술에 대
한 안내와 다른 도움을 받는다. 국가에 의해 투자되는 산림 보호와 개발을

위한 공사 작업으로부터 야기된 혜택을 누린다.

6. 산림청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산림청산에 투자하거나 법적으로 개발하는 산림가치나 자산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보상을 받는다.
7. 만약 자신의 생산림이 자연재해로부터 손상을 입는다면 국가에 의해 제공 되는 투자를 받는다.
8.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해서 국내, 해외 기관들 모두와 개인들과 협동 및 연합한다.
9. 다른 타당한 권리와 이윤을 가진다.

제74조 산림 소유주의 일반적 의무들

산림 소유주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산림 관리 규정, 여기에 언급된 규제와 다른 적절한 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며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호, 개발 및 사용한다.
2. 산림 개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3. 여기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불법 사용한 산림을 반환한다.
4. 산림 생물 다양성, 산림 식물과 동물을 보존한다.
5. 산림 화재 안전을 확고히 한다: 산림 해충을 방지하고 제거한다.
6. 위반을 제재하기 위해서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의해 이행되는 관리, 검사 또는 조치를 용이하게 한다.
7. 재정적인 의무와 다른 의무들을 이행한다.

제2절 보존/보호림 관리 단체의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제75조 보존림 관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1. 보존림 관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권리는 여기 73조에서 언급된다.
 - b) 여기 94조에서 언급된 보존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투자 정책을 누린다.
 - c) 52조에 언급된 보존림, 58조에 언급된 천연 생산림,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에서 나온 임산물을 이용한다.
 - d) 산림 환경을 임대한다. 담당 국가 당국에 의해 채택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 따라서 엄격하게 보호되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예비 산림의 생

태 관광, 서비스 또는 오락 분야에서의 거래에 대해 협동하거나 연합한다.
dd) 과학과 기술에 연관된 활동을 수행하고, 훈련, 연습 활동과 국제 협력을 제공한다.

2. 보존림 관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 a) 의무는 여기 74조에 언급된다.
- b) 승인을 위해서 해당 국가 당국에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준비 및 제출하고 승인된 계획을 실행한다.
- c) 여기 54조에 언급된 사람들의 생활 개선과 사회-경제 개발 면에서 완충 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돕는다.
- d) 정부 규제에 따라서 협약을 통해 지역 가정, 개인들 또는 공동체에 산림 보호와 개발업무를 할당한다.

제76조 보호림 관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1. 보호림 관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73조에 언급된 권리와 여기 dd항목 1절 75조에 언급된 권리이다.
- b) 산림 환경을 임대한다. 담당 국가 당국에 의해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 따라서 생태 관광, 서비스 및 오락을 거래하는데 협력하고 연합한다.
- c) 여기 94조에 언급된 보호/보존림의 보호와 개발에 관한 투자 정책을 누린다.
- d) 52조에 언급된 조경 보호 구역, 55조에 언급된 보호림, 58조에 언급된 천연 생산림 또는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립된 생산림인 보존림으로부터 나온 임산물을 사용한다.

2. 보호림 관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여기 74조에 언급된 의무는 다음과 같다.
- b) 승인을 위해서 해당 국가 당국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준비 및 제출하고 승인된 계획을 실행한다.
- c) 정부 규제에 따라서 협약을 통해 지역 가정들, 개인 또는 공동체에 산림 보호와 관리 업무를 할당한다.

제3절 기업인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제77조 국가가 분배한 국립 채종림과 할당된 산림 구역을 번갈아 설정하는 기업 단체의 권리와 의무

1. 정부가 국가 용재림과 할당된 산림 구역을 번갈아 설정하는 기업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권리는 여기 73조에 언급된다.
 - b) 해당국가 당국에 의해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서 용재림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를 받는다.
 - c) 여기 52조에서 언급된 국립 채종림에서 나온 임산물을 사용한다.
 - d) 이윤을 얻기 위해 제품을 팔고 재정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이윤을 사용한다.
2. 정부가 국립 채종림과 할당된 산림 구역을 번갈아 설정하는 기업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여기 74조에 의무가 언급된다.
 - b)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해 채택된 용재림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제78조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인 보호림 또는 보존림을 할당한 기업 단체의 권리와 의무

1.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인 보호림 또는 보존림을 할당한 기업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에 다음과 같이 권리가 언급된다.
 - b) 여기 94조에 언급된 보호/보존림의 보호와 개발에 관한 투자 정책을 영유한다.
 - c) 52조에 언급된 조경 보호림이나 55조에 언급된 보호림인 보존림에서 얻은 임산물을 이용한다.
 - d) 산림 환경을 임대한다. 생태 관광, 서비스 또는 오락에 대한 투자를 협동하고 연합한다.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해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에 따라서 산림-농림-수산 생산물을 통합했다.
2.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인 보호림 또는 보존림을 할당한 기업 단체는 다음

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a) 여기 74조에 의무가 언급된다.
- b)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국가 당국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제출하고 승인된 계획을 실행한다.
- c) 정부의 규제에 따라 협약을 통해서 지역 가정들, 개인들 또는 공동체들에게 산림 보호와 개발 업무를 할당한다.

제79조 정부에 의해 임대된 생산림을 소유한 기업단체의 권리와 의무

1. 정부에 의해 임대된 생산림을 소유한 기업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에 권리가 언급되어 있다.
 - b) 산림 임대 협약을 준수하며 산림으로부터 야기된 이윤을 영유한다.
 - c) 산림에 있는 식물, 가축과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 d) 58조에 언급했던 천연 생산림 또는 59조에 언급된 조립된 생산림으로부터 얻은 목제품을 이용한다.
2. 정부에 의해 임대된 생산림을 소유한 기업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a) 여기 74조에 의무가 언급되어 있다.
 - b) 승인을 위하여 해당 정부 당국에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실시한다.

제80조 정부에 의해서 산림지가 할당되거나 임대된 산림을 소유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1. 정부 예산으로 보호림을 만들도록 정부가 배분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와 74조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 b) 자본원을 바탕으로 당국이 승인하고 구성한 견적에 따라서 산림녹화를 한다.
 - c) 여기 55조에 언급된 보호림으로부터 얻은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야기된 이윤을 영유한다.
2. 정부의 투자에 의해서 보호림을 만들도록 정부가 할당한 토지를 가진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와 74조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 b) 보호 산림지에 있는 대체 식물, 가축 그리고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 c) 여기 55조에 언급된 보호림으로부터 나온 임산물을 이용한다.
3. 정부의 투자로 보호림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한 땅을 가진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와 74조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 b) 산림지에서 나온 식물, 가축 그리고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 c)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립된 생산림으로부터 얻은 임산물을 사용한다.
 - d) 조립된 생산림의 소유권을 넘기거나 임대한다. 산림을 담보물로 내놓거나 조립된 생산림의 가치에 따라 자본을 출자한다.

제4절 가족단위, 개인 또는 지역사회인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제81조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1.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a) 여기 73조에 권리가 언급되어 있다.
 - b) 산림 보호와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를 받는다.
 - c) 여기 55조에 언급된 보호림에서 나온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나온 이득을 영유한다.
 - d) 같은 공동체/부족집단/마을 안에서 다른 가족단위나 개인에게 배당된 산림 구역을 이전한다. 또는 산림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상속인에게 산림 사용 권리를 이전한다.
2.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은 여기 73조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82조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1.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에 권리가 언급되어 있다.
 - b) 여기 58조에 언급된 천연 생산림으로부터 얻은 임산물을 이용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영유한다.
 - c)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으로부터 얻은 임산물을 이용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영유한다. 가족단위/개인이 투자한 조림된 산림에 있는 식물, 가축 그리고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 d) 같은 공동체/부족집단/마을에서 다른 가족단위나 개인에게 할당된 산림을 이전한다. 또는 만약 산림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상속인에게 산림 이용 권한을 이전한다.
2. 정부가 할당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은 여기 74조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83조 정부가 임대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1. 정부가 임대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권리가 여기 73조에 언급되어 있다.
 - b) 산림 임대 협약에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영유한다. 가족단위/개인이 투자한 조림된 산림에 있는 식물, 가축 그리고 다른 자산들을 소유한다.
 - c) 58조에 있는 천연 생산림 또는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에서 나온 임산물을 사용한다.
 - d) 만약 산림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상속인에게 산림 사용 권한을 이전한다.
2. 정부가 임대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은 여기 74조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84조 생산림과 보호림을 만들도록 정부가 토지를 할당한 가족단위와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1. 산림과 보호림을 만들도록 정부가 토지를 할당한 가족단위와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권리가 여기 73조에 언급되어 있다.
 - b) 가족단위/개인이 투자한 생산 산림지에 있는 식물, 가축 그리고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 c) 가정단위/개인이 투자한 보호 산림지에서 대체 식물, 가축 그리고 자산을 소유한다.
 - d) 55조에 언급된 보호림이나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으로부터 나온 임산물을 이용한다.
 - dd) 만약 정부 예산으로부터 산림 조림을 투자받는다면 산림으로부터 나온 이윤을 영유한다.
 - e) 조림된 생산림을 이전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한다. 산림을 담보물로 내놓거나 조림된 생산림의 가치에 따라 자본을 출자한다.
 - g) 만약 산림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조림된 생산림 소유권 또는 산림 이용 권한을 상속자에게 이전한다.
2. 생산/보호림을 조림하도록 국가가 할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와 개인은 여기 74조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85조 생산림을 조림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를 임대한 가족단위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생산림을 위해서 정부가 토지를 임대한 가족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권리는 여기 73조에 언급된다.
 - b) 산림지에 있는 식물, 가축 또는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으로부터 얻은 임산물을 사용한다.
 - c) 조림된 생산림을 이전, 증여 또는 임대한다. 산림을 담보물로 내놓거나 토지 임대 기간 동안 조림된 생산림의 가치에 따라 자본을 출자한다. 만약 산림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산림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생산림을 조림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를 임대한 가족단위와 개인은 여기 74조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86조 정부에 의해 할당된 신앙림, 보호림 또는 생산림을 소유한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

1.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에 권리가 언급되어 있다.
 - b) 보존/보호림 보호와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를 받는다.
 - c) 통합된 농업-임업-수산업 생산, 임관 아래서의 경작 또는 산림 관리 규정에 따라 소를 방목하는 것에 관한 지시사항을 받는다. 자생수종을 심는 것으로 산림 경제 개발 또는 산림 복구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
 - d) 52조에 언급된 신앙림, 55조에 언급된 보호림, 58조에 언급된 천연 생산림 또는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은 보존림에서 나온 목제품을 사용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야기된 이득을 얻는다. 지역사회가 투자한 산림지에 있는 식물, 가축 또는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2.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의무는 여기 74조에 언급되어 있다.
 - b)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규칙을 여기에 명시된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완료 및 준수한다.
 - c) 할당된 산림지를 유지한다.
 - d)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산림을 나누어주지 않는다.
 - dd) 산림 사용 권한을 이전, 증여 또는 임대하지 않는다. 산림을 담보물로 내놓거나 산림 사용 권한의 가치로 자본을 출자한다.

제5절 산림 소유주인 군 당국의 권리와 의무, 과학 기술원, 직업 교육과 연수원, 외국인투자기업

제87조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 보호림 또는 생산림인 보존림을 할당한 무장이 허가된 조직의 권리와 의무

1. 무장이 허가된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권리는 여기 73조에 언급되어 있다.
 - b) 정부가 제공한 보존림/보호림 보호와 개발을 위해 투자받는다.
 - c) 52조에 언급된 조경 보호 구역, 55조에 언급된 보호림, 58조에 언급된 천연 생산림이거나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인 보존림에서 나온 임산물을 이용한다.

2. 무장이 허가된 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여기 74조에 의무가 언급되어 있다.
- b) 할당된 산림지를 유지한다.
- c) 산림 사용 권한을 이전, 증여 또는 임대하지 않는다. 산림을 담보물로 내놓거나 산림 사용 권한의 가치로 자본을 출자한다.

제88조 정부가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할당한 산림에 있는 과학 기술원, 직업 교육과 연수원의 권리와 의무, 국립 식물원, 국립 채종림

1. 산림에 있는 과학 기술원 또는 직업 교육과 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여기 73조에 권리가 언급되어 있다.
- b)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산림에서 나온 목제품을 이용한다. 국립 식물원, 여기 언급된 국립 채종림
- c) 과학과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내와 국외 기관들 모두와 개인들과 협력하고 연합한다.
- d) 산림 관리 규정에 따라서 조림된 산림, 묘목들과 다른 임산물들을 판다.

2. 산림에 있는 과학 기술원이나 직업교육과 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의무는 여기 74조에 언급된 바이다.
- b) 산림 사용 권한을 이전, 증여 또는 임대하지 않는다. 산림을 담보물로 내놓거나 산림 사용 권한의 가치에 따라서 자본을 출자한다.
- c) 과학 기술 업무를 이행한다. 산림에서 직업 교육과 연수를 제공한다.

제89조 생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권리는 여기 73조에 언급된 바와 같다.
- b) 기업이 투자한 임대받은 땅에 있는 식물, 가축 그리고 다른 자산을 소유한다.
- c) 여기 59조에 언급된 조림된 생산림으로부터 얻은 임산물을 사용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은 여기 74조에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9장 입학에서의 산림 가치평가, 투자와 재정 자원

제1절 산림 가치평가

제90조 산림 가치평가

1. 산림 가치평가는 산림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연관된 활동을 포함한다.
2. 산림평가를 위한 규정:
 - a) 산림평가는 가치평가를 하는 그 시기에 시장에서 제공되는 목제품의 가치와 산림 환경 서비스의 가치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 b) 산림평가는 산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하고 산림 사용 권리, 수익성과 산림으로부터 얻은 이윤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 c) 산림평가는 공공성, 투명성과 논리를 분명히 할 것이다.
3. 농림부 장관은 산림평가의 수단을 명시할 것이다. 공공 생산림, 보호림과 예비림의 가격대
4. 지역 인민 위원회는 그들 지역의 산림 가격대를 결정할 것이다.

제91조 산림이 평가된 경우

1. 정부가 산림을 할당하고, 산림 사용 권한의 경매 또는 산림 임대를 구성한다. 산림 환경 서비스를 위해서 가격을 지불할 때 산림 가치를 측정한다.
2. 정부가 산림을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지분의 가치를 결정한다. 정부 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 주식매각의 분배를 한다.
3. 산림을 손상시키는 위반이 있을 시 보상이 결정된다. 자연재해, 산물 또는 다른 산림 손상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손상, 산림에 관한 분쟁의 산림에 기여하는 가치가 확인된다.
4. 산림에 관한 세금, 수수료와 청구금이 결정된다.
5. 해당 정부 당국의 요청에 의한 다른 경우들.

제2절 입학에서의 투자와 재정 지원

제92조 입학에서의 재정 지원

임업에서의 재정 지원은 다음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1. 정부 예산.
2. 국내와 국외 단체로부터의 투자, 기부, 지원 또는 후원.
3. 목제품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 임대용 산림 또는 산림지.
4. 산림이 용도 변경 되었을 때 대체 조림을 위한 지불금으로부터 얻은 수익.
5. 산림 환경 서비스의 공급과 임대로부터 얻은 수익.
6. 국내와 국외 신용회사로부터 받은 신용 자본.
7. 법의 조항에 명시된 다른 재정 자원.

제93조 정부 지원이 적용되는 임업 관련 활동

1. 임업 관리와 개발 그리고 정부 예산의 수용성을 위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정부는 정부 예산이 적용되는 활동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임업을 위해서 제공되는 정부 예산의 준비, 시행, 감사, 협의와 감독은 정부 예산법의 규정을 따라야한다.

제94조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한 투자 정책

1. 정부는 다음에 대한 투자 정책을 시행한다:
 - a) 예비/보호림 보호와 개발
 - b) 위험에 처한/치귀 산림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
 - c) 과학 연구 결과의 조사와 적용, 기술 개발과 임학에 대한 정부 관리를 위해 책임있는 직원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는 것
 - d) 연구 개발 지역과 최신 기술 지역
 - dd) 산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과 장비들, 산물의 위험을 감시하고 경고하는 것, 산물 안전 작업의 개발, 산림 병충해의 예방과 제거
 - e) 예비/보호 산림 보호와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의 공사, 향상과 개조
2. 정부는 다음에 대한 투자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a) 최신 기절의 이전, 임학 장려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자격증 발급
 - b) 가치 체인 아래서 생산림의 개발과 거래에 대한 투자와 연계된 기반시설 개발
 - c) 산림 보호와 민족 소수 그룹의 개발 그리고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와

연계된 공동체들과 새로운 교외 지역 개발

- d) 산림 소유주들의 인사과를 위한 연수와 단기 재교육의 규정
- dd) 투자 장려, 시장 개발과 산림과 관계된 활동의 거래, 임업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

3. 정부는 투자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a) 빈 토지 또는 산에 생산림을 개발하는 것
- b) 큰 나무 조림과 작은 나무 심는 것을 큰 나무로 전화하는 것, 비목재 목제품 개발
- c) 천연 산림 재건
- d) 산림 식물의 최신 기술 다양성 개발

4.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할 것이다.

제95조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

1.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은 공공 서비스 공급자의 형태로 조직되고 운영하며 해당 정부 당국에 의해 설립되는 비국가 예산 자금이다.

2.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의 운영 규칙:

- a) 비영리 운영
- b)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정부 예산이 투자되지 않은 또는 투자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해서만 관계된 사업 또는 비영리 활동
- c) 공공성,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실히 하는 것, 적절한 목적을 위한 자금의 관리와 사용 그리고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3.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조직될 것이다:

- a) 베트남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은 농림부 장관에 의해서 정해진다.
- b) 지방의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은 지방 인민 위원회에 의해서 설립될 것이다.

4.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을 위한 재정 자원은 다음에서 파생된다:

- a) 후원, 자원 기부, 국내와 해외 단체의 허가받은 자본
- b) 산림 환경 서비스 청구금에 대한 지불금액
- c) 산림이 목적 변경될 때 대체 조림으로부터 얻은 이윤
- d) 다른 법적 비정부 예산 재정 자원

- 매년, 농림부 장관은 수상에게 관리와 베트남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을 대해 보고해야 한다. 지역 인민 위원회는 농림부 장관에게 그들 지역의 관리와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 정부는 업무, 기관 구조, 재정 자원, 관리를 위한 매커니즘 그리고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의 재정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제10장 과학과 기술 그리고 임학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제96조 임학에 대한 과학과 기술

- 최고이자 최신 기술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용될 것이다:
 - 조사, 현상파악과 산림 개발의 감시
 - 산불 안전, 산림 병충해의 예방과 제거
 - 나무의 선정, 이식 또는 번식 그리고 비목재 목제품
 - 큰 목재, 토착 나무 식수, 다양한 종 조림을 위한 집약적인 산림 식수, 식수, 육성 그리고 산림 사용에 대한 절차의 현대화
 - 산림 재건과 질 낮은 천연 산림의 개선
 - 사용, 이동, 가공과 목제품의 저장
 - 목제품 가공에 대한 산업 지원
- 산림 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산림 환경 서비스의 가치.
- 산림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해결책과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에 관한 연구.
- 가치 체인에 따른 임업 생산물의 모델 개혁과 적합한 산림 관리에 연계된 연구, 지속적으로 통합된 임업-농업-수산업 모델.
- 임학 기술과 연구 결과를 임업 생산, 관리 거래에 이전하는 것.
- 임학에 대한 국가 기준과 기술 규정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

제97조 임학에 대한 과학과 기술 정책

- 정부는 산림의 성장과 개발 순환과 임학에 대한 과학 기술 발전의 적용에 따라서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한 매커니즘과 정책을 제공할 것이다.

2. 정부는 a, b, c 그리고 dd항목, 1, 2, 3절과 여기 6조와 96조에 언급된 과학 기술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다.
3. 정부는 d, e와 g항목, 1절, 4절 그리고 5절, 여기 96조에 언급된 과학과 기술 활동의 실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할 것이다.

제98조 입학에 대한 국제 협력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동등성, 상호 이윤, 독립성에 대한 존중, 자주권과 각 당의 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국가, 영토와 국제 조직과 입학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2. 농림부 장관은 입학에 대한 국제 협의의 결과를 제시하며 해당 수상과 장관의 권한을 바탕으로 임무를 이행하고 협력할 것이다. CITES, 전투 사막화(UNCCD)에 대한연합 국가 협회와 입학에 연계된 다른 국제 협의의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중점 포인트와 국가 대표로서 활동한다.

제99조 입학에 대한 국제 협력 정책

1. 지속 가능한 산림 개발 목적, 환경 안전 위원회,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와 다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협약의 목적을 도울 국가, 영토, 해외 기관과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
2. 국내 기관들과 개인들은 산림 보호와 개발, 목제품 가공과 무역, 베트남 법과 국제법 규정을 준수하며 입학에 대한 정부 관리의 능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국제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
3. 해외 기관들, 개인 그리고 베트남 교포들은 베트남에서의 인사 연수의 규정, 과학 연수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한 기술 이전, 자연 보존, 목제품 가공과 무역에 대해 도움받을 것이다. 해외협력 자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4. 산불, 연기, 목재와 야생 나무 견본과 동물 종과 자연 보존의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장려된다.
5. 정부는 상세한 요구조건에 따라서 입학에 대한 국제 협력 정책을 공포할 것이다.

제11장 입학과 산림 권리원에 대한 정부 관리

제1절 입학에 대한 정부 관리

제100조 입학 관리의 정부 관리 시스템을 조직하기 위한 규칙

1. 입학에 대한 정부 관리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입학에 대한 정부 관리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맞춰질 것이다.
2. 산림 관리 당국은 중앙부와 지방부로 구성이 될 것이다. 구역에서 산림 관리 업무는 정부 규정에 따라서 조직될 것이다.
3. 임부와 권력은 분명하게 배정되며 관리 기능과 겹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

제101조 정부, 부처와 부처 기관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업무

1. 정부는 나라 전체에 국가 산림 관리의 지속성을 확실히 할 것이다.
2. 농림부 장관은 국가 산림 관리에 대해 정부를 돕는 주요 인사로 활동 할 것이다.
 - a) 그들의 권력 내에서 안건을 내거나 임업에 대해서 전략, 계획구성, 계획, 정책 또는 법률적 문서를 발행하거나 실행하도록 해당 국가 부서에 요청한다.
 - b) 국자 기준을 개발하고 임업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또는 경제-기술 기준을 발행한다.
 - c) 산림 관리 규정, 관리 정책과 위기에 처한/희귀 산림 동식물 보호 실시를 감독, 지시 그리고 조사한다.
 - d) 국무총리에게 국가 또는 국가 간 중요성이 있는 보호림 또는 보호림 설치를 요청한다.
 - e) 산림 관리원의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 f) 산림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 부처와 부처 기관들과 책임을 맡고 협력한다. 산림 생태 시스템과 생물 다양성의 보호
 - g) 산림 조사와 현상파악을 지시하고 조사하고, 산림 개발을 추적하고 산림 관리에 대한 문서를 준비한다. 산림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관리한다.
 - h) 산불 안전을 확실히 한다. 산림 병충해를 방지하고 제거한다.

- i) 국립 묘목장과 국립 식물원의 시스템을 개발한다.
 - k) 산림 환경 서비스 청구금에 대한 지불을 관리한다.
 - l) 적합한 산림 관리와 산림평가에 대한 자격증 발행을 관리한다.
 - m) 목제품 가공을 관리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한다.
 - n) 과학 연구를 실시하고 최고, 최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임업에 적용시킨다. 산림 인재를 위한 연수와 단기코스를 제공한다.
 - o)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임업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임업에 대한 법을 전파하고 교육한다.
 - p) 임업에 대한 국제 협력의 주요 포인트로 활동한다.
 - q)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을 조치하고 임업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3. 국방부, 공안부, 환경 자원부, 부처와 부처 부서들은 농림부와 협력하여 그들의 권한에 따라서 임업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제102조 인민 위원회의 임업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업무

1. 지역 인민 위원회의 책임 업무:

- a) 그들의 권한을 발행하거나 해당 정부 당국에 임업에 대한 법률 문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개발 프로그램이나 그들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b) 그들 지역에서 임업과 임업 관리 전략 국가 임업 계획구성, 임업 개발 프로그램/사업, 계획에 대한 법률 문서를 실행한다.
- c) 산림을 분류하고 그들 해당 업무에 내에서 산림의 유형을 표시한다.
- d) 기관의 산림을 배정, 임대, 목적 변경 또는 책정한다.
- e)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 현상 파악을 하고 산림 개발을 조사한다.
- f) 산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고 산림 관리에 대한 문서를 준비한다.
- g)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산불 안전, 산림 병충해를 예방하고 제거한다. 산림을 개발하고 이용한다. 시장에서의 목제품 가공
- h) 그들 지역에서 산림 가격대를 결정한다.
- i) 연구를 실시하고 그들 지역에서 임업에 대한 발전관 과학 기술을 적용한다.
- k) 그들 지역에서 임업에 대한 법을 전파하고 교육한다.

- l) 그들 해당 업무에 따라 산불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그들 지역에서 영향력, 자료, 이동수단 그리고 기관 장비, 가정 그리고 개인들을 동원한다.
 - m)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에 대처한다. 임업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2. 구역의 인민 위원회의 책임업무:
- a) 그들 지역에서 그들의 권력을 발행하거나 임업에 대한 법률 문서를 해당 정부 기관에 요청하고, 적합한 임업 개발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b) 임업과 지속가능한 임업 개발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문서를 실행한다.
 - c) 산림을 분류하고 산림 유형을 파악한다.
 - d) 가정, 개인, 단체의 산림을 배정 임대, 목적 변경하거나 책정한다. 산림 관리에 대한 문서를 준비한다. 대체 조림을 조직한다.
 - e)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에 대한 현상 파악을 실시하고 산림 개발을 조사한다.
 - f) 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산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산불 안전을 확실히 한다.
 - g) 임업에 관한 법을 전파하고 교육한다.
 - h) 배정되거나 임대되지 않은 산림지를 위한 토지/산림 배정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역 인민 위원회에 지시한다.
 - i)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그들 구역에서 임업에 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3. 지역 인민위원회의 책임 업무:
- a)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해당 정부 기관에 임업에 대한 법률 문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한다. 적합한 산림 권리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임업-농업-수산업 생산물을 통합하고, 경작을 바꾸고 그들 지역에 이를 적용시킨다.
 - b) 산림 지역과 경계지역을 관리한다. 기관, 가정,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해 제출된 토지 배정/ 임대를 위한 적용을 입증한다.
 - c) 국가가 배정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산림 지역을 관리하거나 보호한다.
 - d) 그들 지역에서 산림 현상파악을 한다.

- dd) 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들 지역에서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한 지역 공동체 규정을 개발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시한다.
 - e) 화재 안전 활동을 실행한다. 임업의 규정에 대한 위반을 대응한다.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 지역에서 임업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한다.
4. 인민 위원회의 의장들은 그들의 관리 하에서 산불, 산림 관리 또는 보호법을 어긴 위반에 의해 산림 파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절 산림 관리자

제103조 산림 관리자들의 기능

산림 관리자들은 산림을 관리, 보호하고 임업법의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산불 안전에 특화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제104조 산림 관리자들의 책임과 권한

1. 산림 관리자들의 책임:

- a) 산림 보호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계획을 개발하고, 임업과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응한다.
- b) 예비림과 보호림을 보호한다. 배정되거나 임대되지 않은 공공 산림을 보호하는데 해당 기관과 협력한다.
- c) 산불의 위험을 경고하고 예상한다. 산불 안전팀을 조직하고 매년 산림 개발을 조사한다.
- d)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산림 보호 및 사용에 대한 법의 조항을 어기는데 대한 감독 및 조치를 취하고 목제품 이동, 거래, 보관과 가공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dd) 산불 안전 계획을 짜고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 소유주들을 교육한다. 산림 소유주들을 위하여 산림 보호와 산불 안전에 대한 단기 코스를 제공한다.
- e)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전파하고 높인다.
- g)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배정받은 다른 업무들을 실시한다.

2. 산림 관리자들의 권리:

- a) 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당국이나 단체에 요청한다.

- b) 행정 위반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임업 법 규정에 대한 위반을 상고하고 조사한다.
 - c) 법의 규정에 따라서 배정받은 기구 또는 장비, 무기, 전투 장비와 유니폼을 사용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105조 산림 관리자들의 기관

- 1. 산림 관리자들은 중앙부와 지방부로 구성되어 있다.
- 2. 산림 관리자들은 그들 지역에서의 임업, 산불 안전, 산림 개발이나 사용, 목제품 가공과 거래에 대한 법 조항에 준수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요구조건과 산림 관리와 보호에 대한 업무를 기준으로 구역에 따라 조직될 것이다.
- 3. 국립 공원, 국립 보호구역, 종에 대해 업무맡은 -서식지 보호구역, 유역 보호 산림, 바람/모래 막이 보호 산림, 조류 막이 또는 바다 침식지 방지를 위한 보호림을 관리하는 중앙 또는 지역 단위로 구성된 산림 관리자들은 산림 관리와 보호의 요구조건과 업무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할 것이다.

제106조 산림 관리자들을 위한 운영과 정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비

- 1. 산림 관리자들의 운영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 a) 산림 관리자들은 산림 순찰 및 보호와 산불 안전을 위한 무기, 방지 장비 등의 기술적 전문 장비들을 제공받는다.
- 2. 산림 관리자들을 위한 정책:
 - a) 산림 관리자들은 등급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다. 근속 수당, 특별 수당과 다른 법에 관한 수당
- 3. 정부는 이 조항을 명시할 것이다.

제12장 실행 조항들

제107조 영향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법인 No. 29/2004/QH11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08조 경과 규정

1.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산림을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산림 소유자들은 이 조항의 2절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토지 사용과 임대 기한이 만기 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할 자격을 가진다.
2. 이 법의 시행 날짜 이전에 토지를 배정받은 기관과 국가인 산림 소유주는 토지 사용 기한이 만기될 때 까지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 79조 a, b항목과 1절 2절에 언급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3.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토지가 아직 개간되지 않은 경우는 본 조 제21조에 언급된 대체림이 식수될 수 있다.
4. 지역 인민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용가능한 자연 산림 지역을 검토하여 예비림, 보호림 또는 생산림 계획을 추가할 것이다.

이 법은 2017년 11월 15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4분기 14회 국가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부록 2. 임업투자관련 제출 필요 서류 양식 - 붙임 1

Template no.01. STATISTICS OF POPULATION, SOCIO-ECONOMIC
(statistics of communes related to forest area of the forest owner as of
31/12/20...)

Forest owner's name:

No	Administration	Total hhs	Demography			Labor			Average cultivation area (ha/hh)			Average incomes (1,000 VND/hh)					
			Total	Kinh	Others	Total	Male	Female	Total	Agriculture	Forestry	Total	Agriculture	forestry			
1	Commune A:																
2	Commune B:																
																
	Total																

Date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2

Template no. 02. STATUS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ORKS

Name of forest owner:

No	Type of road	Name of route	Code of route (if any)	Level of road	Length (km)	Assessment
1	Inter-communal					
2	Inter-district					
	...					
	National road					
Total						

Date

Forest owner*(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3

Template no. 03: STATISTICS OF STATUS OF LAND USE OF FOREST OWNERS BY COMMUNES

(as of 31/12/20....)

Name of forest owner:

Unit: ha

No	TYPES OF LAND	Code	Total land area of forest owner	Status of land use of forest owners by communes						Notes	
				Commune A	Commune B	Commune C	Commune D	Commune E	Commune F		
	Total land area managed by forest owner										
	1 Agriculture land	NNP									
	1.1 Farming land	SXN									
	1.1.1 Land for annual crops	CHN									
	1.1.1.1 Land for rice crops	LUA									
	1.1.1.2 Land for other annual crops	HNK									
	1.1.2 Land for long-term trees	CLN									
	1.2 Forestry land	LNP									
	1.2.1 Production forest land	RSX									
	1.2.2 Protection forest land	RPH									
	1.2.3 Special use forest land	RDD									
	1.3 Land for aquatic productions	NTS									
	1.4 Land for salt production	LMU									
	1.5 Land for other agriculture productions	NKH									
	2 Non-agriculture land	PNN									
	2.1 Residential land	OCT									
	2.1.1 Rural residential land	ONT									
	2.1.2 Urban residential land	ODT									
	2.2 Specialized land	CDG									
	2.2.1 Land for building offices	TSC									
	2.2.2 Land for army forces	QOP									
	2.2.3 Land for security	CAN									
	2.2.4 Land for building state business entities's offices	DSN									
	2.2.5 Land for non-agriculture production, business	CSK									
	2.2.6 Land for public use	CCC									
	2.3 Land for religious purposes	TON									
	2.4 Land for beliefs	TIN									

2.5	Land for cemeteries, graveyards, funeral homes and cremation sites	NTD																		
2.6	River, canal, stream land area	SON																		
2.7	Land with specialized water surface using	MNC																		
2.8	Land for other non-agriculture purposes	PNK																		
3	Un-used land	CSD																		
3.1	Un-used flat land	BCS																		
3.2	Un-used hilly land	DCS																		
3.3	Rocky mountain without trees	NCS																		
4	Coastal land with water surface (observation)	MVB																		
4.1	Coastal water surface for aquatic production	MVT																		
4.2	Coastal water surface with forest	MVR																		
4.3	Coastal water surface for other use purposes	MVK																		

..., date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4

Template no. 04. STATISTICS OF FOREST STATUS IN 20....
Name of forest owner:

Unit: ha

No	Types of forest	Code	Production forest	Notes
I	FOREST CLASSIFIED BY ESTABLISHMENT ORIGIN	1100		
1	Natural forest	1110		
	- primary forest	1111		
	- secondary forest	1112		
2	Plantation forest	1120		
	- new plantation on bare land	1121		
	- replantation after harvesting	1122		
	- natural rehabilitation from harvested production forest	1123		
II	FOREST CLASSIFIED BY SITE CONDITIONS	1200		
1	Forest on hilly mountain	1210		
2	Forest on rocky mountain	1220		
3	Forest on wetland	1230		
	- mangroves	1231		
	- forest on acid sulfate soil	1232		
	- forest on freshwater flooded land	1233		
4	Forest on sandy land	1240		
III	FOREST CLASSIFIED BY SPECIES	1300		
1	Natural timber forest	1310		
	- ever-green broadleaf forest or semi deciduous forest	1311		
	- Deciduous broadleaf forest	1312		
	- coniferous forest	1313		
	- mixed broadleaf and coniferous forest	1313		
2	Bamboo forest	1320		
	- Bamboo	1321		
	- Indosasa	1322		
	- Dendrocalamus	1323		
	- Bambusa	1324		
	- others	1325		
3	Mixed timber and bamboo forest	1330		
	- Dominant wood	1331		
	- Dominant bamboo	1332		
4	Coconut areca forest	1340		
IV	NATURAL TIMBER FOREST CLASSIFIED BY RESERVES VOLUME	1400		
1	Rich forest	1410		
2	Medium forest	1420		
3	Poor forest	1430		
4	Very poor forest	1440		
5	Forest has no reserves	1450		
V	UN-MATURE FOREST AREA	2000		
1	Planted area not yet mature	2010		
2	Area zoning for rehabilitation	2020		
3	Others	2030		

...,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5

Template no. 05. STATISTICS OF RESERVES OF FOREST TYPES IN 20....
 Name of forest owner:

Unit: (timber: m³/ha; bamboo: 1000 trees/ha)

No	Types of forest	Code	Production forest	Notes
I	FOREST CLASSIFIED BY ESTABLISHMENT ORIGIN	1100		
1	Natural forest	1110		
	- primary forest	1111		
	- secondary forest	1112		
2	Plantation forest	1120		
	- new plantation on bared land	1121		
	- replantation after harvesting	1122		
	- natural rehabilitation from harvested production forest	1123		
II	FOREST CLASSIFIED BY SITE CONDITIONS	1200		
1	Forest on hilly mountain	1210		
2	Forest on rocky mountain	1220		
3	Forest on wetland	1230		
	- mangroves	1231		
	- forest on acid sulfate soil	1232		
	- forest on freshwater flooded land	1233		
4	Forest on sandy land	1240		
III	FOREST CLASSIFIED BY SPECIES	1300		
1	Natural timber forest	1310		
	- ever-green broadleaf forest or semi deciduous forest	1311		
	- Deciduous broadleaf forest	1312		
	- coniferous forest	1313		
	- mixed broadleaf and coniferous forest	1313		
2	Bamboo forest	1320		
	- Bamboo	1321		
	- Indosasa	1322		
	- Dendrocalamus	1323		
	- Bambusa	1324		
	- others	1325		
3	Mixed timber and bamboo forest	1330		
	- Dominant wood	1331		
	- Dominant bamboo	1332		
4	Coconut areca forest	1340		
IV	NATURAL TIMBER FOREST CLASSIFIED BY RESERVES VOLUME	1400		
1	Rich forest	1410		
2	Medium forest	1420		
3	Poor forest	1430		
4	Very poor forest	1440		
5	Forest has no reserves	1450		

...,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6

Template no. 06. LIST OF KEY FOREST PLANT SPECIES
Name of forest owner:

No	Family		Species		Notes
	Vietnamese name	Scientific name	Vietnamese name	Scientific name	
1					
2					
...					

...,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7

Template no. 07. LIST OF RARE, ENDANGER FOREST PLANT SPECIES

Name of forest owner:

No	Scientific name of the species	Vietnamese name	Distribution	According to:			
				IUCN	VN redlist book	GoV decree	CITES
1							
2							

...,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8

Template no. 08. LIST OF KEY FOREST ANIMAL SPECIES

Name of forest owner:

No	Family		Species		Notes
	Vietnamese name	Scientific name	Vietnamese name	Scientific name	
1					E.g. quality (rare, many, etc.)
2					
...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9

Template no. 09. LIST OF RARE AND ENDANGER FOREST ANIMAL SPECIES

Name of forest owner:

No	Scientific name of forest animal species	Vietnamese name	Distribution	According to:			
				IUCN	VN redlist	GoV decree	CITES
1							
2							

...,date ...

Forest owner*(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10

Template no. 10. SUMMARY OF LANDUSE PLAN PERIOD 20... - 20...
Name of forest owner:

Unit: ha

No	TYPES OF LAND	Code	Status of landuse of forest owner in 201...	Summary of landuse plan for 5 years, during 201 -202					Notes
				Period 201 - 202					
				year (5)	year (6)	year (7)	year (8)	year (9)	
(1)	(2)	(3)	(4)	(5)	(6)	(7)	(8)	(9)	(10)
I	Total forest land area of forest owner								
1	Agriculture land	NNP							
1.1	Land for agriculture production	SXN							
1.1.1	Land for annual crops	CHN							
1.1.1.1	Land for rice cultivation	LUA							
1.1.1.2	Land for other annual crops	HNK							
1.1.2	Land for long-term species	CLN							
1.2	Forest land	LNP							
1.2.1	Production forest land	RSX							
1.2.2	Protection forest land	RPH							
1.2.3	Special use forest land	RDD							
1.3	Aquatic land	NTS							
1.4	Land for salt production	LMU							
1.5	Other agriculture land	NKH							
2	Non-agriculture land	PNN							
2.1	Residential land	OCT							
2.1.1	Residential land in rural	ONT							
2.1.2	Residential land in urban	ODT							
2.2	Specialized-use land	CDG							

2.2.1	Land for building offices	TSC							
2.2.2	Army land	CQP							
2.2.3	Security land	CAN							
2.2.4	Land for public service businesses	DSN							
2.2.5	Land for non-agriculture businesses	CSK							
2.2.6	Land for public uses	CCC							
2.3	Land for religious sites	TON							
2.4	Land for belief sites	TIN							
2.5	Land for cemeteries, graveyards, funeral homes and cremation sites	NTD							
2.6	Land of rivers, canals, streams	SON							
2.7	Land with specialized-use water surface	MNC							
2.8	Other non-agriculture lands	PNK							
3	Un-used land	CSD							
3.1	Un-used flat land	BCS							
3.2	Un-used hilly land	DCS							
3.3	Rocky mountain without trees	NCS							
II	Coastal land with water surface (by observation)	MVB							
1	Coastal water surfaced land for aquatic production	MVT							
2	Coastal water surfaced land with forest	MVR							
3	Coastal water surfaced land for other purposes	MVK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11

Template no. 11. SUMMARY OF SUSTAINABLE FOREST PROTECTION AND
MANAGEMENT PLAN PERIOD 20... - 20...

Name of forest owner:

Unit: ha

(1)	ITEMS (2)	Production forest				Notes (16)
		Total (12)	Year ... (13)	... (14)	... (15)	
I	PROTECT EXISTING FOREST AREA					
	1. Natural forest protection					
	2. Plantation forest protection					
II	FOREST DEVELOPMENT					
	1. Zoning					
	2. Zoning with supplementary					
	3. Enrichment					
	4. New plantation					
	5. replant after harvest					
	6. tending plantation forest					
	a) tending plantation year 1					
	b) tending plantation year 2					
	c) tending plantation year 3					
III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1. Natural forest (ha)					
	2. Plantation forest (ha)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12

Template no. 12. SUMMARY OF HARVESTING FOREST PRODUCTS PERIOD 20... - 20...

Name of forest owner:

Unit: m³; 1,000 trees, ton

	ITEMS	Production forest				Notes
		Total	Year	
I	NATURAL FOREST EXPLOITATION					
	1. Main harvest	Not applicable				
	- Area (ha)					
	- output (m ³)					
	2. Full use of harvesting					
	3. Full exploitation					
II	PLANTATION FOREST EXPLOITATION					
	1. Harvest plantation forest					
	- Area (ha)					
	- Output (m ³)					
	2. Make full use of harvesting					
	3. Full exploitation					
III	HARVEST NTFPs					
	1. bamboo, bambusa, dendrocalamus, etc.					
	- Area (ha)					
	- Output (1,000 trees)					
	2. Rattan (ton)					
	3. Pine resin (ton)					
					

...,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13

Template 13. SUMMARIZED PLAN OF BUILDING INFRASTRUCTURE, FOREST FIRE PREVENTION AND FIGHTING PERIOD 20 - 20

Name of forest owner:

Unit: m²; station, km

No	ITEMS	Production forest				Notes
		Total	Year	
1	Tower watching forest fire					
a	New buildings					
	Quantity (watch tower)					
	Area (m ²)					
b	Repairs, upgrades					
	Quantity (watch tower)					
	Area (m ²)					
2	Forest protection stations					
a	New buildings					
	Quantity (station)					
	Area (m ²)					
b	Repairs, upgrades					
	Quantity (station)					
	Area (m ²)					
3	Fire belt					
a	Cleared belts (km)					
	New belts					
-	Upgrades					
b	Greened belt (km)					
-	New belts					
-	Upgrades					
4	Forest fire signing board					
-	New boards					
-	Repaired boards					
5	Forest road, transportation route					
	- new construction (km)					
	- repairs, upgrades (km)					
6	Office building (m²)					
	- new building					
	- upgrades, repairs					
7	Other tasks					

...,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부록 2. - 붙임 14

Template 14. PRODUCTION AND BUSINESS OUTPUTS OF FOREST OWNER
 Name of forest owner:
 (applicable for forest owner as corporations, cooperatives acting according to
 the Law on enterprises)

Unit: thousand VND

Target indicators	Code	Year 20 _{...}	Year 20 _{...}	Year 20 _{...}	Average 3 years
1. Sales of goods and services	01				
2. The deduction from revenue	02				
3. Net sales of goods and services (10 = 01 - 02)	10				
4. Cost of goods sold	11				
5. Gross profit on sales and service provision (20 = 10 - 11)	20				
6. Revenue from financial activities	21				
7. Financial expenses	22				
- of which: Interest expenses	23				
8. Cost of sales	24				
9. Management cost	25				
10 Net profit from business activities (30 = 20 + (21 - 22) - (24 + 25))	30				
11. Other incomes	31				
12. Other expenses	32				
13. Other profits (40 = 31 - 32)	40				
14. Accounting profit before tax (50 = 30 + 40)	50				
15.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expense	51				
16. Corporate income tax refunded	52				
17. Profit after tax (60 = 50 - 51 - 52)	60				
18. Basic earnings per share (*)	70				

...,date ...

Forest owner

(sign, write full name, stamp)

Notes: (*) These target indicators are applicable only for joint-venture enterprises.

한국임업진흥원 자료집 제95호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베트남(개정판) -

발행일 : 2019년 12월

편집인 : 해외산림협력실

발행처 : 한국임업진흥원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1600-3248

팩스 : (02) 6393-2609

인쇄처 : 디자인애프린팅(053-956-4050)

□ 종이도 나무에서 나옵니다.

<비매품>

ISBN 978-89-98575-91-5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